

| SRI-정책-2018-19 |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9~2023)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Master Plan for Human Rights Policy in Suwon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김은경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박범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수원시인권위원회 장성근 위원장
하경희 부위원장
노현수 위원
주경희 위원
최용찬 위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6월 20일

발행 2019년 6월 30일

ISBN 979-11-89160-72-2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9.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I. 연구필요성 및 목적

모든 인간은 성별, 연령,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이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와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요구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실천적 논의는 국제적(international) 수준에서 국가적(national) 수준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단위(regional)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책무를 확인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배경 검토와 수원시 인권 환경 및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와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수원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수원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권친화도시 수원의 시정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방향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체계는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추진방향, 5대 정책목표, 16개 중점과제, 4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1.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2.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세부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구분	
[정책목표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1. 장애인 인권증진	①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계속	단기
		②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속	단기
		③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계속	단기
		④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피해 예방활동 강화	신규	중기
	2. 여성 인권증진	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계속	단기
		②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계속	단기
		③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규	중기
		④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신규	중기
	3.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①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	계속	단기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계속	단기
		③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핑크용품 지원	신규	장기
	4. 노인 인권증진	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	계속	단기
		②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	계속	단기
		③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계속	단기
		④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계속	단기
		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계속	단기
		⑥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신규	중기
	5.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①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계속	단기
		②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확대	계속	단기
		③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계속	단기
		④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	신규	중기
		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규	장기
	6. 노동자 인권증진	① 비정규직 차별 Zero 캠페인	신규	장기
		②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조사	신규	장기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신규	장기	
[정책목표2] 인권도시 환경 조성	1. 모두가 안전한 도시	①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 서비스	계속	단기
		②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	신규	중기
	2. 모두가 이동이 편리한 도시	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신규	중기
3.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	신규	중기	
[정책목표3] 인권문화 확산	1. 인권교육 활성화	①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계속	단기
		②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계속	단기
	2.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①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신규	중기
		② 인권포럼 운영	신규	장기
		③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신규	중기

[정책목표4]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1. 인권행정 체계 구축	①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확대	계속	단기
		②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규	중기
		③ 인권정책 전담부서 위상 강화	신규	단기
	2. 인권증진 제도 개선	① 인권영향평가	신규	중기
		3. 인권정책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신규
	[정책목표5] 인권 거버넌스 강화	1. 시민참여중심의 인권정책 실현	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	계속
② 인권지기 운영			신규	중기
①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신규	중기
2.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실현		②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 강화	신규	장기
		③ 인권경영 운영 지원	신규	장기

Ⅲ.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목표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	---------------------

1. 장애인 인권증진

1-1-1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대를 통해 행정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장애인 공직자 채용 인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1-1-2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 인권증진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기반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③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추진 및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④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체험홈(시범사업) 운영, ⑤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강화, ⑥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1-1-3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은 ①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②택내 장비 설치 등이 포함된다.

1-1-4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피해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피해 예방활동 강화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발생 후에는 긴급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인권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피해 예방활동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장애인보호시설 평가, ②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2. 여성 인권증진

1-2-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는 경력단절 여성의 시장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로 여성의 노동권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주요 내용은 ①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②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채용 장려를 위한 여성 인턴십 운영 및 사후관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1-2-2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해 가구의 보육부담 경감 및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실현, 나아가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 및 보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촉진 및 출산율 증가 유도 가능 등이 포함된다.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② 아이돌봄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1-2-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을 통한 심신회복을 유도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강화 및 성·가정폭력 없는 안전도시 수원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②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 비지원, ③ 피해자 치유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1-2-4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과 주도적 삶의 동기부여 등으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성매매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피해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및 구조지원 사업, ② 개별지원, 법률·의료지원, 심리치료 및 직업훈련 등이 포함된다.

3.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1-3-1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을 통한 생명권 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강화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감소하여 사회적 위험 노출 완화 등을 목표로 한다.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등록·사례 관리, ② 행복 정신건강증진사업, ③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1-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지원, ②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③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등이 포함된다.

1-3-3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핑크용품 지원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핑크용품 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핑크용품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여성 핑크용품 구매비용(1인 연 12만원 내외) 등이 포함된다.

4. 노인 인권증진

1-4-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건강취약노인 및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응급상황 발생시 119와 연계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안전권 및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대응, ②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③ 응급 호출기, 활동감지·화재감지·가스감지 센서 및 외출버튼 수리 등이 포함된다.

1-4-2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 단독가구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서비스 강화 및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정된 생활 및 노후보장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확인서비스, ② 생활교육 등이 포함된다.

1-4-3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는 사회적 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통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및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저소득 노인의 경제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기초연금 지원, ② 효사랑 지원금 지원, ③ 효도수당 지원 등이 포함된다.

1-4-4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는 노인의 사회활동 강화를 통한 노인의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공익활동, ② 사회서비스형, ③ 시장형(공동작업, 제조판매 등), ④ 인력파견형 등이 포함된다.

1-4-5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 및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한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된다.

1-4-6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치매예방프로그램에서는 일반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요구되어, 일반시민(60세 이전 대상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요구되며,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잠재적 치매환자 급증으로 치매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 건강권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한다. 노인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구조화된 프로그램 및 단기 프로그램 등), ② 로봇기반의 맞춤형 두뇌건강 프로그램 운영, ③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이용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5.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1-5-1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은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생활 이해 및 완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 교육, ②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③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행정 및 생활정보 제공 안내 등이 포함된다.

1-5-2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확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확대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정착 유도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② 교육지원사업 운영, ③ 정서지원사업 운영, ④ 자립지원사업 운영, ⑤ 지역사회지망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1-5-3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는 외국인 주민의 수원시 정착을 조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권 보장 및 비용절감 및 취업연계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교육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적인 기술습득, ② 교육강사의 전문화, ③ 체계적인 교육생 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1-5-4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등 외국인의 의료접근도 향상을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① 내·외과, 치과, 한방과 진료 및 상담, B형간염 예방접종, 시력검진, 이미용(헤어컷), 물리치료 등이 포함된다.

1-5-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생활 안정,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②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③ 민간이전(민주평통)을 통한 지역적응 사업 등이 포함된다.

6. 노동자 인권증진

1-6-1 비정규직 차별 Zero 캠페인

비정규직 차별 Zero 캠페인은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있어서의 차별 요소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기여 및 상생적인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차별 Zero 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인식 개선 유도 등을 목표로 한다. 비정규직 차별 Zero 캠페인 주요 내용은 ①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관련 포스터 홍보 및 캠페인 실시, ②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1-6-2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대비 열악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근로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노동조건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인권 수준 진단 및 근로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①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차별 및 근로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다.

1-6-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주요 내용은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②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다.

정책목표2

인권도시 환경조성

1. 모두가 안전한 도시

2-1-1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 서비스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 서비스는 여성의 안전한 생활 및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권 보장 및 체감형 안전도시 정책실천으로 1인 여성가구 삶의 질 개선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①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② 24시간 침입탐지 및 보안업체와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출동 등이 포함된다.

2-1-2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은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주거안전 개선 및 화재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주거안전에 있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민중심 수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주택용소방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2. 모두가 이동이 편리한 도시

2-2-1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를 목표로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교통약자 이동 예약수단 다변화 및 시스템 고도화, ② 이동지원 종합개선대책 추진, ③ 특별택시(휠체어탑승특장) 구입 등이 포함된다.

3.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2-3-1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은 취약계층(저소득·독거노인·장애인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을 통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의 주요 내용은 ① 수선유지급여사업, ②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책목표3	인권문화 확산
--------------	----------------

1. 인권교육 활성화

3-1-1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반인권적인 문화나 행동양식 개선 및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시민의식 확산 인권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이 포함된다.

3-1-2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함양과 수원시 행정서비스의 인권의식 반영 및 보편적 인권정책 집행을 통한 인권도시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참여형·사례위주 맞춤형 교육 등이 포함된다.

2.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3-2-1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는 세계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인권에 대한 가치공유와 참여하는 행사 기획을 통해 어렵고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인권을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감수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은 ① 기념식, ② 인권증진 사업 홍보관 운영, ③ 인권영화제 운영 등이 포함된다.

3-2-2 인권포럼 운영

인권포럼 운영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포럼 개최를 통해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시민의 인권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권포럼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 포용적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포럼 운영, ② 다양한 영역에서 포용적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③ 인권증진 정책 홍보 등이 포함된다.

3-2-3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은 사회 내 고착된 성차별 등으로 근본적인 인식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성차별 인식 개선 기여를 목표로 한다.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의 주요 내용은 ① 성평등 교육 운영, ②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이 포함된다.

정책목표4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1. 인권행정 체계 구축

4-1-1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확대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확대는 인권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관련된 법·제도 틀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권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 발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 수원시 행정서비스의 인권의식 반영 및 보편적 인권정책 집행을 통한 인권도시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침해 구제업무(상담·조사·시정권고), ② 인권침해 정책·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③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정책, 공공시설물), ④ 인권실태조사 등이 포함된다.

4-1-2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지능정보사회 및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 향상 도모 등을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에 대한 적절한 취급 점검, ②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활동 강화, ③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

4-1-3 인권정책 전담부서 위상 강화

인권정책 전담부서 위상 강화는 인권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위상강화로 인권정책 추진의 효과성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인권정책 전담부서 위상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정책 전담부서를 독립부서로 설치 등이 포함된다.

2. 인권증진 제도 개선

4-2-1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시정 내 인권 주류화 실현 및 시민참여 확대 및 인권친화적 정책실현을 통해 인권도시 구현 등을 목표로 한다.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① 정책 수립·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다.

3. 인권정책 선순환 시스템 구축

4-3-1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실태조사 연계를 통한 인권증진 정책 시너지 효과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과정-결과-보완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로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시정 추진 등을 목표로 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협의체(TF) 구성·운영, ②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정책목표5

인권 거버넌스 강화

1. 시민참여중심의 인권정책 실현

5-1-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은 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및 청소년 눈높이 예산학교 등 시정 참여활동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참여와 협의를 통한 자치역량 함양 등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예산교육 실시, ② 학교 방문 찾아가는 청소년 의견수렴 활동 전개, ③ 청소년 제안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④ 청소년을 대표한 정책제안 논의 등이 포함된다.

5-1-2 인권지기 운영

인권지기 운영은 인권지기 운영을 통해 수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제고 및 인권지기 운영을 통한 시민의 참여권 보장 등을 목표로 한다. 인권지기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 ② 인권관련 개선사항 제안, ③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및 지원활동,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등이 포함된다.

2.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실현

5-2-1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는 수원시가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 증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학계,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 적극적인 참여 정책추진으로 인권증진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통합과 동반성장 도모 등을 목표로 한다.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협약, ②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 의견 수렴, 인권행정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한 수원시 지역사회 인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안 및 협의 등이 포함된다.

5-2-2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 강화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 강화는 인권단체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상호신뢰 형성 및 수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여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사업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권증진 및 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 등을 목표로 한다.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5-2-3 인권경영 운영 지원

인권경영 운영 지원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확대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 책임 실현 및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으로 민간기업까지 확산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도시 수원’ 조성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 인권경영 운영 지원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경영체계 구축,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③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등이 포함된다.

주제어: 인권, 인권정책, 인권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변화	7
제1절 인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9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9
2. 인권도시	11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사례	13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3
2. 광역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15
3. 기초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20
제3절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23
1. 수원시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3
2. 수원시 인권 권리주체별 현황	27
3.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33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37
제3장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43
제1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수원시민 대상	45
1. 조사설계	45
2. 응답자 특성	48

3. 분석결과	49
제2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대상	71
1. 조사설계	71
2. 응답자 특성	74
3. 분석결과	75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94

제4장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및 전략 분석 99

제1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실적 평가	101
1. 개요	101
2. 장애인 영역	103
3. 여성 영역	111
4. 아동·청소년 영역	118
5. 노인 영역	125
6. 다문화 영역	137
7. 북한이탈주민 영역	145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148
제2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	160
1. 조사설계	160
2.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1
3. 여성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3
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5
5. 노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7
6.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9
7.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70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71
제3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 지속성 평가	173
1. 조사설계	173
2.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3
3. 여성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5
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8

5. 노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9
6.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2
7.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4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5
제4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분석	187
1. 수원시 인권정책 SWOT 분석	187
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188
제5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89
제5장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193
제1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195
1. 기본계획 성격 및 범위	195
2.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196
제2절 기본계획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197
1.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	197
2.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197
3.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198
제3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중점과제	199
제4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200
1.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202
2. 인권도시 환경조성	235
3. 인권문화 확산	241
4.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247
5. 인권 거버넌스 강화	255
제5절 제1기와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차이점	261
참고문헌	265
부록	267
1.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일반시민	267
2.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277

표 차례

〈표 2-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권의 개념	10
〈표 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3대 원칙	14
〈표 2-3〉 서울특별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16
〈표 2-4〉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17
〈표 2-5〉 광주광역시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주요 내용	18
〈표 2-6〉 전라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19
〈표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20
〈표 2-8〉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21
〈표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표 2-10〉 수원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면적 현황	24
〈표 2-11〉 수원시 연도별 인구 및 세대 현황	24
〈표 2-12〉 수원시 내국인 및 외국인 성별 분포 현황	25
〈표 2-13〉 수원시 연령별 인구 현황	26
〈표 2-14〉 수원시 유소년(0~14세) 인구 현황	27
〈표 2-15〉 수원시 여성 인구 현황	27
〈표 2-16〉 수원시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8
〈표 2-17〉 수원시 행정구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8
〈표 2-18〉 수원시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현황	29
〈표 2-19〉 수원시 연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29
〈표 2-20〉 수원시 장애인 장애등급 현황	30
〈표 2-21〉 수원시 연령별 인구 현황	30
〈표 2-22〉 수원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31
〈표 2-23〉 수원시 독거노인 성별 구조	31
〈표 2-24〉 수원시 저소득 독거노인 현황	31
〈표 2-25〉 수원시 외국인 주민 현황	32
〈표 2-26〉 수원시 국적별 외국인 등록 인구 현황	33

〈표 2-27〉 수원시 어린이집 현황(2017)	33
〈표 2-28〉 수원시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34
〈표 2-29〉 수원시 유치원 현황	34
〈표 2-30〉 수원시 아동복지시설 현황(2017)	35
〈표 2-31〉 수원시 여성복지시설 현황(2017)	35
〈표 2-32〉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17)	36
〈표 2-33〉 수원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37
〈표 2-34〉 수원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7)	37
〈표 2-35〉 주요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주요 내용	39
〈표 3-1〉 수원시 거주지별, 성별, 연령별 인구(20세 미만 제외)	46
〈표 3-2〉 표본 구성: 시민 대상	47
〈표 3-3〉 설문문항	48
〈표 3-4〉 응답자 특성: 시민 대상	49
〈표 3-5〉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드는 생각: 시민 대상	50
〈표 3-6〉 인권 관련 인지 정도: 시민 대상	52
〈표 3-7〉 수원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시민 대상	52
〈표 3-8〉 인권 구분	53
〈표 3-9〉 인권분야별 인권 존중 정도: 시민 대상	55
〈표 3-10〉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 시민 대상	56
〈표 3-11〉 인권침해 경험: 시민 대상	58
〈표 3-12〉 차별 경험: 시민 대상	61
〈표 3-13〉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한 조치: 시민 대상	63
〈표 3-14〉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 시민 대상 ·	63
〈표 3-15〉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할 경우 취할 조치: 시민 대상	64
〈표 3-16〉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할 경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 시민 대상 ·	64
〈표 3-17〉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원인: 시민 대상	65
〈표 3-18〉 인권보장을 위한 필요 사항: 시민 대상	66
〈표 3-19〉 인권교육 필요성: 시민 대상	67
〈표 3-20〉 인권교육 경험 여부: 시민 대상	67
〈표 3-21〉 인권교육 내용: 시민 대상	68
〈표 3-22〉 인권교육 장소: 시민 대상	68

〈표 3-23〉 인권교육 만족도: 시민 대상	69
〈표 3-24〉 인권교육시 희망 장소: 시민 대상	69
〈표 3-25〉 인권교육 희망 내용: 시민 대상	70
〈표 3-26〉 수원시 부서별 공무원 수	72
〈표 3-27〉 표본 구성: 공무원	73
〈표 3-28〉 응답자 특성: 공무원 대상	74
〈표 3-29〉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드는 생각: 공무원 대상	76
〈표 3-30〉 인권 관련 인지 정도: 공무원 대상	77
〈표 3-31〉 수원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공무원 대상	78
〈표 3-32〉 인권분야별 인권 존중 정도: 공무원 대상	80
〈표 3-33〉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 공무원 대상	81
〈표 3-34〉 인권침해 경험: 공무원 대상	84
〈표 3-35〉 차별 경험: 공무원 대상	87
〈표 3-36〉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한 조치: 공무원 대상	88
〈표 3-37〉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할 경우 취할 조치: 공무원 대상	89
〈표 3-38〉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원인: 공무원 대상	90
〈표 3-39〉 인권보장을 위한 필요 사항: 공무원 대상	91
〈표 3-40〉 인권교육 필요성: 공무원 대상	91
〈표 3-41〉 인권교육 경험 여부: 공무원 대상	92
〈표 3-42〉 인권교육 내용: 공무원 대상	92
〈표 3-43〉 인권교육 만족도: 공무원 대상	93
〈표 3-44〉 인권교육 희망 내용: 공무원 대상	94
〈표 4-1〉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18) 사업	101
〈표 4-2〉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성과	104
〈표 4-3〉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성과	105
〈표 4-4〉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성과	106
〈표 4-5〉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성과	107
〈표 4-6〉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성과	109
〈표 4-7〉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성과	110
〈표 4-8〉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성과	111
〈표 4-9〉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성과	112

〈표 4-10〉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서비스 성과	113
〈표 4-1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성과	114
〈표 4-12〉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 성과	115
〈표 4-13〉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성과	117
〈표 4-14〉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 성과	119
〈표 4-15〉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성과	120
〈표 4-16〉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성과	121
〈표 4-17〉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 성과	122
〈표 4-18〉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사업 성과	123
〈표 4-19〉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성과	124
〈표 4-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125
〈표 4-21〉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성과	127
〈표 4-22〉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성과	128
〈표 4-2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성과	129
〈표 4-24〉 노인상담 사업 성과	130
〈표 4-25〉 수원시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 운영 성과	132
〈표 4-26〉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성과	133
〈표 4-27〉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성과	135
〈표 4-28〉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성과	136
〈표 4-29〉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성과	137
〈표 4-30〉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성과	138
〈표 4-31〉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운영 사업 성과	140
〈표 4-32〉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성과	141
〈표 4-33〉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성과	142
〈표 4-34〉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성과	143
〈표 4-35〉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사업 성과	144
〈표 4-36〉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성과	146
〈표 4-37〉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성과	147
〈표 4-3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성과	148
〈표 4-39〉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성과	150
〈표 4-40〉 방법용 CCTV 확대 성과	151

〈표 4-41〉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성과	152
〈표 4-42〉 국어책임관제 성과	153
〈표 4-43〉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성과	154
〈표 4-44〉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성과	155
〈표 4-45〉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성과	157
〈표 4-46〉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성과	158
〈표 4-4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성과	159
〈표 4-48〉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성과	160
〈표 4-49〉 전문가 표본 특성	161
〈표 4-50〉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162
〈표 4-51〉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163
〈표 4-52〉 여성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164
〈표 4-53〉 여성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164
〈표 4-5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165
〈표 4-55〉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166
〈표 4-56〉 노인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167
〈표 4-57〉 노인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168
〈표 4-58〉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169
〈표 4-59〉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170
〈표 4-60〉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170
〈표 4-61〉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171
〈표 4-62〉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172
〈표 4-63〉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172
〈표 4-64〉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174
〈표 4-65〉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5
〈표 4-66〉 여성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176
〈표 4-67〉 여성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7
〈표 4-68〉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178
〈표 4-69〉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8
〈표 4-70〉 노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180
〈표 4-71〉 노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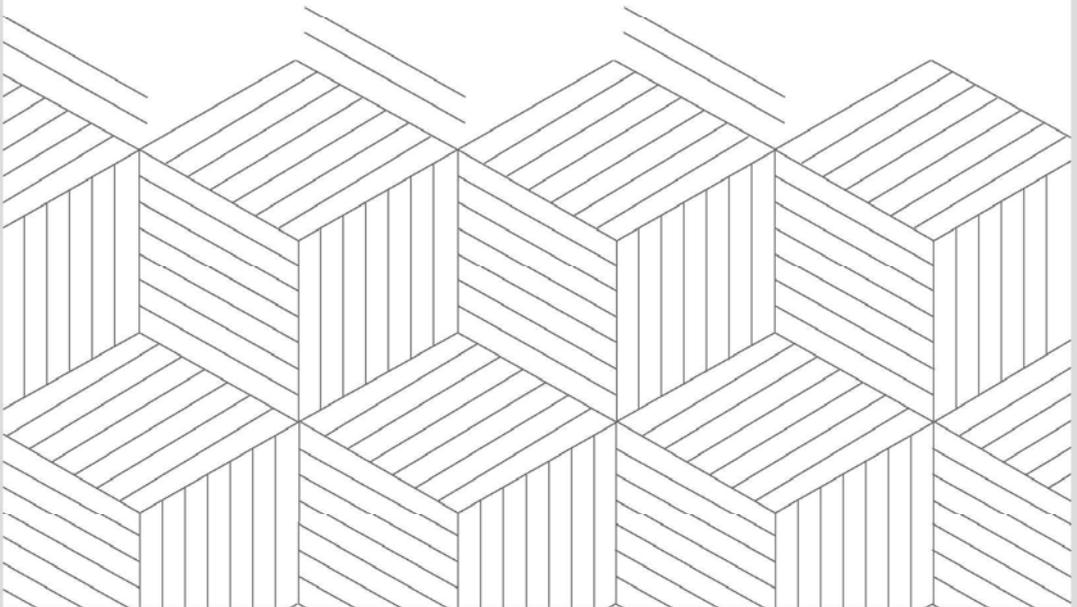
〈표 4-72〉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182
〈표 4-73〉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3
〈표 4-74〉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184
〈표 4-75〉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4
〈표 4-76〉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185
〈표 4-77〉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6
〈표 4-78〉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영역별 세부과제 성과	189
〈표 5-1〉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199
〈표 5-2〉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200
〈표 5-3〉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202
〈표 5-4〉 ‘인권도시 환경조성’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235
〈표 5-5〉 ‘인권문화 확산’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241
〈표 5-6〉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247
〈표 5-7〉 ‘인권 거버넌스 강화’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255
〈표 5-8〉 제1기와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교	263

그림 차례

〈그림 2-1〉 수원시 행정구역 지리적 분포	23
〈그림 4-1〉 수원시 인권정책 SWOT 분석	18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필요성

모든 인간은 성별, 연령,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이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 없이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자유와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적 보장”(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15)의 개념으로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Abrahams & Wyss, 2010; 국가인권위원회, 2011a, p. 13).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요구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3년 UN이 주관한 세계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인권과 민주적 제도 강화, 인권의 법적 보호, 인권교육 증진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호, 증진할 책무를 지니고,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는 등 인권을 위한 법적·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이성훈 외, 2016, pp. 3-4). 또한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¹⁾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실천적 논의는 국제적(international) 수준에서 국가적(national) 수준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단위(regional)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권 침해는 여전히 일상생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정영선, 2016). 인권의 범위가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으로 도시나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발래, 2013, p. 158; 이영안 외, 2017, p. 1). 인권 보호와 증진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서재호·이정훈, 2018, p. 166). 지역단위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책무를 확인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시는 2013년 2월에 경기도 최초로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권행정 역할을 부여하고, 인권도시 구축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2013. 7) 및 인권위원회 구성(2013. 11), 인권센터 설치(2015. 5) 등 인권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인권 실태조사(2014. 10)를 토대로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18)은 수원시가 인권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 추진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이다.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라는 비전과 “수원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의 보편화”라는 목표 하에 7대 분야(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수원시민 전체), 25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의 대상 확대와 요구의 변화 등 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환경 및 여건변화를 고려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실태조사와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2007~2011)과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추진 후,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획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새로운 수요는 무엇인지, 기존 기본계획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원시 인권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의 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배경 검토와 수원시 인권 환경 및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와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수원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수원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권친화도시 수원의 시정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연구내용별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인권 관련 환경변화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구성요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현황 등 이론적·제도적 배경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 분석으로써 SWOT 분석 및 이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 인권실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그리고 인권교육 경험 등이 포함된다.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내용적 범위는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7대 분야(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수원시민 전체)의 25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에는 중점 및 세부과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과 만족도, 과제의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비전과 목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대상(policy target group) 및 영역, 영역별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연구내용에 따라 다층적으로 설정된다.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1기 기본계획의 추진시기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한다.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다. 이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시간적 범위는 제2기 기본계획 추진시기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설정한다.

2. 연구방법

상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될 연구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문헌연구는 인권에 관한 문헌분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문헌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 관련 선행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에 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그리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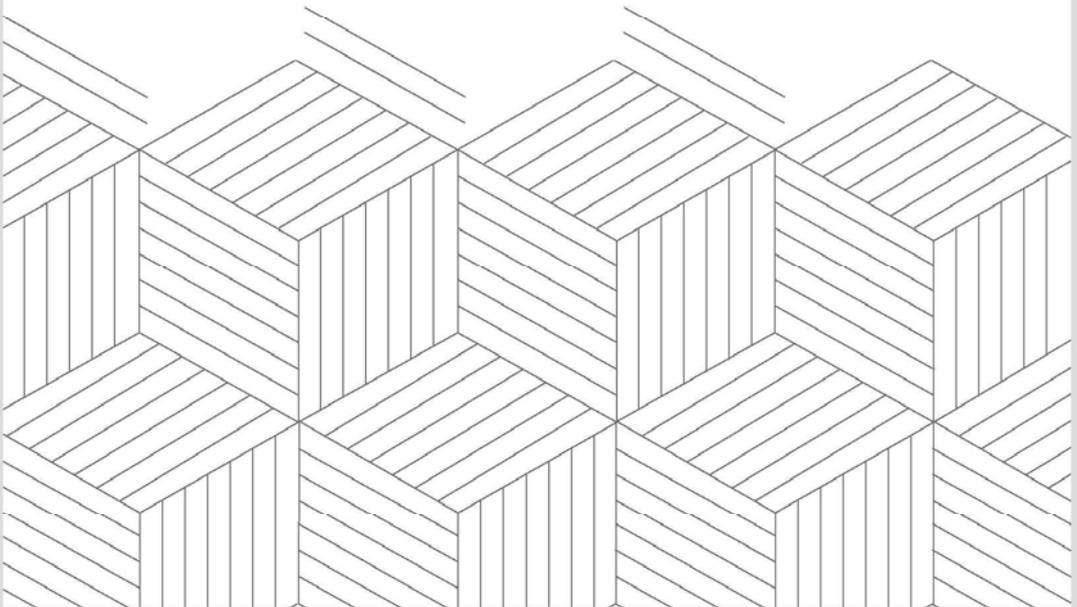
둘째, 양적 연구방법론으로 실증연구를 활용한다. 실증연구는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및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성과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방법론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활용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계량적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실증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인권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진단과 제1기 기본계획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함이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의견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한다. FGI는 인권 기본계획의 주요 대상집단(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FGI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원시 인권 실태 및 제1기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가 견해를 파악하여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개발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2장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변화

- 제1절 인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사례
- 제3절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변화

제1절 인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인권(human right)이라는 개념은 상황적 맥락성을 지닌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권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축적되어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영안 외, 2017, pp. 5-6).

국내 연구로 강성권 외(2013)는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정의한 바 있으며, 허은실(2010)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였다. 김재철 외(2011)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써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명진(2012)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천부적인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에 상관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영안 외(2017)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서재호·이정훈(2018)은 인권의 권리 주체, 권리상대방, 권리내용, 권리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인권이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권리이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권리이며, 그 내용 또는 대상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근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2-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권의 개념

구분	인권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유해정 (2009)	모든 개인이 양도 할 수 없는 존엄성과 고유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를 존중받아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보장받을 권리
허은실 (2010)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광주광역시 (2011)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
정명진 (2012)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천부적인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에 상관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
강성권 외 (2013)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이영안 외 (201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
서재호·이정훈 (2018)	보편적인 권리이자 일반적인 권리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근본적인 권리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15)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적 보장
Abrahams & Wyss(2010)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자료: 이영안 외(2017, p. 6)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

국외 연구로 Abrahams & Wyss(2010)는 인권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로 정의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2015)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적 보장”개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법적 차원에서의 인권의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 개념에 관한 기존 정의를 토대로 할 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로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인권은 특정 누군가가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특성은 관점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특성으로 보편성과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양도불가능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Abrahams & Wyss, 2010; 국가인권위원회, 2011b; 김홍완, 2009; 이영안 외, 2017). 보편성이란 인권의 주체와 관련된 특성이다. 인권은 특정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은 국적과 거주지는 물론 성, 연령, 학력, 인종, 피부색, 소득, 종교, 정치적 사상이나 의견, 문화유산 등에 의한 차별없이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p. 18; 김홍완, 2009, p. 10).

둘째, 인권의 불가분성은 전 세계 모든 인권의 기반과 강조점이 동일하고 평등하며,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은 추상적인 집합적인 단일의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다수의 권리로 구성된다(서재호·이정훈, 2018, p. 170). 인권을 구성하는 다수의 권리 중 하나의 특정 인권이 다른 인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p. 18). 자유와 평등 역시 불가분성을 가지며(김홍완, 2009, p. 11),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국민권익위원회, 2011a, p. 13).

셋째,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모든 인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특성이다. 각각의 인권문제는 결코 다른 인권의 문제들로부터 독립된 것이기 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김영기·김혜선, 2013, p. 125). 결국 모든 인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 인권의 향유는 다른 인권의 향유를 전제로 하며, 한 인권의 실현은 다른 인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p. 18). 특정 개인이 인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개인도 인권을 가진다는 것이며 한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다른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김홍완, 2009, p. 11).

넷째, 인권의 양도불가능성이다. 이는 인권이 특수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탈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Abrahams & Wyss, 2010).

2. 인권도시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적 수준에서 다루어졌던 인권의 실천적 논의는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의 실천적 개념

으로 확대되면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의 주체에 관한 논의도 지방 또는 도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나는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나 지역적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고(이현재, 2013, p. 146), 다른 하나는 도시 단위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해당 도시와 시민들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 단위보다 시민 생활에 더욱 밀착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강현수, 2010, pp. 13-14). 이는 도시가 인권침해나 문제발생의 원인을 직접적인 생활 현장에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권보호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류성진, 2019, p. 76). 결국 인권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위로 도시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UN과 EU는 국가 차원의 논제였던 인권을 도시 차원에서의 실천문제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EU는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을 제시하면서 인권 보호와 관련된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도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도시는 국제인권시민연합(The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용어이다. 국제인권시민연합은 인권도시의 개념을 세계인권선언 외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의 가치를 도시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해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한 ‘광주 인권도시선언’에 명시된 인권도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3.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4. ‘인권도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인권도시’는 또한 실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거주민, 특히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종족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실행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광주인권도시선언 中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류성진(2019)은 인권도시를 “인권의 존중을 대전제로 서로가 연대하고,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존중받으며,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관 협치를 통한 인권친화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권재단은 인권도시를 “지역 차원에서 인권을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및 문화의 총체”로

규정한다(한국인권재단, 2014, p. 5-8).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2016)에서는 인권도시를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도시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견해도 있다. 이소영(2015)에 따르면 협의의 인권도시는 특정 도시가 스스로 인권도시임을 표방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에 비해 광의의 인권도시는 인권조례, 선언 등과 같은 법적인 규범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인권패러다임의 확장은 지방 또는 도시 수준에서 인권도시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도시정책과 사업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류준혁, 2016, p. 24). 이에 따라 인권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도시 차원의 거버넌스에 적용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류성진, 2019, p. 78). 구체적으로 인권도시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헌장 선언, 인권 담당부서 설치,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구제기능 설치,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 영향평가 및 인권지표 도입, 인권보호관 또는 담당관 설치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화 노력과 인권교육, 주민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다(김영기·김혜선, 2013, p. 129; 류성진, 2019, p. 80).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사례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부 부처별 인권 관련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인권을 국가정책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공식적 범정부 계획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과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이 수립·추진된 바 있다. 이후 2018년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를 준용하여 8개 목표를 중심으로 8대 정책과제 및 272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8). 8개 목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인신 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관리

의 국가책임 구축, ②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③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④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군장병의 인권보호와 공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장애인·저소득층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 등 노동권과 식수·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치매 대응 및 국가지원 강화, 생활소음 및 미세먼지 대응 등 주거권과 보건환경권,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권 등에 관한 정책, ⑥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원,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등, ⑦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인권교육, ⑧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8).

〈표 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3대 원칙

구분	내용
인권존중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 -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증진은 국가의 의무임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존중·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 - 국가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분야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함 - 국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 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의무임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 간 이해증진 정책의 적절한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
민주적 참여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참여에 바탕을 두며,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이 필요함

자료: 대한민국정보(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pp. 3-4.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구성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되었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권’을 신설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였다. 둘째,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 목차로 편성하고, 셋째,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표 2-2>와 같다.

2. 광역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12년 9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8월 수립한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추진이 완료된 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 하에 5대 정책목표²⁾,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서울시 인권 환경 및 인권 동향, 그리고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2022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비전, 3대 방향 및 4대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과제는 37개 추진과제와 100개 세부사업(계속과제 30개, 신규과제 70개)로 구성되며, 이 중 중점과제는 10개 추진과제와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표 2-3> 참조).

서울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구성측면에서 전체 과제 중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었던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시, 사업 추진

2)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는 ①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②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③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④ 인권제도 기반구축, ⑤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 애로사항, 기본계획 수정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2-3〉 서울특별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방향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포용하는 인권도시	참여하는 인권도시
정책 목표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 데이터 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확산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 - 인권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자료: 서울시(2018).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p. 18.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2012년 2월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6월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하에 5대 정책목표(① 시민의 인권보장,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증진, ②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③ 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조성, ④ 인권행정·제도·문화·교육의 선진화, ⑤ 시민사회와 소통·상생·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및 3대 원칙(배려, 나눔, 소통)을 설정하였다(〈표 2-4〉 참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① 인종·성별·사회적 지위·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인권 정책 개발, ② 인권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안전이 보장된 무장애 도시설계, ③ 문화적·언어적·종교적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도시조성, ④ 인권행정·문화·교육·홍보강화, ⑤ 부산 지역 인권단체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12개 분야, 65개 실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특징은 첫째, 국제교류 및 인권도시 브랜드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둘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개별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4〉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		
방향	인권의 기본가치에 충실 부산시의 특수성과 인권도시 지향 부산시 중점사업 영역 제시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부산시 시정운영계획·BSC와 연계		
정책 목표	시민의 인권보장,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증진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조성 인권행정·제도·문화·교육의 선진화 시민사회와 소통·상생·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주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권진흥원 설립 - 이동청소년 인문포럼 구성 및 운영 - 인권단체 협력 프로그램 - 장애인경제자립 기반 확대 - 부산노인인권 자킴이단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형 무장애 도시만들기 매뉴얼 작성 - 사회적 약자의 개별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환경 및 관리 프로그램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민을 위한 다문화 교육 실시 - 외국인 차별사례 신고 - 인권전담부서 설치 - 부산인권센터 설치 - 인권 아카데미 - 시민인권문화 의식 확산

자료: 강성권 외(201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009년에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現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대표도시이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6월 ‘제1기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제1기 인권도시 기본계획(2012~2016)’의 비전은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이며, 시민의 삶과 질과 역량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와 광주와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인권도시 국제화’라는 2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과제를 수립·추진하였다.

‘제1기 광주시 인권도시 기본계획’이 포괄적인 ‘인권도시’ 운영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였다(광주광역시, 2017). 제1기 기본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축적된 인권의 제도화 성과 검토를 토대로 최근 인권 환경 및 인권 동향, 그리고 광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2017년~2022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라는 비전 하에 ‘시민의 인권증진’, ‘인권의 기반확대’, ‘인권행정 협

치 강화’ 라는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비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인권행정 고도화, 인권의 주체화, 인권의 협력화, 인권도시 국제화를 제시하고 5대 핵심 분야, 5대 핵심 과제,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2-5〉 참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인권정책과 인권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도시운영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통합계획이라는 점이다(광주광역시, 2017. p. 15). 제1기 인권도시계획의 유지-확장-강화 관점에서 제1기 인권기본계획의 지속성과 인권증진정책과 인권도시계획의 통합을 통해 계획의 정체성과 완결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인권의 제도화 성과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의 실효적 정책 및 시민 인권문제 해결을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인권 신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5〉 광주광역시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			
정책 목표	시민의 인권증진, 인권의 기반확대, 인권행정 협치 강화			
핵심 분야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강화 인권공동체 문화 형성 인권행정 협치 체계 구축 인권도시 광주 위상 강화			
중점 추진 과제	-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없애기 - 노인이 주체가 되는 인권 실현 - 여성참여 확대·안전한 환경 -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청소년 시민역량 참여 강화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인권지표 효율성 제고 - 인권부서 위상 강화 - 인권마을 로드맵 작성 - 시민참여형 인권사업 활성화 - 지역인문경영 문화 형성	-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 공무원·집단별 인권교육 강화 - 인권행정협력 체계 강화 - 인권연구·인권활동 동아리 지원 - 인권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인권행정 지원 기구 설립 - 국내 인권도시 연대회의 운영 - 국내·외 인권도시정책 워크숍 - 인권도시 국제 담론 확산 - 5·18기록물·공간 기념화

자료: 광주광역시(2017).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p. 16.

4)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적 토대는 전

국에서 세 번째로 구축하였다. 하지만 인권제도와 인권정책의 추진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중섭 외, 2016, p. 149). 전라북도는 2016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통해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상기 기초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전라북도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비전은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며, 인권친화 도시기반 조성,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공감 인권정책 강화, 도민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대 정책목표(전략목표)를 설정하여 각 목표별 사업목표 3~4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목표-사업목표 구조를 통해 총37개의 핵심사업을 수립하였다(<표 2-6> 참조).

전라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각 분야별 목표에 따른 방향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지역사업 중 고유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제시하여 복지분야 주요 사업과의 중복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이중섭 외, 2016, p. 113). 둘째, 도민의 인권감수성 강화와 맞춤형 제도적 과제 설계, 그리고 인권취약계층의 주관적·객관적 인권 향상을 위해 공감형 인권정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6> 전라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정책 목표	인권도시 기반 조성	맞춤형 인권 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공감인권정책 강화	도민 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강화 - 도민 인권선언 - 인권친화도시 조성 - 인권지표/지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센터 설치운영 - 인권옴브즈만 위촉 - 인권영향평가 도입 - 인권행정 매뉴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복지정책 강화 - 사회안전망 확대 - 인권보호체계 수립 - 맞춤형 인권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회 활성화 - 도민인권포럼 구축 - 도민인권 자원체계 구축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 인권강사 양성 - 전북인권현장 제정/공포 - 인권지표/지수개발 - 도민인권 아카데미 운영 - 인권친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조례/정책 정비 - 인권우수기관 인증 -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 인권사례 발굴조사 - 인권전담 법률상담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건강증진센터 운영 - 무장애시설 인증 - 교통약자지원 시설 확대 - 독거노인 돌봄지원 확대 - 복지시설 인권가이드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단체 지원 - 도민 인권협의회 운영 - 인권보호관 운영 - 아동인권위원회 운영 - 전북인권지도 개발 - 도민 인권포럼 구성·운영

자료: 이중섭 외(2016). 전라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p. 98.

3. 기초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舊 남구)는 2016년 7월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실 인권조사팀을 신설(2015)하였다. 이후 201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지혜로운 시민이 만드는 인권문화도시 미추홀’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정책목표(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②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④ 인권행정 기반 구축, ⑤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18개 정책과제, 53개 중점과제, 9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박인혜 외, 2018, pp. 179-18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권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의 차별성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와 일치한다. 둘째, 내용 측면에서 인권 거버넌스와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권교육기본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전담부서 설치, 인권교육 네트워크 분석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표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지혜로운 시민이 만드는 인권문화도시 남구		
정책 목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인권행정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정책 과제	- 노인 학대 예방과 활기찬 노년 만들기 - 장애인 권리보장과 참여 증진 - 아동·청소년 돌봄과 사회안전망 구축 - 이주배경주민의 다양성 존중 - 여성의 일자리 증진과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 -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인권문화와 가치 확산 - 인권행정 집행부서 설 및 운영 - 인권친화적인 미추홀구청사	- 인권위원회 책무성 강화 - 관련 위원들의 능동적 참여 확대 -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인권정책 현안을 위한 조사와 평가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자료: 박인혜 외(20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p. 18.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2012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년 ‘양성평등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2013. 11. 14.)하였다. 이후 인권위원회를 구성(2014. 3. 12.)하는 등 인권친화적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봉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사항과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도시로의 의미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2030년 미래 대비, 사회적 약자 최우선, 도봉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기본계획 수립원칙 하에 최근 3개년 계획(2018년~2020년)인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8〉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도시 도봉			
방향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 존중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존경받는 공정한 인권도시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정책 목표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존중 문화 조성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인권 거버넌스 구축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위험·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 - 건강한 생활 보장 - 최저생활 보장으로 자립기반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안전 -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 장애인 이동권 및 의사소통권 보장 - 노인의 일할 권리 보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민간분야 인권 교육 강화 - 인권홍보 강화 및 다채널 정보 제공 - 인권존중 문화 조성 - 다문화가족(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회 활성화 - 인권기본조례 개정 - 인권 행정기반 조성 - 민관협력 인권 네트워크 구축 - 인권도시 교류협력

자료: 서울특별시 도봉구(2017).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p. 16.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인권도시 도봉’이고, ①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②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인권도시, ③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목표(①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②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③ 인권존중 문화 조성, ④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⑤ 인권 거버넌스 구축), 18개 분야,

32개 핵심과제, 129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였다(서울특별시 도봉구, 2016. p. 15).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권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봉구는 민관협력 인권 네트워크 구축 및 인권도시 교류 협력을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등 민간-공공 부문 간, 인권도시 간 네트워크와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인권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다채널 정보제공 등 인권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 10)하였다. 해당 조례에서는 인권증진 정책과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와 백서 발간,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예방대책 등의 인권증진방안과 인권지수 개발 시행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연 1회 이상) 실시, 인권교재와 강사 양성 및 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은평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년(2018년~2022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의 마을 은평’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로 ① 지역사회 약자의 인권보장, ② 인권환경의 거점 확보, ③ 인권문화와 교육, ④ 인권제도의 토대 구축을 제시하고 19개 분야, 39개 중점과제, 8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

은평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권 문화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평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시점은 수원시보다 늦지만 인권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성 축제, 영화제, 문화제 활성화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노동과 경제권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평구는 체불과 차별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권을 보당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장, 관리자, 사회적 기업인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동인권 매뉴얼을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체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과 구 관할 기업의 노동권 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의 마을, 은평						
정책 목표	지역사회 약자의 인권보장			인권환경의 거점 확보	인권가치 문화와 교육	인권제도의 토대 구축	
권리 영역	보행권	접근권	주거/생활권	건강권	배울 권리	참여권	노동/경제권
분야	지역 이동	시설 정보	주거 생활 인식	보건 의료 복지	문화 인권교육 교육환경	인권행정 시민사회 구정활동	노동 경제 지역개발

자료: 서울시 은평구(2017). 은평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제3절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1. 수원시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수원시는 전체 면적이 $121.05km^2$ 이고, 4개의 행정구역인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로 구성된다. 행정구역별 면적을 살펴보면, 면적은 권선구가 $47.17km^2$ 로 가장 넓고, 인구밀도도 $16.149명/km^2$ 으로 가장 높다(〈표 2-10〉 참조).

〈그림 2-1〉 수원시 행정구역 지리적 분포



〈표 2-10〉 수원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면적 현황

(단위 : 명, km^2)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인구	1,240,869	292,214	387,618	194,664	366,373
면적	121.05	33.34	47.17	12.86	27.68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 검색일자: 2019년 4월 15일

수원시 인구는 2019년 3월 현재 총 1,240,869명이며, 가구 수는 495,670가구이다. 수원시 인구와 가구 수 모두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시작년도인 2016년 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2-11〉 참조).

〈표 2-11〉 수원시 연도별 인구 및 세대 현황

(단위 : 명, 세대)

구분	인구			세대		
	2016년	2017년	2019년	2016년	2017년	2019년
합 계	1,231,224	1,240,480	1,240,869	472,194	483,558	495,670
장안구	302,819	300,455	292,214	115,507	116,486	116,630
권선구	367,584	375,255	387,618	140,772	145,514	152,913
팔달구	212,983	207,671	194,664	88,317	87,895	84,690
영통구	347,838	357,099	366,373	127,598	133,663	141,437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 검색일자: 2019년 4월 15일

주: 2019년 통계치는 3월 31일 기준임

성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626,394명으로 여성 614,475명 보다 많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2016년 대비 증가하였다. 행정구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권선구 인구가 387,6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통구 366,373명, 장안구 292,214명, 팔달구 194,66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권선구와 영통구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안구와 팔달구는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12〉 참조).

한편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41,27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 거주 외국인 중 남성은 22,045명으로 여성 19,225명 보다 많다. 행정구역별 외국인 분포를 살펴보면, 팔달구가 15,241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장안구가 7,492명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팔달구의 경우 내국인은 가장 적지만 외국인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2〉 참조).

〈표 2-12〉 수원시 내국인 및 외국인 성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240,869	604,349	595,250	1,202,628	605,835	596,793	41,270	22,045	19,225
장안구	292,214	143,481	141,241	293,828	147,806	146,022	7,492	3,968	3,524
권선구	387,618	189,380	185,875	376,680	190,047	186,633	10,938	5,670	5,268
팔달구	194,664	105,181	102,490	179,423	90,376	89,047	15,241	8,439	6,802
영통구	366,373	180,073	177,026	358,774	180,445	178,329	7,599	3,968	3,631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 검색일자: 2019년 4월 15일

주: 2019년 통계치는 3월 31일 기준임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0~14세의 유소년 인구가 173,571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4%로 나타나고 있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907,390명으로 전체의 76.29%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11,667명으로 9.29%로 나타나고 있다(〈표 2-13〉 참조).

〈표 2-13〉 수원시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			구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전 체	1,202,628	601,152	592,889	100.00	50.38	49.62
0~4세	54,920	29,847	28,310	4.57	2.35	2.21
5~9세	59,528	30,741	28,876	4.95	2.55	2.40
10~14세	59,123	30,410	28,553	4.92	2.53	2.39
유소년 인구 (0~14세)	173,571	90,998	85,739	14.44	7.43	7.00
14~19세	73,942	40,818	37,441	6.15	3.21	2.94
20~24세	91,899	48,549	44,688	7.64	3.99	3.66
25~29세	84,129	47,455	42,260	7.83	4.16	3.67
30~34세	90,108	48,417	45,175	7.49	3.90	3.59
35~39세	105,837	53,058	51,338	8.80	4.49	4.31
40~44세	102,904	52,794	52,085	8.56	4.29	4.27
45~49세	112,207	55,158	56,710	9.33	4.65	4.68
50~54세	97,968	49,757	47,838	8.15	4.09	4.06
55~59세	90,678	43,824	41,935	7.54	3.85	3.69
60~64세	57,718	26,567	27,445	4.80	2.38	2.42
생산가능인구 (15~64세)	907,390	466,397	446,915	76.29	39.01	37.29
65~69세	37,176	16,491	17,926	3.09	1.49	1.60
70~74세	27,947	12,137	14,748	2.32	1.05	1.27
75~79세	22,575	8,372	12,202	1.88	0.78	1.10
80~84세	13,924	4,405	8,503	1.16	0.40	0.75
85세 이상	10,045	2,352	6,856	0.84	0.22	0.62
노인 인구 (65세 이상)	111,667	43,757	60,235	9.29	3.94	5.34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주: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2. 수원시 인권 권리주체별 현황

1) 수원시 유소년 인구 현황

수원시 유소년(0~14세) 인구는 173,571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 중 14.4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유소년 인구 중 남자는 90,998명, 여자는 85,739명으로 남아가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14〉 수원시 유소년(0~14세)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			수원시 전체 인구대비 구성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유소년 인구 (0~14세)	173,571	90,998	85,739	14.44	7.43	7.00
0~4세	54,920	29,847	28,310	4.57	2.35	2.21
5~9세	59,528	30,741	28,876	4.95	2.55	2.40
10~14세	59,123	30,410	28,553	4.92	2.53	2.39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2) 수원시 여성 인구 현황

수원시 여성 인구는 596,793명으로 남성 605,835명 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4개 행정구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2-15〉 수원시 여성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남	여
전 체	1,240,480	625,921	614,599
장안구	300,455	151,287	149,168
권선구	375,255	189,380	185,875
팔달구	207,671	105,181	102,490
영통구	357,099	180,073	177,026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3) 수원시 저소득 계층 현황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총 12,515가구, 18,128명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팔달구가 3,953가구로 가장 많고, 수급자 기준으로는 권선구가 5,39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6〉 수원시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수, 명)

연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 수	인원	가구	인원
		남	여		남	여				
2014	9,074	6,003	7,817	8,402	5,345	6,621	63	817	672	1,037
2015	11,998	8,241	10,088	11,437	7,676	9,043	70	779	561	831
2016	12,395	8,369	10,103	11,882	7,842	9,145	69	770	513	719
2017	12,515	8,288	9,840	12,084	7,794	8,985	73	795	431	554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표 2-17〉 수원시 행정구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수, 명)

구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남	여		남	여		
장안구	3,088	2,016	2,451	4,308	1,947	2,361	119	159
권선구	3,921	2,538	2,861	5,233	2,467	2,766	133	166
팔달구	3,953	2,480	2,735	3,836	2,417	2,649	117	149
영통구	1,553	999	1,253	1,491	963	1,209	62	80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수원시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은 전체 3,107가구, 7,672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69가구, 4,002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1,038가구, 3,670명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표 2-18〉 수원시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 가구 수, 명)

연도	합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수	가구원	가구 수	가구원	가구 수	가구원
2013	3,173	8,452	2,268	5,976	905	2,476
2014	3,323	8,815	2,415	6,351	908	2,464
2015	3,121	7,872	2,224	5,602	897	2,270
2016	3,296	8,165	1,160	3,973	2,136	4,192
2017	3,107	7,672	1,038	3,670	2,069	4,002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4) 수원시 장애인 현황

수원시 등록된 장애인은 총 41,908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한다. 수원시 장애인 수는 201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59.3%로 여성 40.7%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9〉 수원시 연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성별	
		남	여
2013	39,856	23,597	16,259
2014	40,406	24,003	16,403
2015	40,693	24,185	16,508
2016	41,411	24,576	16,835
2017	41,908	24,861	17,047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장애등급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6급(11,498명), 5급(8,510명), 3급(7,062명), 4급(5,770명), 2급(5,591명), 1급(3,47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0〉 수원시 장애인 장애등급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3	39,856	3,245	5,152	6,717	5,613	8,070	11,059
2014	40,406	3,290	5,259	6,794	5,664	8,158	11,241
2015	40,693	3,327	5,328	6,853	5,682	8,223	11,280
2016	41,411	3,393	5,507	6,954	5,767	8,393	11,397
2017	41,908	3,477	5,591	7,062	5,770	8,510	11,498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5) 수원시 노인 현황

수원시 노인(만 65세 이상) 인구는 총 111,667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 중 9.29%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노인(43,757명) 보다 여성 노인(60,235명)의 수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노인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2-21〉 수원시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			구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노인인구	111,667	43,757	60,235	9.29	3.94	5.34
65~69세	37,176	16,491	17,926	3.09	1.49	1.60
70~74세	27,947	12,137	14,748	2.32	1.05	1.27
75~79세	22,575	8,372	12,202	1.88	0.78	1.10
80~84세	13,924	4,405	8,503	1.16	0.40	0.75
85세 이상	10,045	2,352	6,856	0.84	0.22	0.62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65,901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59.0%에 해당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66.0%로 남성 노인 50.0%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2〉 수원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단위 : 명, %)

연도	전체노인(명)			수급자 수(명)			수급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4	94,472	39,240	55,232	56,697	19,640	37,057	60	50	67
2015	99,750	41,695	58,055	58,763	20,398	38,365	59	49	66
2016	103,992	43,757	60,235	60,881	21,416	39,465	59	49	66
2017	111,667	47,480	64,187	65,901	23,801	42,100	59	50	66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전체 26,711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3.9%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 독거노인이 70.8%로 남성 독거노인 29.2% 보다 많다.

〈표 2-23〉 수원시 독거노인 성별 구조

(단위 : 명)

연도	합계	남	여
2015	23,212	7,048	16,164
2016	24,578	7,518	17,060
2017	26,711	7,802	18,909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614명이고, 저소득 노인은 1,391명이다.

〈표 2-24〉 수원시 저소득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합계	65세~79세	80세 이상	합계	65세~79세	80세 이상
2015	5,163	3,690	1,473	1,294	777	517
2016	6,500	4,910	1,590	1,886	1,112	774
2017	5,614	4,239	1,375	1,391	821	570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6) 수원시 외국인 현황

수원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58,30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인구수는 37,852명 수준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국적 동포가 13,08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2,747명으로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5〉 수원시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주민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기타
2015	51,258	16,122	3,543	3,956	2,728	8,802	2,272	13,835
2016	54,284	14,311	4,245	3,921	5,169	10,629	2,818	13,191
2017	58,302	12,747	4,329	4,136	5,574	13,081	3,360	15,075

자료: 수원시청 - 수원시 외국인주민 현황(2017.11.01. 기준)

*외국인 주민: 58,302명

*외국인 등록인구수: 37,852명(제58회 수원기본통계)

수원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출신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3월 현재 외국인 등록인구 41,270명 중 중국국적 출신이 28,552명, 베트남 2,947명, 일본 494명, 미국 390명, 필리핀 378명, 대만 374명, 영국 94명, 기타 8,041명으로 나타나 중국국적 출신 외국인 가장 많다.

〈표 2-26〉 수원시 국적별 외국인 등록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총 계	41,270	7,492	10,938	15,241	7,599
중 국	28,552	4,910	9,204	11,154	3,284
베트남	2,947	1,182	569	303	893
일 본	494	68	95	54	277
미 국	390	64	46	68	212
필리핀	378	73	151	60	94
영 국	94	21	10	16	47
대 만	374	92	69	104	109
기 타	8,041	1,082	794	3,482	2,683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 검색일자: 2019년 4월 15일

주: 2019년 통계치는 3월 31일 기준임

3.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아동복지시설 현황

수원시 어린이집 시설은 2017년 기준 1,153개소가 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가정 어린이집 712개소로 가장 많고 민간 어린이집 36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38개소, 직장 어린이집 23개소,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8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4개소, 협동 어린이집 4개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27〉 수원시 어린이집 현황(2017)

(단위 : 시설 수, 명)

연도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협동	직장	가정
2013	1,284	30	4	374	8	3	14	851
2014	1,311	32	4	381	8	5	17	864
2015	1,266	35	4	379	8	4	17	819
2016	1,187	37	4	367	8	4	21	746
2017	1,153	38	4	364	8	4	23	712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유아 수는 2017년 기준 34,588명이고, 연도별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16,956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11,911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72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28〉 수원시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 시설 수, 명)

연도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협동	직장	가정
2013	34,010	2,035	250	16,674	509	56	1,430	13,056
2014	34,954	2,189	228	17,295	489	87	1,612	13,054
2015	34,457	2,501	233	16,789	484	71	1,765	12,614
2016	34,454	2,727	240	16,894	485	74	1,957	12,077
2017	34,588	2,724	240	16,956	514	77	2,166	11,911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주: 2016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작성기준 변경(법인→전체)

수원시 유치원 시설은 2018년 기준 총 195개원으로 이 중 사립 유치원이 104개원, 공립 유치원이 91개원으로 분포되어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총 20,185명이고, 유치원 교원 수는 1,49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9〉 수원시 유치원 현황

(단위 : 시설 수, 명)

연도	유치원 수			원아 수	교원 수
	합계	공립	사립		
2014	188	88	100	19,297	1,264
2015	191	89	102	20,400	1,390
2016	196	90	106	21,223	1,486
2017	197	91	106	20,801	1,465
2018	195	91	104	20,185	1,49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e-지방지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은 2017년 기준 총 4개소로 모두 양육시설에 해당한다. 4개의 양육시설 생활인원은 총 188명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동·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 2-30〉 수원시 아동복지시설 현황(2017)

(단위 : 시설 수, 명)

연도	합계				양육시설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생활인원	시설 수	생활인원
2013	4	45	50	225	4	225
2014	4	19	38	206	4	206
2015	4	12	27	191	4	191
2016	4	21	21	188	4	188
2017	4	44	44	188	4	188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주: 생활인원은 현재 시설에 남아 생활하는 인원임

2) 여성복지시설 현황

수원시 여성복지시설은 2017년 기준 총 3개소로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시설 1개소, 모자일시 보호시설 1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곳이다. 여성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생활인원은 총 44명으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개소 14명, 모자일시 보호시설 1개소 23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1〉 수원시 여성복지시설 현황(2017)

(단위 : 시설 수, 명)

연도	합계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일시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2013	3	56	1	22	-	-	1	32	1	2
2014	3	51	1	24	-	-	1	21	1	6
2015	4	44	-	-	1	12	1	28	1	4
2016	2	23	-	-	1	16	-	-	1	7
2017	3	44	-	-	1	14	1	23	1	7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주: 생활인원은 현재 시설에 남아 생활하는 인원임

3)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은 2017년 기준 총 16개소이고, 155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 시설 수용자는 여성(57명) 보다는 남성(98명)이 많고, 18세 이상(152명)이 18세 미만 보다 많다. 장애종류별로는 대부분의 수용자가 정신지체 장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2〉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17)

(단위 : 시설 수, 명)

연도	합계		현재 수용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성별		연령별		장애종류별				
			남	여	18세 미만	18세 이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기타
2013	3	102	69	33	-	102	2	-	-	91	9
2014	3	101	68	33	-	101	10	-	-	90	1
2015	3	101	69	32	-	101	10	-	-	88	3
2016	16	157	99	58	7	150	2	-	-	138	17
2017	16	155	98	57	3	152	2	-	-	139	14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주: 2016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작성기준 변경(법인→전체)

4) 노인복지시설 현황

수원시의 노인복지시설은 2017년 기준 총 617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노인복지시설 중 여가복지시설이 510개소로 가장 많고 의료복지시설 75개소, 재가복지시설 25개소, 주거복지시설 7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2-33〉 수원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시설 수)

연도	합계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3	569	5	65	38	461	-
2014	591	5	76	29	481	-
2015	594	5	76	24	489	-
2016	602	6	73	25	498	-
2017	617	7	75	25	510	-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총 510개소 중 경로당이 488개소로 가장 많고, 노인교실 17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2-34〉 수원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7)

(단위 : 시설 수, 명)

연도	합계 (시설 수)	노인복지관				경로당 (시설 수)	노인교실 (시설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남	여		
2013	461	4	111	50	61	445	12
2014	481	5	131	56	75	463	13
2015	489	5	131	55	76	470	14
2016	498	5	131	57	74	478	15
2017	510	5	147	58	89	488	17

자료: 제58회 수원기본통계(2017년 기준)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 사례분석 결과와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근 인권 보호와 관련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많은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인권도시로의 실천운동은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앞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추

진되고 있는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증장기 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35〉 참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을 국가정책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의 증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제1차 기본계획(2007~2011)과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을 거쳐 2018년부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8개 목표를 중심으로 8대 정책과제 및 27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8).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기본계획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사례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완료된 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하에 4대 정책목표, 37개 추진과제와 100개 세부사업(계속과제: 30개, 신규과제 70개)으로 구성되며, 이 중 중점과제는 10개 추진과제와 25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부산광역시는 2014년 6월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이라는 비전하에 5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12개 분야, 65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광주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로 2011년 6월 ‘제1기 인권도시 기본계획(2012~2016)’을 거쳐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2017~2022)을 수립하였다.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 5대 핵심 과제,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전라북도는 2016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통해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며, 4대 정책목표(전략목표) 및 정책목표별 사업목표, 총37개의 핵심사업을 수립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사례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은평구의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01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지혜로운 시민이 만드는 인권문화도시 미추홀”이라는 비전하에 5대 정책목표, 18개 정책과제, 53개 중점과제, 9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였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인권도시 도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3대 기본방향, 5대 정책목표, 18개 분야, 32개 핵심과제, 129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35〉 주요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주요 내용

주체	기본계획 명칭	비전	정책목표
서울특별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①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②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③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④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	① 시민의 인권보장,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증진 ②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③ 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조성 ④ 인권행정·제도·문화·교육의 선진화 ⑤ 시민사회와 소통·상생·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	① 시민의 인권증진 ② 인권의 기반확대 ③ 인권행정 협치 강화
전라남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① 인권친화 도시기반 조성 ②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 ③ 사회적 약자 공감 인권정책 강화 ④ 도민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천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지혜로운 시민이 만드는 인권문화도시 남구	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②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④ 인권행정 기반 구축 ⑤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도시 도봉	①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②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③ 인권존중 문화 조성 ④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⑤ 인권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의 마을, 은평	① 지역사회 약자의 인권보장 ② 인권환경의 거점 확보 ③ 인권문화와 교육 ④ 인권제도의 토대 구축

셋째,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최근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의 마을 은평”이라는 비전을 담은 ‘은평구 인권증진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정책목표, 19개 분야, 39개 중점과제, 8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서울시 은평구, 2017).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중장기 기본계획 사례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관련 기본계획의 구성내용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도시 인프라 조성, 인권교육 및 문화 확산, 인권행정 및 제도 개선, 인권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실현을 정책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라는 정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됨에 따라 효과적인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원시의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인권교육 및 문화 확산, 인권행정 및 제도 개선, 인권 거버넌스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중점과제나 세부과제의 내용에 있어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도 해당 지역을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계획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의 도시환경 및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원시는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시작년도인 2016년에 비해 인구수와 가구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41,27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증진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수는 1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29%이고, 이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59.0%에 해당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 관련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는 3개년 단위의

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달리 2기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기본계획의 중점내용이 인권행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 인권교육 및 문화 확산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이나 인권담당 부서나 인력 구성,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행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등과 같이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이나 홍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권의 제도화 성과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의 실효적 정책 및 시민 인권문제 해결을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인권 신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원시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의 발전기에 접어든 수원시의 경우 1기 계획에서 완성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실천적인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점과제 선정과 세부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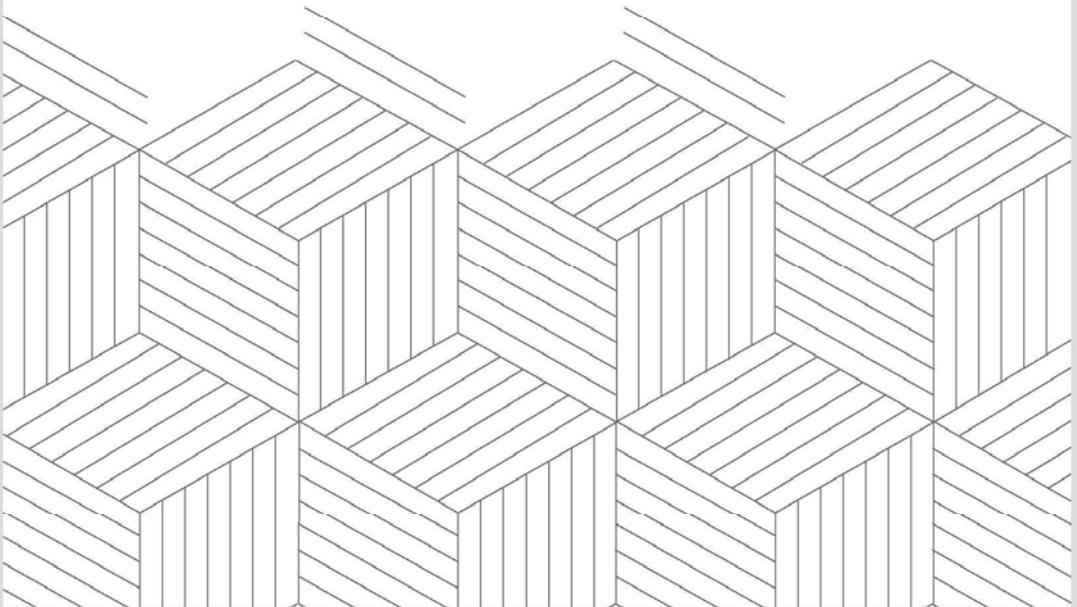
다섯째, 효과적인 인권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정기 모니터링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기본계획 수정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원시 역시 효과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한 선순환적 인권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평가 및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제1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수원시민 대상

제2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대상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제1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수원시민 대상

1.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인권차별 및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인권 실태조사 특성상 설문문항이 다소 어렵고 취업이나 직장생활, 가정 등 성인에 적합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019년 1월 기준 수원시 전체 인구는 1,200,038명이며, 20세 미만은 236,855명으로 19.6%, 20세 미만을 제외한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 인구는 963,183명이다(〈표 3-1〉 참조).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표본크기는 유효 표본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수원시민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79\%$ p이다. 표본설계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성별(남, 여), 연령(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비례할당방법으로 표본크기를 〈표 3-2〉와 같이 할당하였다.

〈표 3-1〉 수원시 거주지별, 성별, 연령별 인구(20세 미만 제외)

(단위 : 명, %)

지역	연령구분	합계		남		여	
수원시 전체	20~29세	187,195	(19.4)	98,694	(20.5)	88,501	(18.4)
	30~39세	191,210	(19.9)	98,567	(20.5)	92,643	(19.3)
	40~49세	209,182	(21.7)	105,101	(21.8)	104,081	(21.6)
	50~59세	193,771	(20.1)	97,236	(20.2)	96,535	(20.1)
	60세 이상	181,825	(18.9)	82,335	(17.1)	99,490	(20.7)
	연령별 합계	963,183	(100.0)	481,933	(100.0)	481,250	(100.0)
장안구	20~29세	45,143	(19.5)	24,589	(21.3)	20,554	(17.7)
	30~39세	36,929	(16.0)	18,878	(16.3)	18,051	(15.6)
	40~49세	49,724	(21.5)	24,679	(21.4)	25,045	(21.6)
	50~59세	49,630	(21.4)	24,888	(21.5)	24,742	(21.3)
	60세 이상	49,976	(21.6)	22,472	(19.5)	27,504	(23.7)
	연령별 합계	231,402	(100.0)	115,506	(100.0)	115,896	(100.0)
권선구	20~29세	56,421	(18.5)	29,341	(19.2)	27,080	(17.8)
	30~39세	64,408	(21.2)	33,470	(21.9)	30,938	(20.4)
	40~49세	62,969	(20.7)	32,219	(21.1)	30,750	(20.3)
	50~59세	62,668	(20.6)	31,070	(20.4)	31,598	(20.8)
	60세 이상	58,043	(19.1)	26,572	(17.4)	31,471	(20.7)
	연령별 합계	304,509	(100.0)	152,672	(100.0)	151,837	(100.0)
팔달구	20~29세	28,272	(18.5)	14,769	(19.2)	13,503	(17.7)
	30~39세	26,748	(17.5)	14,247	(18.6)	12,501	(16.4)
	40~49세	29,651	(19.4)	15,275	(19.9)	14,376	(18.9)
	50~59세	31,314	(20.5)	15,833	(20.6)	15,481	(20.3)
	60세 이상	36,898	(24.1)	16,624	(21.7)	20,274	(26.6)
	연령별 합계	152,883	(100.0)	76,748	(100.0)	76,135	(100.0)
영통구	20~29세	57,359	(20.9)	29,995	(21.9)	27,364	(19.9)
	30~39세	63,125	(23.0)	31,972	(23.3)	31,153	(22.7)
	40~49세	66,838	(24.4)	32,928	(24.0)	33,910	(24.7)
	50~59세	50,159	(18.3)	25,445	(18.6)	24,714	(18.0)
	60세 이상	36,908	(13.5)	16,667	(12.2)	20,241	(14.7)
	연령별 합계	274,389	(100.0)	137,007	(100.0)	137,382	(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연령별 합계 대비 구성비율임

자료: 수원시청, 수원통계, "5세 계급별 인구현황(외국인 제외)-2019년 1월 31일 기준"을 분석함

〈표 3-2〉 표본 구성: 시민 대상

(단위 : 명, %)

지역	연령구분	합계		남		여	
수원시 전체	20~29세	157	(19.6)	78	(19.2)	79	(20.1)
	30~39세	165	(20.6)	83	(20.4)	82	(20.8)
	40~49세	178	(22.3)	88	(21.7)	90	(22.8)
	50~59세	169	(21.1)	84	(20.7)	85	(21.6)
	60세 이상	131	(16.4)	73	(18.0)	58	(14.7)
	연령별 합계	800	(100.0)	406	(100.0)	394	(100.0)
장안구	20~29세	36	(18.4)	18	(18.6)	18	(18.2)
	30~39세	32	(16.3)	16	(16.5)	16	(16.2)
	40~49세	43	(21.9)	21	(21.6)	22	(22.2)
	50~59세	44	(22.4)	22	(22.7)	22	(22.2)
	60세 이상	41	(20.9)	20	(20.6)	21	(21.2)
	연령별 합계	196	(100.0)	97	(100.0)	99	(100.0)
권선구	20~29세	48	(19.1)	23	(18.1)	25	(20.2)
	30~39세	55	(21.9)	28	(22.0)	27	(21.8)
	40~49세	52	(20.7)	26	(20.5)	26	(21.0)
	50~59세	54	(21.5)	27	(21.3)	27	(21.8)
	60세 이상	42	(16.7)	23	(18.1)	19	(15.3)
	연령별 합계	251	(100.0)	127	(100.0)	124	(100.0)
팔달구	20~29세	24	(19.4)	12	(18.5)	12	(20.3)
	30~39세	23	(18.5)	12	(18.5)	11	(18.6)
	40~49세	27	(21.8)	13	(20.0)	14	(23.7)
	50~59세	28	(22.6)	14	(21.5)	14	(23.7)
	60세 이상	22	(17.7)	14	(21.5)	8	(13.6)
	연령별 합계	124	(100.0)	65	(100.0)	59	(100.0)
영통구	20~29세	49	(21.4)	25	(21.4)	24	(21.4)
	30~39세	55	(24.0)	27	(23.1)	28	(25.0)
	40~49세	56	(24.5)	28	(23.9)	28	(25.0)
	50~59세	43	(18.8)	21	(17.9)	22	(19.6)
	60세 이상	26	(11.4)	16	(13.7)	10	(8.9)
	연령별 합계	229	(100.0)	117	(100.0)	112	(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연령별 합계 대비 구성비율임

2)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는 일반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컴퓨터를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인권 개념, 분야별 인권 실태에 대한 체감도,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 및 설문지 구성에 대해 인권분야 관련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연구진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설문조사는 <표 3-3>과 같이 수원시민의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 수원의 인권 실태,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 수원의 인권교육 및 행정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 3-3> 설문문항

분야	조사항목(문항)
수원시민의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수원시의 인권의식 비교 • 수원시에서 추진해야 할 인권 영역
수원의 인권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인권 침해/차별 발생 원인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 인권 침해 및 차별 발생시 조치 경험 및 대응 방안
수원의 인권교육 및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의 경험 및 필요성

2. 응답자 특성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 3-4>와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분포의 경우 남성이 50.8%(406명)로 여성 49.3%(394명) 보다 많았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22.3%(178명)로 가장 많고, 50대가 21.1%(169명), 30대가 20.6%(165명), 20대가 19.6%(157명), 60대 이상이 16.4%(131명)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셋째,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권선구 주민이 31.4%(251명)로 가장 많고, 영통구 주민이 28.6%(229명), 장안구 주민이 24.5%(196명), 팔달구 주민이 15.5%(124명) 등으로 분포되었다.

넷째, 인권 권리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적 인권 약자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

자의 23.4%(187명, 중복포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4.0%(112명)로 가장 많고, 저소득층 응답자가 7.9%(63명), 장애인이 4.3%(34명), 다문화 가정 및 성소수자가 각각 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응답자 특성: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성별	남성	406	(50.8)
	여성	394	(49.3)
연령별	20대	157	(19.6)
	30대	165	(20.6)
	40대	178	(22.3)
	50대	169	(21.1)
	60대 이상	131	(16.4)
거주지역별	권선구	251	(31.4)
	영통구	229	(28.6)
	장안구	196	(24.5)
	팔달구	124	(15.5)
권리 주체별	장애인	34	(4.3)
	다문화 가정	5	(0.6)
	비정규직	112	(14.0)
	저소득층	63	(7.9)
	성소수자	5	(0.6)
	해당없음	613	(76.6)
합 계		800	(100.0)

3. 분석결과

1)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

(1) 인권개념

인권개념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5〉와 같다. 인권개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을 ① 시정정보 공개, 시민

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②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③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④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⑤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⑥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 ⑦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 ⑧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⑨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제공의 권리, ⑩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⑪ 사회적 약자의 권리, ⑫ 기타 중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드는 생각(1순위+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6.0%(44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32.4%(259명),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25.8%(206명),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가 23.8%(190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15.6%(125명),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12.4%(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드는 생각: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32	(4.0)	17	(2.1)	49	(6.1)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76	(22.0)	83	(10.4)	259	(32.4)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297	(37.1)	151	(19.0)	448	(56.0)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84	(10.5)	122	(15.3)	206	(25.8)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2	(1.5)	35	(4.4)	47	(5.9)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	26	(3.3)	62	(7.8)	88	(11.0)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	63	(7.9)	127	(16.0)	190	(23.8)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30	(3.8)	69	(8.7)	99	(12.4)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제공의 권리	3	(0.4)	6	(0.8)	9	(1.1)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18	(2.3)	52	(6.5)	70	(8.8)
사회적 약자의 권리	57	(7.1)	68	(8.6)	125	(15.6)
기타	2	(0.3)	3	(0.4)	5	(0.6)
합계	800	(100.0)	795	(100.0)	800	(100.0)

(2) 인권의식

수원시민들이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첫째, 'UN이 제정하여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별 응답 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49.5%(39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의 알지 못함이 28.3%(226명), 상당히 알고 있음이 11.3%(90명), 전혀 알지 못함이 6.8%(54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4.3%(34명)로 나타났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전체 응답자의 54.3%(434명)로 가장 많으며, 상당히 알고 있음이 20.1%(161명), 거의 알지 못함이 17.9%(143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5.0%(40명), 전혀 알지 못함이 2.8%(22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인권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45.9%(367명)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의 알지 못함이 25.8%(206명), 상당히 알고 있음이 19.3%(154명), 전혀 알지 못함이 5.6%(45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3.5%(28명)로 조사되었다.

넷째, '수원시가 제정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결과 거의 알지 못함이 전체 응답자의 52.0%(416명)로 가장 많고, 전혀 알지 못함이 21.8%(174명),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19.9%(159명), 상당히 알고 있음이 5.6%(45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0.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거의 알지 못함이 전체 응답자의 51.4%(411명)로 가장 많으며, 전혀 알지 못함이 22.9%(183명),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19.6%(157명), 상당히 알고 있음이 5.0%(40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1.1%(9명)로 나타났다.

수원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에 대한 인지 정도는 대부분 보통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Mean=3.07)를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Mean=2.89), '세계인권선언'(Mean=2.78),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Mean=2.12), '수원시 인권센터'(Mean=2.10)에 대한 인지 정도는 2점대 평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직접 운영 중인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와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3-6〉 인권 관련 인지 정도: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상당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평균 (5점 만점)
세계인권선언	54 (6.8)	226 (28.3)	396 (49.5)	90 (11.3)	34 (4.3)	2.78
대한민국 헌법	22 (2.8)	143 (17.9)	434 (54.3)	161 (20.1)	40 (5.0)	3.07
국가인권위원회	45 (5.6)	206 (25.8)	367 (45.9)	154 (19.3)	28 (3.5)	2.89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174 (21.8)	416 (52.0)	159 (19.9)	45 (5.6)	6 (0.8)	2.12
수원시 인권센터	183 (22.9)	411 (51.4)	157 (19.6)	40 (5.0)	9 (1.1)	2.10

2) 인권실태

(1) 인권상황

수원시민들이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3-7〉과 같다. 분석결과 거의 알지 못함이 전체 응답자의 60.4%(483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음이 23.8%(190명), 전혀 생각해본 적 없음이 10.9%(87명), 대체로 잘 알고 있음이 4.6%(37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0.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수원시 인권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 수원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생각해본 적 없음	거의 알지 못함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대체로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평균 (5점 만점)
수원시 인권상황	87 (10.9)	483 (60.4)	190 (23.8)	37 (4.6)	3 (0.4)	2.23

(2) 인권실태

수원시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인권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세부적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11개 분야별 인권은 〈표 3-8〉과 같다.

〈표 3-8〉 인권 구분

분야	내용
정보공개·참여권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자유권	자유로운 의사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보장권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안전권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이동·접근권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
환경권	오염 방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
노동권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및 적정 임금 보장
교육권	학교·성인·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문화권	예술 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
건강권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 의료 체계 지원
연대권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보호 등

수원시의 인권 분야별 인권 존중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3-9〉와 같다.

첫째, ‘수원시에서 정보공개·참여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62.4%(499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존중된다가 19.6%(157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14.9%(119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1.8%(14명), 매우 존중된다가 1.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16.6% 보다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21.0%로 많았다.

둘째, ‘수원시에서 자유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59.8%(478명)로 가장 많고, 존중된다가 27.6%(221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10.0%(80명), 매우 존중된다가 1.8%(14명), 전혀 존중되지 않다가 0.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29.4%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10.9%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수원시에서 사회보장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56.0%(448명)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29.1%,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이 14.9%로 조사되었다.

넷째, ‘수원시에서 안전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50.9%(407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존중된다가 28.3%(226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15.3%(122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2.9%(23명), 매우 존중된다가 2.8%(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31.0%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

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1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수원시에서 이동·접근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45.0%(360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존중된다가 36.5%(292명), 존중되지 않다가 9.8%(78명), 매우 존중된다가 7.5%(60명), 전혀 존중되지 않다가 1.3%(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접근권에 관한 존중 정도는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44.0%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11.0% 보다 약 30.0%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수원시에서 환경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53.9%(431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25.9%,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이 20.3%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수원시에서 노동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61.3%(490명)로 가장 많고,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이 20.3%,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1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수원시에서 교육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50.3%(40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3.1%(265명), 존중되지 않다가 10.6%(85명), 매우 존중된다가 4.9%(39명), 전혀 존중되지 않다가 1.1%(9명)로 분석되었다.

아홉째, '수원시에서 문화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50.3%(402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존중된다가 30.%(244명), 존중되지 않다가 12.6%(101명), 매우 존중된다가 5.5%(44명), 전혀 존중되지 않다가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수원시에서 건강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53.3%, 426명), 존중된다(31.3%, 250명), 존중되지 않는다(9.8%, 78명), 매우 존중된다(4.4%, 35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1.4%, 11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열한번째, '수원시에서 연대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59.1%(473명)로 가장 많으며,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21.0%,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18.9%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민들이 인식하는 수원시의 권리 존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분야별 수원시의 권리 존중 정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접근권'(Mean=3.3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권'(Mean=3.30), '건강권'(Mean=3.28), '문화권'(Mean=3.2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권'의 경우 평균 2.9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인권분야별 인권 존중 정도: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존중되지 않음	존중되지 않음	보통	존중됨	매우 존중됨	평균 (5점 만점)
정보공개·참여권	14 (1.8)	119 (14.9)	499 (62.4)	157 (19.6)	11 (1.4)	3.04
자유권	7 (0.9)	80 (10.0)	478 (59.8)	221 (27.6)	14 (1.8)	3.19
사회보장권	13 (1.6)	106 (13.3)	448 (56.0)	216 (27.0)	17 (2.1)	3.15
안전권	23 (2.9)	122 (15.3)	407 (50.9)	226 (28.3)	22 (2.8)	3.13
이동·접근권	10 (1.3)	78 (9.8)	360 (45.0)	292 (36.5)	60 (7.5)	3.39
환경권	29 (3.6)	133 (16.6)	431 (53.9)	183 (22.9)	24 (3.0)	3.05
노동권	20 (2.5)	142 (17.8)	490 (61.3)	134 (16.8)	14 (1.8)	2.98
교육권	9 (1.1)	85 (10.6)	402 (50.3)	265 (33.1)	39 (4.9)	3.30
문화권	9 (1.1)	101 (12.6)	402 (50.3)	244 (30.5)	44 (5.5)	3.27
건강권	11 (1.4)	78 (9.8)	426 (53.3)	250 (31.3)	35 (4.4)	3.28
연대권	8 (1.0)	151 (18.9)	473 (59.1)	153 (19.1)	15 (1.9)	3.02

(3)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1순위+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권’이 전체 응답자의 45.5%(3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권’이 38.1%(305명), ‘환경권’이 23.9%(191명), ‘노동권’이 16.9%(135명), ‘정보공개·참여권’이 14.9%(119명), ‘건강권’이 12.9%(103명), ‘교육권’이 12.5%(100명), ‘자유권’이 11.3%(90명), ‘연대권’이 8.6%(69명), ‘이동·접근권’이 8.3%(66명), ‘문화권’이 6.4%(51명)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3-10〉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원시민들이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인 안전권과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개선 및 증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0〉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정보공개·참여권	78	(9.8)	41	(5.2)	119	(14.9)
자유권	53	(6.6)	37	(4.7)	90	(11.3)
사회보장권	183	(22.9)	122	(15.4)	305	(38.1)
안전권	237	(29.6)	127	(16.0)	364	(45.5)
이동·접근권	33	(4.1)	33	(4.2)	66	(8.3)
환경권	78	(9.8)	113	(14.2)	191	(23.9)
노동권	51	(6.4)	84	(10.6)	135	(16.9)
교육권	29	(3.6)	71	(9.0)	100	(12.5)
문화권	14	(1.8)	37	(4.7)	51	(6.4)
건강권	24	(3.0)	79	(10.0)	103	(12.9)
연대권	20	(2.5)	49	(6.2)	69	(8.6)
합계	800	(100.0)	793	(100.0)	800	(100.0)

3)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 인권침해 경험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수원시민들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듣거나 경험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첫째,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을 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11.7%(94명)가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6.5%(5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8%(30명), 직접 경험이 1.4%(11명), 배우자 경험이 0.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1.5%(92명)로 조사되었다. 인권침해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5.5%(44명)로 가장 많으며,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3%(26명), 직접 경험이 2.3%(18명), 배우자 경험이 0.9%(7명)로 분석되었다.

셋째, ‘언론이나 인터넷에서의 사생활 공개 경험’은 14.1%(124명)가 경험한 적 있으며,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8.6%(69명)로 가장 많고,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3%(26명), 직접 경험이 2.5%(20명), 배우자 경험이 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기관의 종사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9.2%(154명)가 차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0.1%(81명)로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6.0%(48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4%(27명), 배우자 경험이 0.8%(6명)이다.

다섯째,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거나 신앙을 강요받은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5.1%(121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7.3%(58명), 직접 경험이 5.6%(45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 2.4%(19명), 배우자 경험 1.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1.7%(94명)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6.3%(5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접 경험이 3.4%(27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3%(18명), 배우자 경험이 1.1%(9명) 순이다.

일곱째,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자유가 제한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5%(76명)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5.3%(42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3%(18명), 직접 경험이 1.6%(13명), 배우자 경험이 0.8%(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단체 결성 또는 단체 가입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5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4.4%(35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9%(15명), 직접 경험이 1.8%(14명), 배우자 경험이 1.1%(9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아홉째, ‘기본적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14.4%(115명)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7.5%(60명)가 가장 많고,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9%(31명), 직접 경험이 3.3%(26명), 배우자 경험이 0.8%(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인권침해 경험: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지인 경험	경험한 적 없음
불법 연행, 구금, 심문	11 (1.4)	6 (0.8)	30 (3.8)	52 (6.5)	706 (88.3)
표현의 자유 제한	18 (2.3)	7 (0.9)	26 (3.3)	44 (5.5)	708 (88.5)
사생활 공개	20 (2.5)	5 (0.6)	26 (3.3)	69 (8.6)	687 (85.9)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인권 침해	48 (6.0)	6 (0.8)	27 (3.4)	81 (10.1)	646 (80.8)
종교나 신앙으로 인한 제약 또는 강요	45 (5.6)	11 (1.4)	19 (2.4)	58 (7.3)	679 (84.9)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27 (3.4)	9 (1.1)	18 (2.3)	50 (6.3)	706 (88.3)
집회나 시위 참여 제한	13 (1.6)	6 (0.8)	18 (2.3)	42 (5.3)	724 (90.5)
단체 결성 또는 가입의 자유 제한	14 (1.8)	9 (1.1)	15 (1.9)	35 (4.4)	735 (91.9)
사회보장 수혜 제한	26 (3.3)	6 (0.8)	31 (3.9)	60 (7.5)	685 (85.6)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료의 제한	41 (5.1)	12 (1.5)	32 (4.0)	97 (12.1)	635 (79.4)
가족으로부터 인권 침해	43 (5.4)	9 (1.1)	21 (2.6)	39 (4.9)	699 (87.4)

열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0.6%(165명)가 경험하였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2.1%(97명)로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5.1%(41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4.0%(32명), 배우자 경험이 1.5%(12명) 등이다.

열한 번째,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 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6%(101명)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험대상자의 경우 직접 경험이 5.4%(43명)로 가장 많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4.9%(39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6%(21명), 배우자 경험이 1.1%(9명) 순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시민이 약 80~90%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시민이 약 20% 정도는 존재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민이 가장 많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내용은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20.6%(165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당한 경험’이 19.2%(154명),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거나 신앙을 강요받은 경험’이 15.1%(121명), ‘기본적 생존을 위한 사

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14.4%(115명), '언론이나 인터넷에서의 사생활 공개 경험'이 14.1%(1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대상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 본 경험'을 제외한 모든 내용에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 본 경험'의 경우 직접 경험(5.4%)이 친척 및 지인 경험(4.9%)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차별 경험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수원시민들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듣거나 경험한 차별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첫째,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24.1%(193명)가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대상자의 경우 직접 경험이 12.4%(99명)로 가장 많고,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0.0%(80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3%(26명), 배우자 경험이 2.4%(1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7.5%(140명)로 조사되었다. 차별 경험 대상자는 친척 및 지인 경험이 9.9%(79명)로 가장 많으며, 직접 경험이 4.6%(37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6%(21명), 배우자 경험이 1.9%(15명)로 분석되었다.

셋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13.1%(105명)가 경험한 적 있으며,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7.1%(57명)로 가장 많고,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8%(20명), 직접 경험이 1.9%(15명), 배우자 경험이 0.9%(7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8.0%(224명)가 차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이 13.6%(109명)로 가장 많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0.9%(87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5.1%(41명), 배우자 경험이 2.9%(23명)이다.

다섯째,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5.9%(127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7.1%(57명), 직접 경험이 5.0%(40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 3.4%(27명), 배우자 경험 1.9%(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6.0%(208명)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2.8%(10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접 경험이 10.0%(80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8%(30명), 배우자 경험이 2.8%(22명) 순이다.

일곱째,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3.6%(109명)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7.6%(61명), 직접 경험이 3.0%(24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4%(19명), 배우자 경험이 2.0%(1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특정 국적(인종, 피부색)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9.0%(72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5.0%(40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0%(16명), 직접 경험과 배우자 경험이 각각 1.4%(11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아홉째,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19.6%(157명)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차별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9.4%(75명)가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8.6%(69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5%(28명), 배우자 경험이 2.0%(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2%(66명)가 경험하였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8.0%(64명)로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4.9%(39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8%(22명), 배우자 경험이 1.6%(13명) 등이다.

열한 번째, ‘한부모, 미혼모 등 가족상황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2%(98명)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7.6%(61명), 직접 경험이 2.6%(21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1%(17명), 배우자 경험이 1.4%(11명) 순이다.

열두 번째, ‘종교, 사상, 이념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0.5%(84명)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척 및 지인 경험이 6.1%(49명)로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3.0%(24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9%(15명), 배우자 경험이 1.3%(10명)로 분석되었다.

열세 번째, ‘학력이나 학벌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22.1%(177명)가 차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0.9%(87명), 직접 경험이 8.1%(65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5.1%(41명), 배우자 경험이 2.1%(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열네 번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5.2%(42명)가 경험한 적 있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2.1%(1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8%(14명), 배우자 경험이 1.0%(8명), 직접 경험이 0.6%(5명) 순이다.

〈표 3-12〉 차별 경험: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지인 경험	경험한 적 없음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	99 (12.4)	19 (2.4)	26 (3.3)	80 (10.0)	607 (75.9)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	37 (4.6)	15 (1.9)	21 (2.6)	79 (9.9)	660 (82.5)
장애가 있다는 이유	15 (1.9)	7 (0.9)	30 (3.8)	57 (7.1)	695 (86.9)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	109 (13.6)	23 (2.9)	41 (5.1)	87 (10.9)	576 (72.0)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	40 (5.0)	15 (1.9)	27 (3.4)	57 (7.1)	673 (84.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80 (10.0)	22 (2.8)	30 (3.8)	102 (12.8)	592 (74.0)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24 (3.0)	16 (2.0)	19 (2.4)	61 (7.6)	691 (86.4)
특정 국적(인종, 피부색)이라는 이유	11 (1.4)	11 (1.4)	16 (2.0)	40 (5.0)	728 (91.0)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 조건의 이유	69 (8.6)	16 (2.0)	28 (3.5)	75 (9.4)	643 (80.4)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의 이유	39 (4.9)	13 (1.6)	22 (2.8)	64 (8.0)	734 (91.8)
한 부모, 미혼모 등 가족상황의 이유	21 (2.6)	11 (1.4)	17 (2.1)	61 (7.6)	702 (87.8)
종교, 사상, 이념의 이유	24 (3.0)	10 (1.3)	15 (1.9)	49 (6.1)	716 (89.5)
학력이나 학벌의 이유	65 (8.1)	17 (2.1)	41 (5.1)	87 (10.9)	623 (77.9)
성소수자라는 이유	5 (0.6)	8 (1.0)	14 (1.8)	17 (2.1)	758 (94.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차별을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약 70~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차별을 경험한 수원시민이 약 30% 정도는 존재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민이 차별을 경험한 분야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28.0%(224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26.0%(208명),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24.1%(193명), ‘학력이나 학벌의 이유로 차별 경험’이 22.1%(177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원시 내에서 수원시민이 나이로 인한 차별,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학력으로 인한 차별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차별 경험 대상자의 경우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과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 경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배우자 경험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과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 경험'은 직접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방법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대처방법에 관한 분석은 인권침해 및 차별을 직접 경험한 시민과 경험하지 않은 시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수원시 내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처방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13>과 같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4.9%(279명)이다.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한 조치 분석결과,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이 전체 응답자의 66.7%(18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이 38.7%(108명),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이 15.4%(43명),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가 15.1%(4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표 3-14> 참조) '행동을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가 전체 응답자의 41.7%(7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이익이나 보복이 두려워서'가 13.3%(24명), '큰 문제가 아니라서 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가 각각 9.4%(17명), '대응하기가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 또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가 8.3%(15명),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와 '내가 약자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가 각각 6.1%(11명), '기타'가 5.6%(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9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13〉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한 조치: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157	(56.3)	29	(16.2)	186	(66.7)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56	(20.1)	52	(29.1)	108	(38.7)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	19	(6.8)	24	(13.4)	43	(15.4)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6	(2.2)	9	(5.0)	15	(5.4)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7	(2.5)	9	(5.0)	16	(5.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9	(3.2)	3	(1.7)	12	(4.3)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1	(0.4)	6	(3.4)	7	(2.5)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4	(1.4)	10	(5.6)	14	(5.0)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3	(1.1)	7	(3.9)	10	(3.6)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16	(5.7)	26	(14.5)	42	(15.1)
집회 또는 1인 시위	1	(0.4)	1	(0.6)	2	(0.7)
기타	0	(0.0)	3	(1.7)	3	(1.1)
합계	279	(100.0)	179	(100.0)	279	(100.0)

〈표 3-14〉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행동을 해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75	(41.7)
불이익이나 보복이 두려워서	24	(13.3)
큰 문제가 아니라서 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17	(9.4)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17	(9.4)
대응하기가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 시간이 많이 들어서	15	(8.3)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11	(6.1)
내가 약자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11	(6.1)
기타	10	(5.6)
합계	180	(100.0)

둘째, 수원시 내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본인이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경우 대처방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15〉와 같다.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할 조치 분석결과(1순위+2순위),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

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이 전체 응답자의 37.2%(194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이 36.9%(192명),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이 30.3%(158명),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이 26.3%(137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3-15〉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할 경우 취할 조치: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23	(4.4)	9	(1.8)	32	(6.1)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170	(32.6)	24	(4.7)	194	(37.2)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	87	(16.7)	105	(20.8)	192	(36.9)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68	(13.1)	69	(13.6)	137	(26.3)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68	(13.1)	90	(17.8)	158	(30.3)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27	(5.2)	48	(9.5)	75	(14.4)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21	(4.0)	27	(5.3)	48	(9.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16	(3.1)	28	(5.5)	44	(8.4)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10	(1.9)	37	(7.3)	47	(9.0)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28	(5.4)	65	(12.8)	93	(17.9)
집회 또는 1인 시위	1	(0.2)	3	(0.6)	4	(0.8)
기타	2	(0.4)	1	(0.2)	3	(0.6)
합계	521	(100.0)	506	(100.0)	521	(100.0)

〈표 3-16〉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할 경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행동을 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서	13	(41.9)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6	(19.4)
행동할 의지, 자신감이 없어서	3	(9.7)
대응하기가 번거로워서	3	(9.7)
큰 문제가 아니라서	2	(6.5)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2	(6.5)
기타	2	(6.5)
합계	31	(100.0)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할 경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표 3-16> 참조) ‘행동을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가 전체 응답자의 41.9%(13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19.4%(16명), ‘행동할 의지, 자신감이 없어서’와 ‘대응하기가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가 각각 9.7%(3명), ‘큰문제가 아니라서’와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기타’가 각각 6.5%(2명)로 나타났다.

(4)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수원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표 3-17>과 같다. 수원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1순위+2순위)으로 ‘직업/소득 등 경제적 수준’이 전체 응답자의 56.3%(450명)로 가장 많고, ‘출신국적’이 23.3%(186명), ‘장애유무’가 19.6%(157명), ‘성별’이 17.3%(138명), ‘출신학교/학력수준’이 15.9%(127명), ‘가족구성 형태(이혼, 재혼 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14.5%(116명), ‘나이’가 13.6%(109명), ‘정치적 신념(사상/이념 등)’이 13.3%(1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원인: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출신국적	139	(17.4)	47	(6.3)	186	(23.3)
성별	65	(8.1)	73	(9.8)	138	(17.3)
직업, 소득 등 경제적 수준	295	(36.9)	155	(20.7)	450	(56.3)
나이	47	(5.9)	62	(8.3)	109	(13.6)
외모	17	(2.1)	36	(4.8)	53	(6.6)
종교	10	(1.3)	11	(1.5)	21	(2.6)
가족구성 형태(이혼, 재혼 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	43	(5.4)	73	(9.8)	116	(14.5)
장애유무	63	(7.9)	94	(12.6)	157	(19.6)
출신학교, 학력수준	36	(4.5)	91	(12.2)	127	(15.9)
출신지역	12	(1.5)	21	(2.8)	33	(4.1)
병력(에이즈, 정신질환)	15	(1.9)	14	(1.9)	29	(3.6)
정치적 신념(사상, 이념 등)	44	(5.5)	62	(8.3)	106	(13.3)
성적 지향	7	(0.9)	5	(0.7)	12	(1.5)
기타	7	(0.9)	4	(0.5)	11	(1.4)
합계	800	(100.0)	748	(100.0)	800	(100.0)

(5) 수원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요구(needs)

수원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원시에서 필요한 것을 분석한 결과(1순위+2순위),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가 전체 응답자의 37.5%(30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가 36.3%(289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가 32.9%(263명), ‘사회복지 분야 시설/지원 확충’이 27.6%(221명),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인권 담당부서, 인권위원회의 확대)’가 24.5%(196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대’가 21.5%(172명), ‘인권 관련 전문가의 확대/충원’이 8.6%(69명),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가 6.4%(51명), ‘기타’가 0.4%(3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18〉 참조).

이는 수원시민들은 수원시민의 인권의식과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에 대한 개선요구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원시가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18〉 인권보장을 위한 필요 사항: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	203	(25.4)	97	(12.7)	300	(37.5)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106	(13.3)	90	(11.8)	196	(24.5)
인권 관련 전문가의 확대/충원	30	(3.8)	39	(5.1)	69	(8.6)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	179	(22.4)	110	(14.4)	289	(36.1)
사회복지 분야 시설/지원 확충	112	(14.0)	109	(14.3)	221	(27.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94	(11.8)	169	(22.1)	263	(32.9)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15	(1.9)	36	(4.7)	51	(6.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대	58	(7.3)	114	(14.9)	172	(21.5)
기타	3	(0.4)	0	(0.0)	3	(0.4)
합계	800	(100.0)	764	(100.0)	800	(100.0)

5)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필요성

수원시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간 필요하다’가 전체 응답자의 44.6%(35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3.0%(264명), ‘보통

이다'가 19.5%(156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3%(18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약간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이 77.6%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2.9%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표 3-19〉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9〉 인권교육 필요성: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5점 만점)
인권교육의 필요성	5 (0.6)	18 (2.3)	156 (19.5)	357 (44.6)	264 (33.0)	4.07

(2)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74.1%(593명)가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5.9%(207명)만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0〉 참조). 이는 10명 중 2명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기에 서 살펴본 인권교육의 필요성 결과와 연계해볼 때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참여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0〉 인권교육 경험 여부: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있음		없음	
인권교육 경험	207	(25.9)	593	(74.1)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207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3-21〉 참조), '인권침해 사례 소개'가 전체 응답자의 59.4%(123명)로 가장 많고,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가 37.7%(78명), '노동/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이 33.3%(69명),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이 30.0%(62명), '인권침해시 대응방안 교육'이 28.0%(58명),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이해와 의미 등)'이 25.1%(52명),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가 11.1%(23명), '기타'가

1.0%(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1〉 인권교육 내용: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인권침해사례 소개	123	(59.4)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78	(37.7)
노동/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	69	(33.3)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62	(30.0)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	58	(28.0)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 이해와 의미 등)	52	(25.1)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23	(11.1)
기타	2	(1.0)
합계	207	(100.0)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3-2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42.0%(87명)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이 40.6%(84명), ‘공공기관’이 25.6%(53명), ‘온라인 커뮤니티’가 14.0%(29명), ‘시민단체’가 10.6%(22명), ‘기타’가 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인권교육 장소: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학교	87	(42.0)
직장	84	(40.6)
공공기관	53	(25.6)
온라인 커뮤니티	29	(14.0)
시민단체	22	(10.6)
기타	6	(2.9)
합계	207	(100.0)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207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3-23〉과 같다. 인권교육 만족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6.0%(116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이 28.5%(59명), '불만족'이 9.2%(19명), '매우 만족'이 3.9%(8명), '매우 불만족'이 2.4%(5명)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만족 + 매우 만족)이 32.4%로 부정적인 응답(매우 불만족 + 불만족) 11.6% 보다 높다. 하지만 5점 만점으로 평균값이 3.22로 보통 수준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원시민들의 인권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3〉 인권교육 만족도: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만점)
인권교육 만족도	5 (0.6)	18 (2.3)	156 (19.5)	357 (44.6)	264 (33.0)	4.07

(3) 인권교육 관련 요구(needs)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관련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향후 인권교육을 받는다면 적절한 장소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 전체 응답자의 37.1%(29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교'가 26.0%(208명), '직장'이 16.4%(131명), '온라인 커뮤니티'가 11.1%(89명), '시민단체'가 9.0%(72명), '기타'가 0.4%(3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시민 입장에서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확대·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3-24〉 인권교육시 희망 장소: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학교	297	(37.1)
직장	208	(26.0)
공공기관	131	(16.4)
온라인 커뮤니티	89	(11.1)
시민단체	72	(9.0)
기타	3	(0.4)
합계	800	(100.0)

향후 인권교육을 받는다면 어떠한 내용을 희망하는지 분석한 결과(1순위+2순위), '인권침해시 대응방안 교육'이 전체 응답자의 56.5%(452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인권침해 사례 소개’가 33.4%(267명), ‘노동/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이 31.5%(252명),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가 29.0%(232명),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이해와 의미 등)’이 23.3%(186명),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이 13.6%(109명),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가 6.9%(55명), ‘기타’가 0.3%(2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표 3-13〉 참조)와 연계시켜 논의해 볼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9.4%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시 ‘인권침해 및 차별 대응방안 교육’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5〉 인권교육 희망 내용: 시민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77	(9.6)	32	(4.2)	109	(13.6)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136	(17.0)	96	(12.7)	232	(29.0)
인권침해사례 소개	165	(20.6)	102	(13.5)	267	(33.4)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	202	(25.3)	250	(33.1)	452	(56.5)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19	(2.4)	36	(4.8)	55	(6.9)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94	(11.8)	92	(12.2)	186	(23.3)
맞춤형 인권교육	105	(13.1)	147	(19.5)	252	(31.5)
기타	2	(0.3)	0	(0.0)	2	(0.3)
합계	800	(100.0)	755	(100.0)	800	(100.0)

제2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대상

1.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수원시 공무원이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018년 11월 기준 수원시 공무원은 3,234명이며, 본청 공무원이 1,026명(31.7%), 의회사무국이 40명(1.2%), 직속기관이 203명(6.3%), 사업소가 468명(14.5%), 구청이 932명(28.8%), 동이 565명(17.5%)이다(〈표 3-26〉 참조).

수원시 공무원 대상 인권 실태조사 표본크기는 유효 표본을 기준으로 수원시 공무원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설계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동), 직급(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지도직)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비례할당방법으로 표본크기를 〈표 3-27〉과 같이 할당하였다.

〈표 3-26〉 수원시 부서별 공무원 수

(단위 : 명, %)

구분	부서구분	합계		
전체	본청	1,026	(31.7)	
	의회사무국	40	(1.2)	
	직속기관	203	(6.3)	
	사업소	468	(14.5)	
	구청	932	(28.8)	
	동	565	(17.5)	
	합계	3,234	(100.0)	
본청	시민소통기획관	15	(1.5)	
	감사관	28	(2.7)	
	일자리정책관	15	(1.5)	
	언론담당관	14	(1.4)	
	홍보기획관	16	(1.6)	
	청년정책관	9	(0.9)	
	기획조정	195	(19.0)	
	경제정책	124	(12.1)	
	복지여성	100	(9.7)	
	문화체육교육	73	(7.1)	
	도시정책	107	(10.4)	
	환경	115	(11.2)	
	안전교통	108	(10.5)	
	도시개발	74	(7.2)	
	군공항	33	(3.2)	
	본청 합계	1,026	(100.0)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35	(87.5)
		전문위원	5	(12.5)
의회사무국 합계		40	(100.0)	
직속기관 및 사업소	보건소	151	(22.5)	
	농업기술센터	52	(7.7)	
	상수도	101	(15.1)	
	화성	38	(5.7)	
	도서관	109	(16.2)	
	박물관	27	(4.0)	
	서울사무소	6	(0.9)	
	미술관사업소	36	(5.4)	
	공원녹지	45	(6.7)	
	도로교통관리	80	(11.9)	
	도시안전통합센터	26	(3.9)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계	671	(100.0)	
	구청계	권선구	402	(26.9)
영통구		368	(24.6)	
장안구		359	(24.0)	
팔달구		368	(24.6)	
구청계 합계		1,497	(100.0)	

주: 괄호 안은 부서별 합계 대비 구성비율임

자료: 수원시청, 수원통계, 공무원 현황은 2018년 11월 30일 기준을 분석함

〈표 3-27〉 표본 구성: 공무원

(단위 : 명, %)

직급	부서구분	합계		직급	부서구분	합계	
전체	본청	252	(31.5)	7급	본청	82	(36.0)
	의회사무국	9	(1.1)		의회사무국	3	(1.3)
	직속기관	50	(6.3)		직속기관	17	(7.5)
	사업소	116	(14.5)		사업소	36	(15.8)
	구청	232	(29.0)		구청	59	(25.9)
	동	141	(17.6)		동	31	(13.6)
	합계	800	(100.0)		합계	228	(100.0)
4급	본청	3	(42.9)	8급	본청	59	(32.2)
	의회사무국	0	(0.0)		의회사무국	2	(1.1)
	직속기관	1	(14.3)		직속기관	12	(6.6)
	사업소	2	(28.6)		사업소	24	(13.1)
	구청	1	(14.3)		구청	54	(29.5)
	동	0	(0.0)		동	32	(17.5)
	합계	7	(100.0)		합계	183	(100.0)
5급	본청	12	(27.9)	9급	본청	30	(18.9)
	의회사무국	1	(2.3)		의회사무국	1	(0.6)
	직속기관	3	(7.0)		직속기관	4	(2.5)
	사업소	5	(11.6)		사업소	19	(11.9)
	구청	11	(25.6)		구청	59	(37.1)
	동	11	(25.6)		동	46	(28.9)
	합계	43	(100.0)		합계	159	(100.0)
6급	본청	66	(38.2)	연구직/ 지도직	본청	0	(0.0)
	의회사무국	2	(1.2)		의회사무국	0	(0.0)
	직속기관	10	(5.8)		직속기관	3	(42.9)
	사업소	26	(15.0)		사업소	4	(57.1)
	구청	48	(27.7)		구청	0	(0.0)
	동	21	(12.1)		동	0	(0.0)
	합계	173	(100.0)		합계	7	(100.0)

주: 괄호 안은 직급별 합계 대비 구성비율임

3)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공무원 대상 인권 실태조사는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1:1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인권 개념, 분야별 인권 실태에 대한 체감도,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 및 설문지 구성에 대해 인권분야 관련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연구진 회의를 거쳐 확정 되었다3).

2. 응답자 특성

수원시 공무원 대상 인권 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 3-28>과 같다.

<표 3-28> 응답자 특성: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성별	남성	327	(40.9)
	여성	472	(59.1)
연령별	20대	131	(16.4)
	30대	287	(35.9)
	40대	190	(23.8)
	50대	188	(23.5)
	60대 이상	3	(0.4)
직급별	4급	7	(0.9)
	5급	43	(5.4)
	6급	177	(22.2)
	7급	231	(28.9)
	8급	183	(22.9)
	9급	158	(19.8)
소속별	본청	256	(32.0)
	의회	9	(1.1)
	직속기관	40	(5.0)
	사업소	122	(15.3)
	구청	232	(29.0)
	동	140	(17.5)
합계		799	(100.0)

3) 수원시 공무원 대상 인권 실태조사의 측정도구는 수원시민 대상 인권 실태조사 측정도구와 동일함

첫째, 응답자의 성별분포의 경우 여성이 59.1%(472명)로 남성 40.9%(327명) 보다 많았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35.9%(287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23.8%(190명), 50대가 23.5%(188명), 20대가 16.4%(131명), 60대 이상이 0.4%(3명)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7급이 28.9%(231명)로 가장 많고, 8급이 22.9%(183명), 6급이 22.2%(177명), 9급이 19.8%(158명), 5급이 5.4%(43명), 4급이 0.9%(7명) 등으로 분포되었다.

넷째, 응답자의 소속별 분포를 살펴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2.0%(256명)로 가장 많으며, 구청이 29.0%(232명), 동이 17.5%(140명), 사업소가 15.3%(122명), 직속기관이 5.0%(4명), 의회가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

1)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

(1) 인권개념

인권개념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29>와 같다. 인권개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을 ①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②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③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④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⑤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⑥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 ⑦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 ⑧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⑨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제공의 권리, ⑩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⑪ 사회적 약자의 권리, ⑫ 기타 중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드는 생각(1순위+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9.7%(47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44.7%(355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25.8%(205명),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20.8%(165명),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가 14.1%(112명),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이 8.1%(64명),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가 7.6%(60명),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7.4%(59명)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3-29〉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드는 생각: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25	(3.1)	39	(5.0)	64	(8.1)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00	(25.2)	155	(20.0)	355	(44.7)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314	(39.5)	160	(20.7)	474	(59.7)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57	(7.2)	108	(14.0)	165	(20.8)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4	(1.8)	20	(2.6)	34	(4.3)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	20	(2.5)	40	(5.2)	60	(7.6)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	39	(4.9)	73	(9.4)	112	(14.1)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17	(2.1)	42	(5.4)	59	(7.4)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제공의 권리	2	(0.3)	7	(0.9)	9	(1.1)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10	(1.3)	18	(2.3)	28	(3.5)
사회적 약자의 권리	93	(11.7)	112	(14.5)	205	(25.8)
기타	3	(0.4)	0	(0.0)	3	(0.4)
합계	794	(100.0)	774	(100.0)	794	(100.0)

(2) 인권의식

수원시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0〉과 같다. 첫째, 'UN이 제정하여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별 응답 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61.0%(48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의 알지 못함이 19.1%(153명), 상당히 알고 있음이 13.8%(110명), 전혀 알지 못함이 3.3%(26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2.9%(23명)로 나타났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전체 응답자의 56.9%(455명)로 가장 많으며, 상당히 알고 있음이 29.1%(233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6.8%(54명), 거의 알지 못함이 6.3%(50명), 전혀 알지 못함이 1.0%(8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인권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56.1%(448명)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당히 알고 있음이 24.3%(194명), 거의 알지 못함이 10.2%(81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7.0%(56명), 전혀 알지 못함이 2.4%(19명)로 조사되었다.

넷째, '수원시가 제정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결과 부분

적으로 알고 있음이 48.9%(391명)로 가장 많고, 거의 알지 못함이 26.5%(212명), 상당히 알고 있음이 16.8%(134명), 전혀 알지 못함이 4.6%(37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3.3%(26명) 등이다.

다섯째,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44.6%(357명), 거의 알지 못함이 24.9%(199명), 상당히 알고 있음이 18.5%(148명), 전혀 알지 못함이 6.9%(55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5.1%(41명)로 나타났다.

수원시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 정도는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에 대한 인지 정도는 대부분 보통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Mean=3.34)와 '우리나라 인권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Mean=3.23)를 제외한 '세계인권선언'(Mean=2.94),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Mean=2.88), '수원시 인권센터'(Mean=2.90)에 대한 인지 수준은 2점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민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원시가 직접 운영중인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와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3-30〉 인권 관련 인지 정도: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상당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평균 (5점 만점)
세계인권선언	26 (3.3)	153 (19.1)	488 (61.0)	110 (13.8)	23 (2.9)	2.94
대한민국 헌법	8 (1.0)	50 (6.3)	455 (56.9)	233 (29.1)	54 (6.8)	3.34
국가인권위원회	19 (2.4)	81 (10.2)	448 (56.1)	194 (24.3)	56 (7.0)	3.23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37 (4.6)	212 (26.5)	391 (48.9)	134 (16.8)	26 (3.3)	2.88
수원시 인권센터	55 (6.9)	199 (24.9)	357 (44.6)	148 (18.5)	41 (5.1)	2.90

2) 인권실태

(1) 인권상황

수원시 공무원들이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3-31〉과 같다.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이 전체 응답자의 47.6%(374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거의 알지 못함이 36.2%(284명), 대체로 잘 알고 있음이 12.0%(94명), 전혀

생각해본 적 없음이 3.1%(24명), 매우 잘 알고 있음이 1.1%(9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수원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2.72로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수원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생각해본 적 없음	거의 알지 못함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대체로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평균 (5점 만점)
수원시 인권상황	24 (3.1)	284 (36.2)	374 (47.6)	94 (12.0)	9 (1.1)	2.72

(2) 인권실태

수원시의 인권분야별 인권 존중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3-32〉와 같다. 첫째, ‘수원시에서 정보공개·참여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존중된다가 전체 응답자의 55.5%(44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4%(226명), 매우 존중된다가 14.1%(112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1.8%(14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0.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69.6%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2.2% 보다 높은 것으로 많았다.

둘째, ‘수원시에서 자유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존중된다가 57.1%(454명)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가 27.7%(220명), 매우 존중된다가 12.8%(102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1.8%(14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0.6% 순이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69.9%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2.4%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수원시에서 사회보장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존중된다가 전체 응답자의 57.2%(455명)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31.2%, 248), 매우 존중된다(9.8%, 78명), 존중되지 않는다(3.5%, 12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0.3%, 2명) 순이다. 사회보장권 역시 정보공개·참여권 및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67.0%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수원시에서 안전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59.7%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3.8% 보다 높다.

다섯째, '수원시에서 이동·접근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관한 분석결과,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0.4% + 존중되지 않는다: 3.1%)이 3.5%로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53.7% + 매우 존중된다: 14.5%) 68.2%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6명 이상은 수원시가 이동·접근권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수원시에서 환경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46.1%(367명)가 존중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0.3%(321명), 매우 존중된다가 7.9%(63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5.4%(43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0.3%(2명) 순이다.

일곱째, '수원시에서 노동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45.8%(364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존중된다가 42.1%(335명), 매우 존중된다가 7.2%(57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4.4%(35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0.5%(4명) 등이다.

여덟째, '수원시에서 교육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분석결과 긍정적인 응답(존중된다 + 매우 존중된다)이 61.5%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 존중되지 않는다) 2.4%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수원시에서 문화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존중된다가 47.7%(379명)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가 39.6%(315명), 매우 존중된다가 8.7%(69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3.5%(28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0.5%(4명) 순이다.

열 번째, '수원시에서 건강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관한 분석결과 존중된다가 50.7%(403명)로 가장 많으며, 보통이다가 38.1%(303명), 매우 존중된다가 9.1%(72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1.9%(15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0.3%(2명) 순이다. 이는 10명 중 5명 이상은 수원시에서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 의료 체계 지원 등 건강권에 대해서는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열한 번째, '수원시에서 연대권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존중된다가 45.6%(363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2.3%(337명), 매우 존중된다가 7.7%(61명), 존중되지 않는다가 4.1%(33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가 0.3%(2명) 순이다.

〈표 3-32〉 인권분야별 인권 존중 정도: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존중되지 않음	존중되지 않음	보통	존중됨	매우 존중됨	평균 (5점 만점)
정보공개·참여권	3 (0.4)	14 (1.8)	226 (28.4)	442 (55.5)	112 (14.1)	3.81
자유권	5 (0.6)	14 (1.8)	220 (27.7)	454 (57.1)	102 (12.8)	3.80
사회보장권	2 (0.3)	12 (1.5)	248 (31.2)	455 (57.2)	78 (9.8)	3.75
안전권	2 (0.3)	28 (3.5)	291 (36.6)	408 (51.3)	67 (8.4)	3.64
이동·접근권	3 (0.4)	25 (3.1)	225 (28.3)	427 (53.7)	115 (14.5)	3.79
환경권	2 (0.3)	43 (5.4)	321 (40.3)	367 (46.1)	63 (7.9)	3.56
노동권	4 (0.5)	35 (4.4)	364 (45.8)	335 (42.1)	57 (7.2)	3.51
교육권	3 (0.4)	16 (2.0)	287 (36.1)	415 (52.2)	74 (9.3)	3.68
문화권	4 (0.5)	28 (3.5)	315 (39.6)	379 (47.7)	69 (8.7)	3.61
건강권	2 (0.3)	15 (1.9)	303 (38.1)	403 (50.7)	72 (9.1)	3.66
연대권	2 (0.3)	33 (4.1)	337 (42.3)	363 (45.6)	61 (7.7)	3.56

수원시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수원시의 권리 존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권분야별 수원시의 권리 존중 정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참여권’(Mean=3.81)과 ‘자유권’(Mean=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접근권’(Mean=3.79), ‘사회보장권’(Mean=3.75), ‘교육권’(Mean=3.68), ‘건강권’(Mean=3.66), ‘안전권’(Mean=3.64), ‘문화권’(Mean=3.61), ‘환경권과 연대권’(Mean=3.56), ‘노동권’(Mean=3.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권’의 경우 수원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도 인권분야 중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3)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1순위+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권’이 전체 응답자의 40.2%(3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권’이 30.9%(233명),

‘환경권’이 21.5%(162명), ‘노동권’이 19.0%(143명), ‘건강권’이 16.7%(126명), ‘연대권’이 16.6%(125명), ‘문화권’이 13.8%(104명), ‘자유권’이 13.5%(102명), ‘교육권’이 11.5%(87명), ‘이동·접근권’이 9.0%(68명), ‘정보공개·참여권’이 6.9%(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공무원들의 경우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등과 관련된 권리인 안전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수원시민과 수원시 공무원 집단별 분석결과 살펴보면 양자 간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공무원 집단이 1순위(안전권)부터 4순위(노동권)까지는 동등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민은 정보공개·참여권(5순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 공무원은 정보공개·참여권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11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3-33〉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정보공개·참여권	32	(4.2)	20	(2.7)	52	(6.9)
자유권	54	(7.2)	48	(6.4)	102	(13.5)
사회보장권	141	(18.7)	92	(12.3)	233	(30.9)
안전권	198	(26.3)	105	(14.0)	303	(40.2)
이동·접근권	28	(3.7)	40	(5.3)	68	(9.0)
환경권	79	(10.5)	83	(11.1)	162	(21.5)
노동권	60	(8.0)	83	(11.1)	143	(19.0)
교육권	35	(4.6)	52	(6.9)	87	(11.5)
문화권	39	(5.2)	65	(8.7)	104	(13.8)
건강권	32	(4.2)	94	(12.5)	126	(16.7)
연대권	56	(7.4)	69	(9.2)	125	(16.6)
합계	754	(100.0)	751	(100.0)	754	(100.0)

3)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1) 인권침해 경험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듣거나 경험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4〉와 같다.

첫째,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을 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3.8%(30명)가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2.0%(16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1%(9명), 직접 경험이 0.5%(4명), 배우자 경험이 0.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4%(51명)로 조사되었다. 인권침해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3.5%(28명)로 가장 많으며, 본인 직접 경험이 1.4%(11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1%(9명), 배우자 경험이 0.4%(3명)로 분석되었다.

셋째, ‘언론이나 인터넷에서의 사생활 공개 경험’은 9.1%(72명)로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5.5%(44명)로 가장 많고,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8%(14명), 직접 경험이 1.5%(12명), 배우자 경험이 0.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2.7%(259명)가 차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대상자의 경우 직접 경험이 14.9%(118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4.0%(111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8%(22명), 배우자 경험이 1.0%(8명)이다.

다섯째, ‘민원인으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7.3%(259명)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이 49.8%(395명)로 가장 많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4.2%(113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6%(21명), 배우자 경험이 0.6%(5명) 순이다.

여섯째,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거나 신앙을 강요받은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2.6%(100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6.2%(49명), 직접 경험이 4.8%(38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 1.8%(14명), 배우자 경험 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2.4%(177명)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해 경험 대상자의 경우 직접 경험이 10.9%(86명)로 가장 많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9.1%(72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8%(14명), 배우자 경험이 0.6%(5명) 순이다.

여덟째,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자유가 제한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7%(61명)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대상자를 살펴보면, 친척 및 지인 경험이

3.1%(2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접 경험이 2.9%(23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4%(11명), 배우자 경험이 0.3%(2명) 순이다.

아홉째, '단체 결성 또는 단체 가입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7.4%(59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3.1%(25명), 직접 경험이 2.4%(19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0%(8명), 배우자 경험이 0.9%(7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열 번째, '기본적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6.2%(49명)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4.2%(33명)가 가장 많고,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3%(10명), 직접 경험이 0.5%(4명), 배우자 경험이 0.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8%(70명)가 경험하였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6.0%(48명)로 가장 많고,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8%(14명), 직접 경험이 0.6%(5명), 배우자 경험이 0.4%(3명) 등이다.

열두 번째,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 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4%(51명)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험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2.9%(23명), 배우자 외 가족이 2.0%(16명), 직접 경험이 1.4%(11명), 배우자 경험이 0.1%(1명) 순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수원시 공무원이 가장 많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분야는 '민원인으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으로 67.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이 32.7%,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이 22.4%,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거나 신앙을 강요받은 경험'이 1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한 공무원이 10명 중 6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역시 32.7%라는 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침해 경험 대상자의 경우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과 '민원인으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경험',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을 제외한 모든 내용에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인권침해 경험: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지인 경험	경험한 적 없음
불법 연행, 구금, 심문	4 (0.5)	1 (0.1)	9 (1.1)	16 (2.0)	763 (96.2)
표현의 자유 제한	11 (1.4)	3 (0.4)	9 (1.1)	28 (3.5)	742 (93.6)
사생활 공개	12 (1.5)	2 (0.3)	14 (1.8)	44 (5.5)	721 (90.9)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차별	118 (14.9)	8 (1.0)	22 (2.8)	111 (14.0)	533 (67.3)
민원인으로부터 차별	395 (49.8)	5 (0.6)	21 (2.6)	113 (14.2)	259 (32.7)
종교나 신앙으로 인한 제약 또는 강요	38 (4.8)	3 (0.4)	10 (1.3)	49 (6.2)	693 (87.4)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86 (10.9)	5 (0.6)	14 (1.8)	72 (9.1)	614 (77.6)
집회나 시위 참여 제한	23 (2.9)	2 (0.3)	11 (1.4)	25 (3.1)	733 (92.3)
단체 결성 또는 가입의 자유 제한	19 (2.4)	7 (0.9)	8 (1.0)	25 (3.1)	735 (92.6)
사회보장 수혜 제한	4 (0.5)	2 (0.3)	10 (1.3)	33 (4.2)	745 (93.8)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료의 제한	5 (0.6)	3 (0.4)	14 (1.8)	48 (6.0)	724 (91.2)
가족으로부터 인권 침해	11 (1.4)	1 (0.1)	16 (2.0)	23 (2.9)	742 (93.6)

(2) 차별 경험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듣거나 경험한 차별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5〉와 같다.

첫째,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35.4%(279명)가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대상자의 경우 직접 경험이 18.0%(142명)로 가장 많고,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4.8%(117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2%(17명), 배우자 경험이 0.4%(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4.8%(196명)로 조사되었다. 차별 경험 대상자는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6.2%(128명)로 가장 많으며, 직접 경험이 5.3%(42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7%(21명), 배우자 경험이 0.6%(5명)로 분석되었다.

셋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27.4%(216명)가 경험한 적 있으며,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8.4%(66명)로 가장 많고,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0%(16명), 직접 경험이 0.5%(4명), 배우자 경험이 0.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7.4%(216명)가 차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4.2%(112명), 직접 경험이 9.6%(76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3.2%(25명), 배우자 경험이 0.3%(2명)이다.

다섯째,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9.4%(153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9.6%(76명), 직접 경험이 8.1%(64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 1.5%(12명), 배우자 경험 0.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5.8%(125명)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2.7%(100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2.5%(20명), 배우자 경험이 0.4%(3명), 직접 경험이 0.3%(2명) 순이다.

일곱째,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9.5%(154명)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1.6%(92명), 직접 경험이 5.4%(43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8%(14명), 배우자 경험이 0.6%(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특정 국적(인종, 피부색)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7.5%(59명)가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6.3%(50명), 직접 경험이 0.5%(4명), 배우자 경험이 0.4%(3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0.3%(2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아홉째,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17.3%(137명)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차별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0.5%(83명)가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4.7%(37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9%(15명), 배우자 경험이 0.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3.8%(109명)가 경험하였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8.8%(70명)로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3.9%(31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0.9%(7명), 배우자 경험이 0.1%(1명) 등이다.

열한 번째, '한부모, 미혼모 등 가족상황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7.2%(57명)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험 대상자의 경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5.8%(46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0.8%(6명), 직접 경험이 0.5%(4명), 배우자 경험이 0.1%(1명) 순이다.

열두 번째, '종교, 사상, 이념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7.7%(61명)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척 및 지인 경험이 5.3%(42명)로 가장 많고, 직접 경험이 1.5%(12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0.5%(4명), 배우자 경험이 0.4%(3명)로 분석되었다.

열세 번째, '학력이나 학벌의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17.6%(139명)가 차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척 및 지인 경험이 10.6%(84명), 직접 경험이 5.2%(41명),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1.6%(13명), 배우자 경험이 0.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열네 번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4%(27명)가 경험한 적 있으며, 친척 및 지인 경험이 2.8%(2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외 가족 경험이 0.5%(4명), 배우자 경험이 0.1%(1명) 순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차별을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약 64~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약 36% 수원시 공무원은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공무원이 차별을 경험한 분야를 살펴보면,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35.4%(279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27.4%(216명),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경험'이 24.8%(196명),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19.5%(154명),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19.4%(1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민과 수원시 공무원 집단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민은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수원시 공무원은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원시 내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성별, 나이, 임신 및 출산, 특정 지역 및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차별 경험 대상자의 경우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친척 및 지인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은 직접 경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5〉 차별 경험: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본인 경험	배우자 경험	(배우자 외) 가족 경험	지인 경험	경험한 적 없음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	142 (18.0)	3 (0.4)	17 (2.2)	117 (14.8)	510 (64.6)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	42 (5.3)	5 (0.6)	21 (2.7)	128 (16.2)	593 (75.2)
장애가 있다는 이유	4 (0.5)	2 (0.3)	16 (2.0)	66 (8.4)	701 (88.8)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	76 (9.6)	3 (0.4)	25 (3.2)	112 (14.2)	572 (72.6)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	64 (8.1)	1 (0.1)	12 (1.5)	76 (9.6)	636 (80.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2 (0.3)	3 (0.4)	20 (2.5)	100 (12.7)	664 (84.2)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43 (5.4)	5 (0.6)	14 (1.8)	92 (11.6)	63 (80.5)
특정 국적(인종, 피부색)이라는 이유	4 (0.5)	3 (0.4)	2 (0.3)	50 (6.3)	730 (92.5)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 조건의 이유	37 (4.7)	2 (0.3)	15 (1.9)	83 (10.5)	654 (82.7)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의 이유	31 (3.9)	1 (0.1)	7 (0.9)	70 (8.8)	682 (86.2)
한 부모, 미혼모 등 가족상황의 이유	4 (0.5)	1 (0.1)	6 (0.8)	46 (5.8)	732 (92.8)
종교, 사상, 이념의 이유	12 (1.5)	3 (0.4)	4 (0.5)	42 (5.3)	730 (92.3)
학력이나 학벌의 이유	41 (5.2)	1 (0.1)	13 (1.6)	84 (10.6)	652 (82.4)
성소수자라는 이유	0 (0.0)	1 (0.1)	4 (0.5)	22 (2.8)	762 (96.6)

(3)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방법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대처방법에 관한 분석은 인권침해 및 차별을 직접 경험한 공무원과 경험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수원시 내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처방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36〉과 같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1.3%(410명)이다.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한 조치 분석결과(1순위+2순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이 전체 응답자의 61.2%(25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이 46.6%(191명),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이 20.2%(83명),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이

12.9%(53명),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이 6.6%(27명),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가 5.1%(21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에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관련되어서’, ‘행동을 취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주로 제시되었다.

〈표 3-36〉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한 조치: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218	(53.2)	33	(12.2)	251	(61.2)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114	(27.8)	77	(28.5)	191	(46.6)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	30	(7.3)	53	(19.6)	83	(20.2)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4	(1.0)	23	(8.5)	27	(6.6)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26	(6.3)	27	(10.0)	53	(12.9)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2	(0.5)	6	(2.2)	8	(2.0)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3	(0.7)	6	(2.2)	9	(2.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4	(1.0)	7	(2.6)	11	(2.7)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3	(0.7)	9	(3.3)	12	(2.9)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5	(1.2)	16	(5.9)	21	(5.1)
집회 또는 1인 시위	0	(0.0)	0	(0.0)	0	(0.0)
기타	1	(0.2)	13	(4.8)	14	(3.4)
합계	410	(100.0)	270	(100.0)	410	(100.0)

둘째, 수원시 내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본인이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향후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경우 대처방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37〉과 같다.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시 취할 조치 분석결과(1순위+2순위),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이 전체 응답자의 62.9%(19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이 49.2%(154명),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이 26.2%(82명),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이 15.3%(48명),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이 14.4%(45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게 편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 또는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37〉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할 경우 취할 조치: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26	(8.3)	19	(6.3)	45	(14.4)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161	(51.4)	36	(11.9)	197	(62.9)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	60	(19.2)	94	(31.0)	154	(49.2)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13	(4.2)	35	(11.6)	48	(15.3)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30	(9.6)	52	(17.2)	82	(26.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6	(1.9)	13	(4.3)	19	(6.1)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5	(1.6)	8	(2.6)	13	(4.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4	(1.3)	18	(5.9)	22	(7.0)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3	(1.0)	6	(2.0)	9	(2.9)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5	(1.6)	19	(6.3)	24	(7.7)
집회 또는 1인 시위	0	(0.0)	2	(0.7)	2	(0.6)
기타	0	(0.0)	1	(0.3)	1	(0.3)
합계	313	(100.0)	303	(100.0)	313	(100.0)

(4)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수원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표 3-38〉과 같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원인(1순위+2순위)은 ‘직업/소득 등 경제적 수준’이 전체 응답자의 42.3%(319명)로 가장 많고, ‘출신학교/학교수준’이 34.6%(261명), ‘출신지역’이 24.1%(182명), ‘성별’이 22.0%(166명), ‘장애유무’가 15.3%(115명), ‘출신국적’이 12.9%(97명), ‘나이’가 11.8%(89명), ‘가족구성 형태(이혼, 재혼 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10.2%(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수원시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원인: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출신국적	68	(9.0)	29	(4.1)	97	(12.9)
성별	95	(12.6)	71	(9.9)	166	(22.0)
직업, 소득 등 경제적 수준	206	(27.3)	113	(15.8)	319	(42.3)
나이	29	(3.8)	60	(8.4)	89	(11.8)
외모	17	(2.3)	32	(4.5)	49	(6.5)
종교	0	(0.0)	4	(0.6)	4	(0.5)
가족구성 형태(이혼, 재혼 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	24	(3.2)	53	(7.4)	77	(10.2)
장애유무	56	(7.4)	59	(8.2)	115	(15.3)
출신학교, 학력수준	128	(17.0)	133	(18.6)	261	(34.6)
출신지역	78	(10.3)	104	(14.5)	182	(24.1)
병력(에이즈, 정신질환)	11	(1.5)	16	(2.2)	27	(3.6)
정치적 신념(사상, 이념 등)	15	(2.0)	29	(4.1)	44	(5.8)
성적 지향	7	(0.9)	9	(1.3)	16	(2.1)
기타	20	(2.7)	4	(0.6)	24	(3.2)
합계	754	(100.0)	716	(100.0)	754	(100.0)

(5) 수원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요구(needs)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원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1순위+2순위),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가 전체 응답자의 62.9%(493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가 44.0%(345명),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29.8%(234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대'가 20.5%(161명), '사회복지 분야 시설/지원 확충'이 14.7%(115명),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가 14.3%(112명), '인권 관련 전문가의 확대/충원'이 7.8%(61명),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가 2.8%(22명), '기타'가 0.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원시 공무원들은 수원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9〉 인권보장을 위한 필요 사항: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	393	(50.1)	100	(13.1)	493	(62.9)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103	(13.1)	131	(17.1)	234	(29.8)
인권 관련 전문가의 확대/충원	26	(3.3)	35	(4.6)	61	(7.8)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	54	(6.9)	58	(7.6)	112	(14.3)
사회복지 분야 시설/지원 확충	37	(4.7)	78	(10.2)	115	(14.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122	(15.6)	223	(29.1)	345	(44.0)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4	(0.5)	18	(2.3)	22	(2.8)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대	41	(5.2)	120	(15.7)	161	(20.5)
기타	4	(0.5)	3	(0.4)	7	(0.9)
합계	784	(100.0)	766	(100.0)	784	(100.0)

4)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필요성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37.7%(297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29.8%(235명), '매우 필요하다'가 24.2%(191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7.2%(57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0%(8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인 응답(약간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이 54.1%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8.2% 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10명 중 5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0〉 인권교육 필요성: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5점 만점)
인권교육의 필요성	8 (1.0)	57 (7.2)	297 (37.7)	235 (29.8)	191 (24.2)	3.69

(2)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60.1%(481명)가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9.9%(319명)는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 필요성 분석결과와 연계해볼 때 수원시 공무원들의 경우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교육 참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1〉 인권교육 경험 여부: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있음		없음	
인권교육 경험	481	(60.1)	319	(39.9)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48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3-42〉 참조), ‘인권침해 사례 소개’가 전체 응답자의 38.5%(185명)로 가장 많고,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 이해와 의미 등)’이 29.7%(143명),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가 26.6%(128명),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이 22.0%(106명),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이 16.8%(81명), ‘노인/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이 15.8%(76명), ‘기타’가 0.8%(4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3-42〉 인권교육 내용: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81	(16.8)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128	(26.6)
인권침해 사례 소개	185	(38.5)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	106	(22.0)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26	(5.4)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 이해와 의미 등)	143	(29.7)
노동/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	76	(15.8)
기타	4	(0.8)
합계	481	(100.0)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48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3-43>과 같다. 인권교육 만족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2.3%(276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이 30.5%(135명), '매우 만족'이 3.8%(17명), '불만족'이 3.2%(14명), '매우 불만족'이 0.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만족 + 매우 만족)이 34.3%로 부정적인 응답(매우 불만족 + 불만족) 3.4% 보다 높다. 하지만 5점 만점으로 평균값이 3.35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원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3> 인권교육 만족도: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만점)
인권교육 만족도	1 (0.2)	14 (3.2)	276 (62.3)	135 (30.5)	17 (3.8)	3.35

(3) 인권교육 관련 요구(needs)

향후 인권교육을 받는다면 어떠한 내용을 희망하는지 분석한 결과(1순위+2순위),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이 전체 응답자의 62.4%(46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권침해 사례 소개'가 36.2%(270명),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가 34.4%(256명),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이해와 의미 등)'이 26.6%(198명), '노동/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이 22.4%(167명),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이 7.9%(59명),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가 5.9%(44명), '기타'가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44> 참조).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공무원들은 향후 인권교육 관련 희망 내용으로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보다는 실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인권침해 사례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4〉 인권교육 희망 내용: 공무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42	(5.6)	17	(2.4)	59	(7.9)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163	(21.9)	93	(12.9)	256	(34.4)
인권침해사례 소개	149	(20.0)	121	(16.8)	270	(36.2)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	218	(29.3)	247	(34.2)	465	(62.4)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14	(1.9)	30	(4.2)	44	(5.9)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88	(11.8)	110	(15.2)	198	(26.6)
맞춤형 인권교육	67	(9.0)	100	(13.9)	167	(22.4)
기타	4	(0.5)	4	(0.6)	8	(1.1)
합계	745	(100.0)	722	(100.0)	745	(100.0)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수원시민과 공무원이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인권차별 및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민(800명)과 공무원(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수원시민들은 인권의 의미로 기본적 사회보장권, 자유권, 안전권, 노동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교육권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유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안전권, 노동권, 참여권, 환경권, 교육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에 관한 인지도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보통 이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와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 집단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원시 인권 실태와 관련해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39.3%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원시의 권리 존중 정도와 관련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 이동·접근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등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존중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노동권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

야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무원 집단 간에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민과 공무원 집단 모두 1순위(안전권)부터 4순위(노동권)까지는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보공개·참여권(5순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정보공개·참여권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11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약 20%는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 당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약 36%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민원인으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67.3%)과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32.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은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공무원은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와 관련해 수원시민과 공무원 모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극적인 대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와 관련해 시민들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민과 공무원 모두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기타 내용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민과 공무원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에 있는 시민은 25.9%에 불과하였지만 공무원은 60.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의 만족도(평균 3.22)가 공무원의 만족도(평균 3.35)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권교육 요구와 관련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 ‘인권침해시 대응방안’과 ‘인권침해 사례 소개’ 등의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및 수원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개선을 위한 사업이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

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에 관한 인지도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와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 집단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원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안전권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권리 존중 정도에 관한 분석결과 이동·접근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노동권의 경우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인권증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과 관련된 안전권과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인권분야에 관한 개선 및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종사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당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한 공무원이 10명 중 6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홍보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회적 약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과 공무원 모두 인권 침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원시 인권센터에 대한 홍보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 횟수나 수준은 어떠한지, 인권침해나 차별의 원인은 무엇인지, 침해 주체와 대상은 누구인지, 차별 또는 침해에 따른 대처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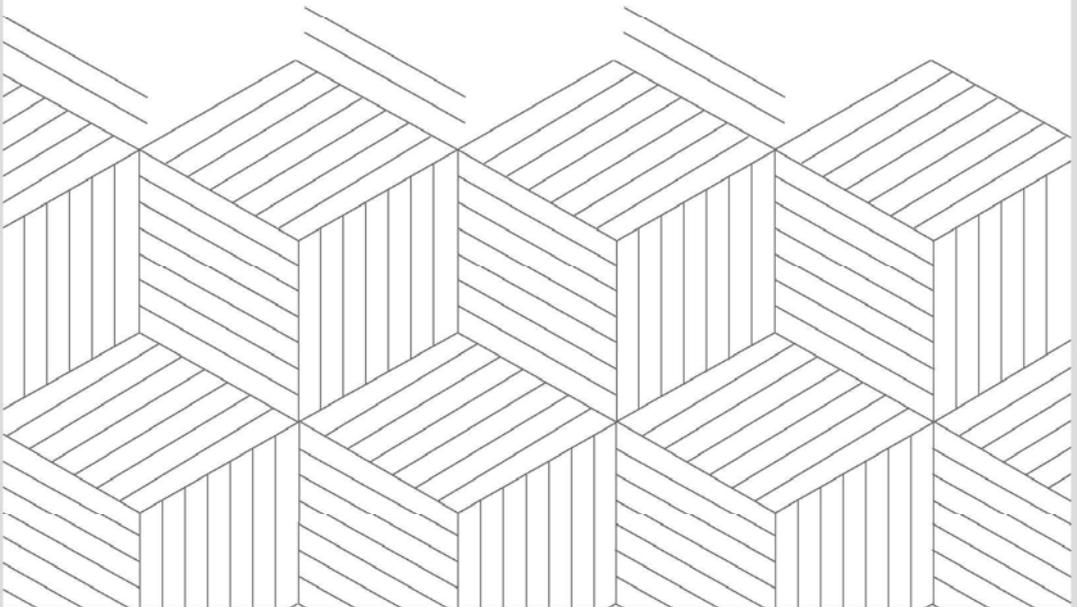
다섯째, 수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을 받은 경험과 관련해서는 시민 보다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인권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강의평가 등과 같은 교육 모니터링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제4장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및 전략 분석

- 제1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실적 평가
- 제2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
- 제3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의 지속성 평가
- 제4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분석
- 제5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및 전략 분석

제1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실적 평가

1. 개요

1) 평가대상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추진된 세부과제를 평가한다.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는 수원시가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7대 영역-25개 중점과제-4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48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표 4-1>과 같다.

<표 4-1>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18) 사업

영역	중점과제	세부과제
장애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여성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여성이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	
따뜻한 수원형 여성서비스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	

아동·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청소년 자아 찾기 멘토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인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
	노인인권 확립 강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강화
	마음이 편안한 노후 지원	노인상담 사업
		수원시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운영
	원활한 사회적 급여 제공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다문화	다문화 가정의 소득 안정화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수원생활 지원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건강한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수원시민 전체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방법용 CCTV 및 조명 확대
	편리한 거주환경 제공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국어책임관제 운영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실시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2) 평가내용 및 방법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내용은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한다. 2016년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과제의 실행계획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였다.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과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연도별(2016, 2017, 2018, 2019) 업무계획 및 업무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과제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였다.

2. 장애인 영역

1)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1)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는 장애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활발하게 진출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채용 비율은 매년 말 다음 연도 공무원 채용 계획 수립시 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3%에서 2017년과 2018년은 3.2%였으며 2019년부터는 3.4%로 상향되었다.

■ 사업개요

- 장애인 공직자 채용 인원 확대
 - 인원결정시기
 - 매년 말 행정안전부(경기도)의 총원계획 수립계획 시달시
 - 목표인원
 - 수원시 신규채용인원의 5~6%
 - 법정채용비율: 3%, 상급기관 지침: 3.5%

■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대를 통한 행정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추진성과는 <표 4-2>와 같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은 2016년에 10.6%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3.7%, 2018년에는 7.3%로 나타났다. 2016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에 감소하였으나, 법정 의무고용률 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수원시 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293명이며, 이 중 장애인 공무원은 31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공고하였고, 2017년도 채용인원 총 189명 중 7명, 2018년도 총 355명 중 26명을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응시자 미달, 응시자 중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합격자 수가 목표치에 미달되었다. 수원시는 전체 정원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장애인 채용 비율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표 4-2〉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성과

세부과제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정원의 3%	정원의 3.2%	정원의 3.2%
연간 채용 전체 인원 / 장애인 수	293명 / 31명	189명 / 7명	355명 / 26명
채용인원 중 장애인 비율	10.6%	3.7%	7.3%
장애인 채용 실적	23명	4명	11명
전체 정원대비 장애인 고용률	3.6%	3.45%	3.28%

(2)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및 응급알림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급~3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판정자
 - 활동지원 독거·취약가구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택내 장비 설치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 사업수행기관

- 활동지원기관 8개소 및 SK청솔노인복지관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
-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의 추진성과는 <표 4-3>과 같다.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과제의 세부과제로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② 중증장애인 시 추가지원, ③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된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중증장애인은 2016년 1,286명에서 2017년(1,453명), 2018년(1,489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중증장애인 시 추가 지원은 2016년 265명에서 2017년에는 28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242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셋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는 2016년에 120명이 지원받았으며,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180명이 지원받았다.

<표 4-3>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1,283	1,286	1,450	1,453	1,481	1,489
중증장애인 시 추가지원	261	265	280	286	240	242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 지원	120	124	180	180	180	180

2)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

(1)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는 교통약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의 추진성과는 <표 4-4>와 같다.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과제의 세부과제로 ① 특별교통수단 지원 ② 저상버스 운영 등이 포함된다. 첫째,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교통약자 일반택시 운영을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지입형)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하지절단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지체장애 4~6급)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확대 실시하였다. 둘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이다.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과제의 성과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부터 매년마다 10대씩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구입하였으며, 이를 통한 차량확보는 2014년 48개에서 2018년 88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저상버스는 2016년 39대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26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저상버스 누적합계로 총 290대 저상버스를 수원시에서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 사업개요
 -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운행
 - 교통약자용 택시 운행
 - 교통약자 일반택시 운영을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지입형)로 변경
- 기대효과
 -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감소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따른 이동권 및 활동권 보장

<표 4-4>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성과

(단위 : 대)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자)	10	10	10	13	10	12
저상버스	39	39	26	26	14	14

(2)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무장애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5>와 같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

경 개선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가구(매년 20가구씩)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25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15가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신청자 감소 추세 및 주거복지(주거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중복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을 중단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저소득 등록 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유형 중 신체의 불편함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애(지체, 뇌변병, 시각)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주방 싱크대 높이 조절 교체, 도배, 장판 등 개·보수

-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제거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사업자

-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 자본보조 위탁 시행

■ 기대효과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 증가

〈표 4-5〉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성과

(단위 : 가구)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	25	20	15	20	사업 중단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1)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탈시설-자립생활지원’은 시설중심 장애인 보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보호는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장애인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에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세부과제로 선정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하는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아사업 추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기반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의 추진성과는 <표 4-6>과 같다.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과제의 세부과제로 ①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②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평균 11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았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경우 2016년 11명에서 2017년 12명, 2018년 1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4-6)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11	11	11	11	11	11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0	11	10	12	10	14

(2)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일반 성폭력 상담소는 전국 167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35개소, 수원 시에는 2개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전국에 25개소이며, 경기도에는 3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일반 성폭력 상담소에서 장애인성폭력 상담도 병행하나 그 실적이 적으며, 시설 기준이 장애인에게 맞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검토 결과 장애인 대상 상담 실적은 10% 미만(2016: 0.47%, 2017년: 0.63%)으로 기존 상담시설 활용하여 장애인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수원여성의 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아우름 부설 상담소 다음)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 사업개요
 -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규모
 - 49.59㎡ 이상
 - 종사자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3인 이상
- 추진계획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16년)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2017년)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2017년 ~ 지속)

-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실태 확인 및 잠재적 성폭력 피해 감소
 - 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 개소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 구제

〈표 4-7〉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성과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	-	운영	-

4)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

(1)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단순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94(광고저류지 내)
 - 사업량
 - 국민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8년 4월
 - 예산

- 8,5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시비 5,700백만원)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수원시 장애인 운동 활동량 증가 및 건강증진

이에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세부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부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였다. 수원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부지를 변경하였으며, 체육센터 시설 중 장애인체육관 또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설정한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8〉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성과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설	-	운영	-	운영	-

3. 여성 영역

1) 여성이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1)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안심안전 사업을 의미한다.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 운영을 통해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추진성과는 〈표 4-9〉와 같다.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을 통해 귀가지원을 받은 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1,329명에서 2017년 1,4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768명으로 2016년 대비 약 33% 증가한 수치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여성(단, 미성년자·주취자는 제외)
 - 사업내용
 - 늦은 밤 야간 귀갓길에 여성을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지원 서비스
 - 단독, 연립, 다세대 밀집지역 안전귀가 계도 및 순찰
 - 경찰서(지구대)와의 윈스톱 연계를 통해 위급상황 시 신속 대처
 - 로드매니저
 - 18명(남·여 2인 1조, 차량 4대 운영)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지역 및 운영시간
 - 수원시 전역
 - 야간 22:00 ~ 01:00까지(주5일, 토·공휴일 제외)

- 기대효과
 -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사전예방 및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안전 도시 실현

〈표 4-9〉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1,000	1,329	1,300	1,414	1,350	1,768

(2)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는 여성친화도시 수원 조성을 위하여 방법이 취약한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추진성과는 <표 4-10>과 같다.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390세대이며 2017년에는 112세대, 2018년에는 29세대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원시에 거주여성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가구(외국인 포함)

○ 운영방법

- 민간 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법서비스 제공

○ 월이용료

- 9,900원

○ 사업내용

-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 24시간 침입탐지 및 보안업체와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출동

○ 추진방법

- 전문 보안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
 - 수원시: 보안 장치 설치 지원(1개소 당 10만원)
 - 에스원: 방법 서비스 지원

■ 기대효과

- 여성의 안전한 생활 및 거주환경 조성
- 체감형 안전도시 정책실천으로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표 4-10>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서비스 성과

(단위 : 세대)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서비스	2	390	2	112	2	29

2)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

(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입직(취·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추진성과는 <표 4-11>과 같다. 취업알선 및 여성인턴십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중 2016년에는 2,513명이 취업하였으며, 2017년에는 2,528명, 2018년에는 2,907명이 취업하였다. 이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 보다 높은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새일센터(수원시 직영), 영통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여성인턴십, 사후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채용 장려를 위한 여성 인턴십 운영 및 사후관리사업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의 시장 재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표 4-1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2,000	2,513	2,000	2,528	2,000	2,907

(2)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는 임신·출산·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교육훈련 강화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의 추진성과는 <표 4-12>와 같다. 직업교육 훈련을 받은 여성 중 취업자수는 2016년 161명에서 2017년 17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15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취업률은 70.6%(2016년)에서 2017년 70.9%, 2018년 72.1%로 집계되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한 참여자수는 2016년에 221명에서 2017년 210명, 2018년 22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 팔달새일센터(수원시 직영), 영통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 전담인력
 - 취업설계사(12명), 직업상담원(5명)
 -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 기대효과
 -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토대 마련

<표 4-12>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 성과

(단위 : 명, %)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취업자수	140	161	150	173	150	150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취업률	70	70.6	70	70.9	70	72.1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수	220	221	220	210	220	220

3) 따뜻한 수원형 여성서비스 강화

(1)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 사업기간
 - 연중
- 담당인력
 - 4명(전담 3명, 지원인력 1명)
 - 200명(활동 아이돌보미)
- 주요내용
 - 이용자 가정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보수교육, 간담회 등

■ 기대효과

-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한 가구의 보육부담 경감
- 보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촉진 및 출산율 증가 유도 가능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13>과 같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받은 수는 2016년에 2,509명에서 2017년 2,707명 2018년에 3,6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목표대비 실적이 비슷한 반면, 2018년에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2,000	2,509	2,000	2,707	2,000	3,678

(2)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은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부지에 여성발전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 공간 활용 등 주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여성영역 세부과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여성발전회관은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위치
 - 수원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1366
- 부지면적
 - 18,416.3㎡
- 지목
 - 대지(문화복지시설 용지)

■ 기대효과

- 여성의 자기계발 및 사회활동 확대
-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 및 여성의 자존감 증대

4. 아동·청소년 영역

1)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추진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은 수영강습을 초등학교 3학년 체육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창의지성 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은 수영의 기초 기능 습득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희망 초등학교 3학년
 - 사업내용
 - 안전수영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연간 6회 12차시 운영(1회 2차시)
- 기대효과
 - 위급한 상황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강화
 - 수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능력 배양
 - 체육(수영) 교과과정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여 창의지성 교육 실현
 - 수영의 기초 기능 습득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 능력 신장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의 추진성과는 <표 4-14>와 같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을 참여한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의 경우 48개 초등학교에서 신청하였으며, 2017년에는 97개교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98개교가 참여하였다. 2016년의 경우 목표달성률은 53.3%인 반면, 2017년과 2018년에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4-14〉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추진 성과

(단위 : 개교)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 추진	90	48	90	97	90	98

(2)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은 범국민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을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의 생명존중 문화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따뜻한 수원, 생명이 존중되는 사람중심 수원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15〉와 같다.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상담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6년에 669명이며, 2017년에는 1,093명으로 약 63.4% 증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1,091명으로 201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한 수치이다.

아동·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은 2016년에 25,711명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는 16,959명, 2018년에는 22,00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수원시자살예방센터(행복한우리동네의원)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및 자살위기대응 마련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에 따른 생명존중 인식 강화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감소하여 사회적 위험 노출 완화

〈표 4-15〉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상담	80	669	100	1,093	120	1,091
아동·청소년 자살예방교육	15,000	25,711	15,000	16,959	15,000	22,003

(3)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권 교육 사업’은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노동권 교육 사업을 의미한다. ‘청소년 노동권 교육’ 내용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법 교육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전사고 발생 및 체불임금 발생시 법률적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 노동권 교육 사업’ 추진성과는 〈표 4-16〉과 같다. 2016년의 경우 노동권 교육을 28회 실시하였으며, 1,128명이 참여하였다. 2017년의 경우 32회 노동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73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2018년의 경우 20회의 노동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04명이 참여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패스트푸드점, 배달대행업체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 교육방법
 - 청소년 교육기관 등 방문 교육(사전에 기관과 협의)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안전사고 발생 및 체불임금 발생시 법률적 대처 방법
- 참여 업체 일자리 착한가게 인증

■ 기대효과

-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의 가치 인식 및 노동권 문화 마련

〈표 4-16〉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노동권 교육 횟수	3	28	30	32	30	20
노동권 교육 참여 인원	30	1,128	1,500	1,734	1,500	704

2)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

(1)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

‘어린이 초경바우처 사업’은 청소년과 전문기관(병의원) 및 학교를 연결하는 맞춤형 성(性) 건강 프로젝트이다. ‘어린이 초경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성장기 청소년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가족 문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 초혼이 늦어지면서 초경에서 첫 출산까지 20여년 동안 여성 검진이 전문한 상태로 각종 여성 질환에 노출되면서 불임 등 사회문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초경바우처 사업’을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과제로 선정하였다.

‘어린이 초경바우처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17〉과 같다. 어린이 초경바우처 사업의 추진목표는 3년 동안(2016년~2018년) 교육 참여자 16,000명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 교육에 참여자수는 4,318명이며, 2017년에는 16,592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284.2% 증가한 수치이다. 2017년도 참여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어린이 초경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초·중·고등학교, 기관, 단체 등 확대 운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당초 설정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2017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 박성희)
- 사업대상
 - 초경이후 청소년
- 사업내용
 - 올바른 여성의 건강관리

- 초경 이후 전문의를 통한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 및 성교육 강화
 - 전문의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초경 이후 이성교제에 따른 주의 점(성폭력 예방)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의 교육
- 기대효과
- 수원시 청소년의 성 건강 안전망 구축 마련
 - 올바른 여성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표 4-17〉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전문의(전문가) 교육 및 상담	4,000	4,318	6,000	16,592	6,000	사업 종료

(2)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사업’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장애아보육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평등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업개요
-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 기대효과
- 장애아보육가정의 보육부담 완화 및 평등한 보육 기회 제공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장애아통합보육을 운영하도록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시립금곡동어린이집과 시립능실22단지어린이집이 개원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시립고색뉴지엄어린이집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다. 시립금곡동어린이집은 정원이 총 73명이며, 시립능실22단지어린이집은 59명, 시립고색뉴지엄어린이집은 46명이다. 수원시에서 당초 설정한 목표는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2016년에 시립금곡동어린이집이 장애

통합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시립당수동, 시립영통힐스어린이집이 장애통합으로 지정되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정조건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표 4-18〉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사업 성과

(단위 : 건)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2	1	1	0	0	2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직접 편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능동적 시민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사업’ 추진성과는 〈표 4-19〉와 같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 위원 수의 경우 당초 설정한 목표는 각 연도별 30명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에는 2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는 36명, 2018년에는 38명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의 경우 당초 각 연도별로 10회 운영으로 설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6회 운영, 2017년에는 12회, 2018년에는 10회 운영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사업내용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예산교육 실시
 - 학교 방문 찾아가는 청소년 의견수렴 활동 전개
 - 청소년을 대표한 정책제안 논의 등 공공역할 수행
 - 청소년 제안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관련근거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7조(청소년위원회)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
- 기대효과
 - 청소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제고
 - 미래세대 시정 참여기회 보장

〈표 4-19〉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성과

(단위 : 회,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	10	6	10	12	10	10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수	30	28	30	36	30	38

4) 청소년 자아 찾기 멘토링 사업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지원 등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개별사례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심리상담 제공,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복귀, 자활, 동기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20〉과 같다.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 325명에서 2017년 34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 427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약 31.4%가 증가한 수치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학교 밖 위기청소년

- 운영기관
 -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관내 미인가 대안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 사례관리, 교육지원, 상담연계지원 등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전문상담 프로그램(대상자 사례관리), 다릿돌 거점공간(집단 프로그램, 상담·학습정서지원, 취업지원 등) 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학습재료비, 체험활동비 등)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자아 찾기 실현 지원

〈표 4-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9	325	180	340	190	427

5. 노인 영역

1)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1)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및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고사업에 의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운영기관

- SK청솔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광교노인복지관

○ 제공인력

- 115명(서비스관리자 6,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09)

○ 서비스 내용

- 안전확인서비스
 -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 생활교육
 - 생활관리사별 월1회 이상(1회당 1시간)
 -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 기대효과

-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정된 생활 및 노후보장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추진성과는 <표 4-21>과 같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수혜받은 노인은 2016년에 2,757명에서 2017년 2,789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3,098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약 12.4%가 증가한 수치이다.

〈표 4-21〉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2,783	2,757	2,783	2,789	2,783	3,098

(2)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외된 어르신들의 위험상황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치매 고위험군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1순위: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2순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3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운영기관
 - SK청솔노인복지관
- 제공인력
 - 응급관리요원 9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댁내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응급상황발생시 119와 연계하여 신속대응 체계구축

■ 기대효과

- 독거노인의 응급·위급상황을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
- 고독사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 보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추진 성과는 <표 4-22>와 같다. 2016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원받은 노인은 총 2,133명이며, 당초 설정한 목표치인 2,100명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2,135명이 지원받았으며, 2018년에는 2,142명이 지원받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

<표 4-22>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2,100	2,133	2,133	2,135	2,133	2,142

2) 노인인권 확립 강화

(1)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표 4-23>과 같다.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수는 2,583명으로 목표치인 2,633명 보다 다소 부족하였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3,134명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에는 3,634명이 참여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6년 대비 2018년 참여자수는 약 40.7% 증가한 수치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자리 희망 어르신
- 운영기관
 - 수원시니어클럽 등 13개 기관
- 일자리수

- 4,000명(1년)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 인력파견형

■ 기대효과

- 노인의 사회활동 강화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표 4-2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수	2,633	2,583	2,683	3,134	2,733	3,634

3) 마음이 편한 노후 지원

(1) 노인상담 사업

‘노인상담 사업’은 사회적 변화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위기 노인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책임)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운영기관
 - 5개 노인복지관【전문상담사 5명 배치(복지관별 1명)】
- 사업내용
 - 상담사업
 - 노인 및 가족에게 종합상담을 통해 노인문제예방 및 위기노인 지원관리

- 교육사업
 - 생명사랑교육단 양성·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원 양성
-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
 - 노인관련단체 등 기관 방문 예방 홍보캠페인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고위험군 관리
- 기대효과
 - 노인의 자살률 감소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협력기관간 위기개입 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 자살 예방 통합모델 실현

‘노인상담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표 4-24>와 같다. 2016년 상담을 받은 노인은 1,352명이며, 상담건수는 3,460건이다. 2017년은 상담을 받은 노인의 수는 1,867명이며, 상담건수는 3,879건으로 2016년 대비 2017년의 상담 인원수 및 상담건수 모두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상담을 받은 노인의 수가 41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상담건수 역시 2,425건으로 2017년 대비 감소한 수치이다.

<표 4-24> 노인상담 사업 성과

(단위 : 명, 건)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노인상담 수혜자	인원수	2,000	1,352	2,000	1,867	2,000	411
	상담건수		3,460		3,879		2,425

(2) 수원시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 운영

‘수원시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 운영은 노인 정신질환 및 치매예방·발견·연계·관리 등 통합적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원시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4월에 설치되었으며, 2016년 6월부터 운영되었다. ‘수원시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는 경증 치매환자 및 가족대상의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0세 이상 주민
 - 사업내용
 - 수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
 - 치매환자 쉼터 운영 사업
 - 치매가족 지원 사업
 -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등
- 기대효과
 - 치매예방, 상담, 조기검진, 보건 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증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수원시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 추진성과는 <표 4-25>와 같다. 먼저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는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6년 2,671건에서 2017년 3,446건으로 약 29.0%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2,721건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매년마다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치매선별검진 및 진단검진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은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건수와 동일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은 건수는 2016년에 5,556건인 반면 2017년에는 4,047건수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7,834건으로 증가하였고,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은 수는 2016년 1,031명에서 2018년 1,320명으로 증가하였다.

치매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경증치매환자 인지프로그램을 450회 운영하였으며, 2,500명이 참여하였다.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은 41회 운영하였으며, 164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치매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총 1,484회 실시하였으며, 15,524명이 참여하였다.

치매관리사업은 2017년 10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2018년 4개구 보건소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2018년 장안구, 영통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였고,

2019년 권선구, 팔달구에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표 4-25〉 수원시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 운영 성과

(단위 : 건,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고위험군 및 질환자 등록(건)	1,300	2,671	1,400	3,446	1,500	2,721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	12,000		13,000		14,000	4,104
치매선별검진·진단검진(건)		10,091		18,990		17,805
치매치료비 지원(건)		5,556		4,047		7,834
치매치료비 지원(명)		1,031				1,320
재활·주간 프로그램 운영	250		300	2,500	300	15,524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50		50	164	50	

※ 2018년 실적은 4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실적임.

(3)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고독·치매·우울증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성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개 집단은 은둔형 집단,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단, 관계위축집단 등이다.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은둔형 집단은 쪽방·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전혀 없는 집단이 포함된다.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단은 우울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이 포함되며, 관계위축집단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등 지역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이 포함된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각각의 그룹별로 심리치료·건강·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26〉과 같다. 2016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 참여자는 총 86명이며, 2017년에는 101명, 2018년에는 95명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 대비 약 10.5% 증가한 수치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 운영기관
 - SK청솔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 운영방법
 -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울성향 정도 등 특성별 3개 집단으로 분류
 - 그룹별 심리치료·건강·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

- 기대효과
 -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줌으로서 고독사 및 자살 예방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자원봉사·노인일자리 등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 가능

〈표 4-26〉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참여자수	96	86	96	101	96	95

4) 원활한 사회적 급여 제공

(1)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는 기초연금과 효사랑 지원금, 효도수당 등이 포함된다. 기초연금 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 증진 및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 효의 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사랑 지원금 등의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업개요

○ 기초연금

- 지급대상(2018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독가구: 131만원
- 부부가구: 209.6만원

- 지원액(차등지급)

- 단독가구: 월 250,000원
- 부부가구: 월 400,000원

○ 효사랑 지원금

- 지급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중 1년 이상 거주,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 지원액

- 분기 월 20,000원(연4회)

○ 효도수당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
- 3세대가 수원시 동일 주소지 5년 이상 거주

- 지원액

- 반기 월 50,000원(연2회)

■ 기대효과

- 사회적 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
-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저소득 노인의 경제력 확보

‘노인의 사회적 급여’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27>과 같다.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60,392명에서 2017년 65,2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70,033명으로 2016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수치이다.

효사랑 지원금을 수혜받는 노인 역시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978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2018년에는 1,316명이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효도수당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17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6년 1,933명에 비해 약 9.7% 증가한 수치이다.

〈표 4-27〉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기초연금, 효도수당, 효사랑 지원금 수혜자	62,000	63,303	64,000	68,284	66,000	73,469
기초연금		60,392		65,220		70,033
효사랑 지원금		978		1,197		1,316
효도수당		1,933		1,867		2,120

(2)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의 추진성과는 〈표 4-28〉과 같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확보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은 104백만원으로 2016년(116백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179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 수혜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10,000원미만인 개별가구
 - 65세 이상 개별가구(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형제)
 - 65세 미만의 직계비속(자, 손)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제외
- 지원방법
 -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만원 미만 가구 통보

- 시에서 선정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확정하여 공단으로 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일
 - 월 현재 해당 동 거주자(월 중간전출자는 지원 대상)
-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
 -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

〈표 4-28〉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성과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확보	144	116	148	104	152	179

5)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1)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은 수원시 팔달구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팔달노인복지관은 2018년 3월 27일 개관하였으며 노인상담, 평생교육, 급식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상담에서는 다양한 상담 연계 및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급식지원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어르신 및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또는 식사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별 서비스를 반영한 웃음체조, 요가, 한국무용, 시니어댄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래와 동화구연, 하모니카, 캘리그래피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 영어, 일본어, 컴퓨터, 스마트폰과 PC활용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세부과제로 도출한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348㎡, 연면적 4,887㎡(지하2층, 지상3층)
 - 지원대상
 - 지역주민
 - 지원형태
 - 직접 수행(민간위탁 운영)

- 기대효과
 -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을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팔달구 거주 노인 복지생활 향상

〈표 4-29〉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성과

(단위 : %)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노인복지관 건립 공정률	49.70	66	74.97	72	100	100

6. 다문화 영역

1) 다문화 가정의 소득 안정화

(1)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사업은 외국인 주민에게 전문적인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사업의 목적은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개요
 - 교육내용
 - 전문적인 기술습득
 - 취업 욕구를 가진 외국인 맞춤 개별 교육 실시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습득
 - 교육강사의 전문화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목적과 방향 제시 각 분야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방식 및 교과과정 편성
 - 체계적인 교육생 관리시스템
 - 지속적인 출석률 관리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동기부여

- 기대효과
 - 외국인 주민의 수원시 정착을 조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지원
 - 비용절감 및 취업연계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연계 고민 필요
 - 실제 취업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커리큘럼으로 구성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30>과 같다.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수료인원은 2016년 101명, 2017년 110명, 2018년에는 11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외국인주민 중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수료한 후 취업한 인원이 2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반의 경우 2016년 10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4-30>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수료인원	130	101	135	110	140	114
취업인원	10	0	12	0	14	2
자격증 취득반	10	10	12	8	14	8

2)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수원생활 지원

(1)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는 다문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한 다문화 한가족 축제 중 다문화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연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의 다양성 이해 수준을 향상시켜 「글로벌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 사업개요

- 국제음식문화체험 부스 운영
 - 10개국 14개 재수원 교민회에서 음식문화체험 부스 운영
-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 일시: 매년 5월 세계인의 날(5.20일) 기념 주간
 - 장소: 수원 제1야외음악당
 - 경연방법: 참가국 대표음식을 행사 참여 내·외국인이 시식 후 평가
 - 경연결과
 - 경연에서 우승한 국가 시상
 - 우승음식에 대한 레시피 공개 및 정규음식과정을 신설 운영

■ 기대효과

- 음식 문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과 일반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추진성과는 <표 4-31>과 같다. 2016년도만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를 운영하였으며,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에 참여한 국가수는 총 10개국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운영 사업 성과

(단위 : 명, 개국)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참여인원수	500	10	-	-	-	-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참여국가수	11	10	-	-	-	-

(2)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다문화 사회에 부응한 시민들의 올바른 다문화 이해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교사, 시민, 공직자 등
- 교육인원
 - 31개소, 3,000여명 / 63회
- 장소
 - 수원관내 초등학교, 동주민센터 등
- 주최·주관
 - 수원시
- 강사
 - 다문화 전문강사(다문화관련 전문단체 강사 활용)
- 교육내용
 - 다문화사회(재외동포) 이해강의 및 즉석 다문화 체험

■ 기대효과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수원시민 대상 교육 실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추진성과는 〈표 4-32〉와 같다. 다문화 인식교육 횟수는 2016년 60회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63회, 2018년에는 65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

인식교육 참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3,342명에서 2017년 4,6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3,290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4-32〉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성과

(단위 : 회,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다문화 인식교육 횟수	62	60	63	63	65	65
다문화 인식교육 참가자수	2,000	3,342	2,500	4,602	3,000	3,290

3)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는 한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는 민·관·산 협력으로 설립·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추진성과는 〈표 4-33〉과 같다. 먼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는 10,991명이 이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21,239명, 2018년에는 28,436명이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는 2016년 274명이 이용하였으나, 2018년 1,1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및 교육활성화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 2,507명에서 2018년에는 16,772명으로 이는 약 569% 증가한 수치이다. 동아리, 멘토링,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정서지원사업 역시 2016년에는 1,500명에서 2018년 6,93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자격취득지원, 검정고시, 전문자격증 취득 등 자립지원사업은 2016년 529명에서 2017년 3,57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1,84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가족, 지역주민
-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교, 일반 청소년과 지역주민 누구나

- 사업내용
 - 맞춤형통합사례관리
 - 위기사례지원, 서비스연계, 상담 등
 - 교육지원사업
 -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운영,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
 - 정서지원사업
 - 동아리, 멘토링,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 자립지원사업
 - 자격취득지원, 검정고시,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지역사회지망구축사업
 - 자원관리, 홍보, 네트워크활동 등
-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건립
 -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정착 유도

〈표 4-33〉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이용인원	10,000	10,991	20,000	21,239	24,000	28,436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274		337		1,100
교육지원사업		2,507		12,121		16,772
정서지원사업		1,500		3,385		6,935
자립지원사업		529		3,574		1,848
지역사회 지망 구축사업		6,181		1,822		1,781

(2)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또래들과 같은 학습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소개 및 상담을 통해 다문화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사업’ 추진성과는 <표 4-34>와 같다.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을 지원받은 아동은 2016년 135명, 2017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141명이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12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약 8% 감소한 수치이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다문화 가정 120명 / 예산범위 내

○ 운영시간

- 주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 교육
-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를 지원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행정 및 생활정보 제공 안내

■ 기대효과

-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학업,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표 4-34>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성과

(단위 :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115	135	120	141	125	124

4)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1)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는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자 위주의 정책에서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수원시는 외국인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주민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표 4-35>와 같다. 현재 수원시는 이주민 전담부서로 다문화정책과가 신설하였다. 다문화정책과는 다문화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등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4명의 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과가 신설되어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라는 세부과제는 달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팀 확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is: 다문화팀(1팀, 6명) - To be: 과 신설(3팀, 12명) ○ 이주민 전담부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 확대로 다문화사회에 적극 대응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지원업무 위주에서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배경 - 청소년 등에 대한 시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확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에 대한 실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착 지원 ○ 다문화가 아닌 이주민으로 개념을 변화하여 강화된 전담부서 신설

<표 4-35>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사업 성과

부서	담당업무
다문화정책팀	외국인·다문화정책시행계획수립,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업무추진,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위탁운영, 외국인 다누리꾼 운영 등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운영,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다문화가족 취·창업 연계 등 지원, 다문화 임대주택 등
외국인지원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위탁 운영, 다문화한가족축제,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등

7. 북한이탈주민 영역

1) 북한이탈주민 건강한 정착 지원

(1)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합동망향제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문화 탐방 등 지역사회에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은 매년마다 1회 개최하였다(〈표 4-36〉 참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북한이탈주민
- 일시
 - 매년 9월경
- 장소
 - 통일전망대 등 관광지
- 운영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 사업내용
 - 역사문화 탐방, 합동 망향제 및 지역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과 수원시민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표 4-36〉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성과

(단위 : 회)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개최 횟수	1	1	1	1	1	1

(2)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은 남한의 문화체험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통음식 체험 및 김치공장 견학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이 포함된다.

■ 사업개요

- 전통음식 체험 및 김치공장 견학
 - 참여인원
 - 80여명
 - 내용
 - 김치공장 투어 및 김치담그기 체험 등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민간단체·전문가
 - 구성인원
 - 13명 이내(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9, 간사1, 서기1)
 - 역할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사업 구상
 - 북한이탈주민 정작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 기대효과

- 한국사회의 생활문화를 익히고, 사회생활 자신감 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추진성과는 <표 4-37>과 같다. 체험 및 견학의 경우 매년마다 1회씩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협의는 2016년에 1회 개최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회씩 개최하였다.

<표 4-37>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성과

(단위 : 회)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체험 및 견학 실시	1	1	1	1	1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협의	2	1	2	2	2	2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은 북한이탈주민과 수원시민과의 결연 및 상담전담 인력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추진성과는 <표 4-38>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상담건수는 평균 130건으로 나타났으며, 멘토-멘티 운영은 2017년 20쌍이 운영되었으나, 2018년 멘토-멘티 운영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 사업개요

- 정착 지원 도우미 운영
 - 운영기간
 - 연중지속 (무기계약근로자 1명)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충상담 및 정보제공
 - 수원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고충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수원시 남북한 주민 결연(Mentor-Mentee)
 - 결연대상
 - 북한이탈주민과 거주 인근 수원시민 및 민주평통자문위원 등
 - 사업내용

- 결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편견 해소 및 사회인식 개선,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유도
-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 환경 제공

〈표 4-3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성과

(단위 : 건, 쌍)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정착 지원 상담	130	130	130	130	130	130
멘토-멘티 운영	10	0	15	20	20	사업 폐지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1)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

(1)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은 가출 청소년들을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안전쉼터 마련’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일시보호 및 선도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건강하게 복귀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안전쉼터 마련’의 목적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성과는 〈표 4-39〉와 같다. 안전쉼터 보호인원은 2016년 374명에서 2017년 432명, 2018년 49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6,136건에서 2017년 6,35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4,00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안전쉼터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016년 4.25점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3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안전쉼터에 관한 시민들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가출 청소년
- 사업내용
 -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 보호사업
 - 숙식제공 및 생활서비스(단기보호)
 - 상담사업
 - 개별상담, 집단상담, 거리이동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 아웃리치사업
 - 위기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주기적 운영
 - 치료사업
 -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영화치료, 무용치료 등
 - 교육지원사업
 - 예절교육, 컴퓨터교육, 진로교육, 성교육, 금연교육 등
 - 진로지원사업
 - 바리스타, 요리교실,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
 - 문화지원사업
 - 연극·영화·뮤지컬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회 등
 - 체력증진사업
 - 축구, 농구, 볼링, 수영, 헬스, 체육대회 등
 - 자원봉사활동
 - 독거노인 및 노숙인들 점심나누기 봉사 등

■ 기대효과

- 가출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일시보호, 선도·상담·교육 활동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건강하게 복귀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움 제공
- 위기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심리적 안정 도모

〈표 4-39〉 안전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성과

(단위 : 명, %, 건)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안전센터 보호인원	446	374	455	432	465	499
가정복귀율	48	144	49	217	50	305
사회복귀율	10	64	11	101	12	76
상담건수	5,900	6,136	6,150	6,354	6,400	4,008
만족도(5.0만점)	3.98	4.25	4.0	4.3	4.1	4.3

(2) 방법용 CCTV 확대

‘방법용 CCTV 확대’ 사업은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방법용 CCTV 확대’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개요

- 위치
 - 수원시 관내 안전사각지대
- 사업량
 - 생활방법 CCTV 180개소
- 주요내용
 - 주택가, 공원, 등산로,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도로 등 안전 취약지역 방법CCTV 설치

■ 기대효과

-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 사전 예방
-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심하고 편안한 시민생활에 기여
- 24시간 중단 없는 CCTV 통합관제로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안전한 도시 수원 건설

‘방법용 CCTV 확대’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표 4-40〉과 같다. CCTV 설치 현황은 2016년에는 4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7년에는 142개소 약 238.1%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에는 133대로 2017년 보다 감소하였으나 당초 설정한 목표치인 60개소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표 4-40〉 방법용 CCTV 확대 성과

(단위 : 개소)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방법용 CCTV 설치(개소)	60	42	60	142	60	133

2) 편리한 거주환경 제공

(1)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은 수원시의 무장애(Barrier Free)도시, 수준 높은 도시미관형성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민선5시 시민약속사업부터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확대 적용하는 사업이다.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설계에 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좋은시정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 4월에는 전문가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제도화 측면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시(2017년 9월), 유니버설디자인(정의, 책무, 심의기준 등)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 3항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8년 12월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장·단기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세부과제인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사업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적용
 - 조례 제정을 통한 실행력 확보
 - 디자인 협의 제도를 활용한 적용 강화
 -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디자인 마인드 제고
 -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기준 자료 개발

- 기대효과
 -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착 및 확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유무, 연령, 성별 등 차별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디자인 재설계
 - 시민을 존중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권도시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적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사용자를 배려하는 의식 함양

〈표 4-41〉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성과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 및 계획(안) 확정, 입법예고 및 적용, 의무화 추진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유니버설디자인 실행방안 연구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자료 개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자료 개발		

3) 행정변화를 통한 인권도시 구축

(1) 국어책임관제 운영

‘국어책임관제’ 운영은 기존 행정용어가 한자위주로 권위적인 표현이 많아 이를 쉬운 용어 사용으로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어책임관제’는 비문해 및 다문화로 인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국어책임관제’ 추진성과는 〈표 4-42〉와 같다. 성인문해교육의 경우 2016년 67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는 799명, 2018년 810명으로 이는 19.5%(2016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동네 문해교실 참여자 수는 2016년 1,856명에서 2017년 1,892명, 2018년 역시

1,910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국어 교육운영 지원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각각 3개 기관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한자 위주의 용어 순화 및 국어 사용 장려
 - 행정용어, 전문용어 순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 문서 작성 시 외래어 및 권위적인 표현 대신 국어 사용 장려
- 성인 대상 한국어 능력 배양 사업 추진
 -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실 운영
 -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 학생 대상 한국어 적응 교육 사업 추진
 -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언어 및 생활 적응 교육과정 운영

■ 기대효과

- 시민들의 행정기관 및 정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쉬운 용어 사용 장려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

〈표 4-42〉 국어책임관제 성과

(단위 : 명, 개소)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78		799		810
우리동네 문해교실	700	1,856	700	1,892	700	1,910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	4	3	4	3	4	3

(2)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상담, 조사 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정책 추진을 담당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발생 예방 및 시민의 인권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표 4-43>과 같다. 먼저 인권침해 상담접수 및 조사의 경우 2018년 74건으로 가장 많으며, 2016년은 59건, 2017년은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도에서 인권침해 조사보다 상담접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법규(조례·규칙) 및 주요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112건, 2017년에는 92건, 2018년에는 99건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수원시청 별관 7층
 - 구성인원
 - 시민인권보호관 3명, 행정공무원(7급) 1명
 - 주요업무
 - 인권침해 구제업무(상담·조사·시정권고)
 - 인권침해 정책·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정책, 공공시설물)
 - 인권실태조사

- 기대효과
 -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권리 실현
 - 관련된 법·제도 틀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권시스템 구축
 - 인권침해 발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인권도시 구현
 - 수원시 행정서비스의 인권의식 반영 및 보편적 인권정책 집행을 통한 인권도시 구축

<표 4-43>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성과

(단위 : 건)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인권침해 상담접수 및 조사	59	49	74
상담접수	47	29	54
조사접수	12	20	20
자치법규(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	112	92	99

4)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1)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실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은 「수원시 인권 조례」에 근거한 의무교육으로서 공직자들의 인권 의식을 높여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은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추진성과는 <표 4-44>와 같다.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은 2016년 64회 실시되었으며, 2017년 70회, 2018년 73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참가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1,586명이 참가하였으며, 2017년은 2,291명, 2018년에는 2,621명이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원시 소속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 사업방법
 - 회당 50명 이내
 - 참여형·사례위주·기관별 맞춤형 교육
- 기대효과
 - 수원시 사례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인권교육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표 4-44>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성과

(단위 : 회,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교육횟수	35	64	40	70	45	73
참가자수	1,000	1,586	1,100	2,291	1,200	2,621

(2)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확대해감으로써 반인권적인 문화나 행동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 인권정책 집행을 통한 인권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에 교육횟수는 80회에서 2017년 98회로 이는 약 22.5%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2018년에는 교육횟수가 74회로 다소 감소하였다. 교육에 참가자수를 살펴보면 2017년에 2,873명으로 2016년 1,952명 보다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2,276명으로 감소하였다(〈표 4-45〉 참조).

■ 사업개요

- 찾아가는 인권교실
 - 사업대상
 -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학교), 일반시민
 - 운영방법
 - 민·관 협력체제 구축 추진
 - 교육내용
 - 일반시민, 청소년, 장애인, 이주자 등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감으로서 반인권적인 문화나 행동양식 개선
-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시민의식 확산 인권학습 프로그램 운영
- 수원시 행정서비스의 인권의식 반영 및 보편적 인권정책 집행을 통한 인권도시 구축
- 인권침해 피해 사전 예방효과

〈표 4-45〉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성과

(단위 : 회,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교육횟수	70	80	80	98	90	74
참가자수	2,000	1,952	2,500	2,873	3,000	2,276

(3)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수원시 여성들의 힐링·휴식·웰빙·행복과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 및 단체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성과는 〈표 4-46〉과 같다. 2016년 수원지역자활센터, 가톨릭여성의집, 청소년폭력예방단 등 21개 기관을 방문하여 총 547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7년 주민자치센터, 연화장, 광고시립호반어린이집 등 6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240명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조원1동과 우만1동에 심리상담 거점을 구축하였고 수원지역자활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277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격 및 기질검사(TCI), 이고그램, MBTI(성격유형검사), 족욕과 아로마 훈증 체험 등을 제공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공기관, 학교, 지역단체(경로당, 노인회관) 등
- 운영기관
 -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 사업내용
 - 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심리검사
 - 공공기관: 감정노동,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중점
 - 학교: 또래관계적응, 학업·진로 중점
 - 경로당: 노인우울증, 소외감·상실감 감소 중점
 - 다문화: 사회적응 스트레스 해소, 소외감 감소 중점

- 전통시장(중·소기업): 스트레스 관리 증점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수원시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도 및 배려 함양

〈표 4-46〉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성과

(단위 : 개소,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방문 기관수	36	21	36	6	36	8
참여자수		547		240		277

(4)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은 인권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수원 공동체 참여 제고와 인권이 꽃피는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표 4-47〉과 같다. 2016년 공모전 선정 작품수는 16편이며, 2017년에는 14편이 선정되었다. 2016~2017년 2년간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결과 타 지방자치단체 동일 주제 공모전이 다수 개최됨에 따라 작성성 낮고 차별성이 없어 2018년은 미개최하였다. 따라서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인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제한 없음
 -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가능
 - 공모내용
 -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 만들기
 -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차별사례 찾아보기
 -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 내용 등

- 공모분야
 - 표어, 포스터, UCC
- 기대효과
 - 수원시민의 자발적 인권의식 함양 기회 마련
 - 수원시민의 자발적 인권인식 제고 및 수원시 인권도시 홍보

〈표 4-4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성과

(단위 : 편)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선정 작품수	10	16	12	14	15	사업 폐지

(5)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노동법 시민아카데미’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및 기초 노동법 교육을 통한 올바른 권리의식 고취 및 기초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동법 시민아카데미’는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교육을 통해 3대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등 사업장 내 노동법 준수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사업의 추진성과는 〈표 4-48〉과 같다.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운영 횟수는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36회 개최되었으나, 2017년에는 46회, 2018년에는 39회 개최되었다.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참여자수는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크게 증가(1,400명→2,156명)하였는데, 2018년에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교육에 집중하다보니 참가자수(821명)가 감소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찾아가는 1일 노동법 학교
 - 대상: 비정규직관련 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등
 - 내용: 비정규직 차별사례, 노동법규, 노동인권교육 등

- 중소기업인 필수 노무관리 교육
 - 대상: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또는 노무담당자
 - 내용: 노동법 상식 등 관련 규정 해설
- 기대효과
 - 근로자 권리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법 교육을 통한 3개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 사업장 내 노동법 준수 유도

〈표 4-48〉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성과

(단위 : 회, 명)

세부과제	추진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횡수	15	36	40	46	40	39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참여자수	300	1,400	2,000	2,156	1,000	821

제2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

1. 조사설계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적실성 있는 평가를 위해 수원시 인권 권리주체별 실무 전문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18) 평가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1단계는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영역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문항은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Likert) 척도(① 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를 활용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중점과제 또는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단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인권 권리주체별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설문은 총 45명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권 권리주체별로 살펴보면, 여성 분야 전문가가 31.1%(14명), 장애인 분야 전문가가 26.7%(12명), 노인 분야 전문가가 17.8%(8명), 아동·청소년 전문가가 15.6%(7명), 다문화 분야 전문가가 6.7%(3명), 북한이탈주민 분야 전문가가 2.2%(1명) 이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4-49>와 같다.

<표 4-49> 전문가 표본 특성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율	구분		표본 수	비율	
성별	남성	14	(31.1)	담당분야	장애인	12	(26.7)	
	여성	31	(68.9)		여성	14	(31.1)	
					아동·청소년	7	(15.6)	
	합계	45	(100.0)		노인	8	(17.8)	
다문화					3	(6.7)		
북한이탈주민					1	(2.2)		
					합계	45	(100.0)	
연령	20대	2	(4.4)	근무경력	5년 미만	8	(17.8)	
	30대	9	(20.0)		5~10년 미만	14	(31.1)	
	40대	15	(33.3)		10~15년 미만	9	(20.0)	
	50대	16	(35.6)		15~20년 미만	12	(26.7)	
	60대 이상	3	(6.7)		20년 이상	2	(4.4)	
	합계		45 (100.0)		합계	45	(100.0)	

2.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는 <표 4-50>과 같다.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 총합 평균은 3.42로 나타나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의 효과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

(Mean=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Mean=3.50),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Mean=3.42),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Mean=3.17) 순이다.

〈표 4-50〉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5점)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3.42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	3.17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3.50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	3.58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총합 평균	3.42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중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찾자 한다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장애인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은 구축되어 있고, 서비스 시스템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장애인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이에 비해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중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이 장애인 영역 다른 중점과제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승차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지연되고 도외시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장애인 분야 전문가C 인터뷰 中

2)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평가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는 〈표 4-51〉과 같다.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 총합 평균은 3.38로 나타나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의

효과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Mean=3.50)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각각 평균 3.42,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각각 평균 3.33으로 분석되었다.

〈표 4-51〉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평가(5점)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3.25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3.33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3.50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3.33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3.42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3.42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3.42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	3.38

다만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는 평균 3.2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가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직진출에 대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기를 강조하였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공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으로 **도전의 기회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에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분야 전문가D 인터뷰 중

“...공직에 대한 **일괄적인 선출과정의 문제점, 보여주는 식 시, 도, 국회의원의 선출에서 탈피하여 본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분야 전문가C 인터뷰 중

3. 여성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 여성 영역 중점과제 평가

수원시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여성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는 〈표 4-52〉와 같다.

여성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 총합 평균은 3.48로 나타나 여성 영역 중점과제의 효과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Mean=3.50)와 ‘따뜻한 수원형 여성서비스 강화’(Mean=3.5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의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Mean=3.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2〉 여성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여성 영역 중점과제	평가(5점)
여성이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3.43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	3.50
따뜻한 수원형 여성서비스 강화	3.50
여성 영역 중점과제 총합 평균	3.48

2) 여성 영역 세부과제 평가

여성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3.47로 나타나 여성 영역 세부과제의 효과는 보통 수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4-53〉 참조).

구체적으로 여성 영역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Mean=3.77)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Mean=3.75),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Mean=3.69),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Mean=3.62)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과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이 각각 평균 3.0으로 여성 영역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표 4-53〉 여성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여성 영역 세부과제	평가(5점)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3.00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3.75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3.77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	3.62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3.69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	3.00
여성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	3.47

여성 영역 세부과제 중 여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세부과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단독 여성가구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가 신청했을 경우,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심리적인 안전감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뉴스에서 독신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은 안전에 신체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갖췄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성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는 <표 4-54>와 같다.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평가의 총합 평균은 3.82로 나타났다. 이는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이 평균 4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Mean=3.86),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Mean=3.71), ‘청소년 자아 찾기 멘토링 사업’(Mean=3.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평가(5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71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	4.00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	3.86
청소년 자아 찾기 멘토링 사업	3.71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총합 평균	3.82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중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아 통합교육은 서울의 장애인시설 넘비현상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한 것과 장애인인권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된 결과인 것 같아요...초경의 경우 저연령화와 부모의 맞벌이가 일반화 되면서 가족 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혼자 해결해야 상황이 생겨 지원이 필요해요”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2)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는 <표 4-55>와 같다.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3.96으로 이는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Mean=4.29)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과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는 각각 평균 4.0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와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은 각각 평균 3.86,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Mean=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5>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평가(5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	4.00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4.00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3.86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	3.86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3.7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4.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29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	3.96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중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과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세우는 우리 예산, 청소년 눈으로 보는 우리 사회, 청소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만족해요”...

“아이들은 수영장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저소득가정이 많아 수영장을 자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수영물품과 차량, 강사지원까지 해주며 친구들과 함께가서 생존수영 배우고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생존수영으로 목숨을 구한 아이들도 있어 의미가 있기도 하구요”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5. 노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 노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

노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 중점과제 총합 평균은 3.80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표 4-56〉 참조). 구체적으로 노인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Mean=4.00)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Mean=3.88), ‘마음이 편안한 노후 지원’과 ‘원활한 사회적 급여 제공’이 각각 평균 3.75, ‘노인인권 확립 강화’(Mean=3.63) 등으로 도출되었다.

〈표 4-56〉 노인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노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5점)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3.88
노인인권 확립 강화	3.63
마음이 편안한 노후 지원	3.75
원활한 사회적 급여 제공	3.75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4.00
노인 영역 중점과제 총합 평균	3.80

2) 노인 영역 세부과제 평가

노인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는 〈표 4-57〉과 같다. 노인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3.86으로 나타나 노인 영역 세부과제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Mean=4.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이 각각 평균 4.0으로 나타났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Mean=3.88),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과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가 각각 평균

3.75이며, ‘노인상담 사업’과 ‘수원시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운영’이 각각 평균 3.63으로 도출되었다.

노인 영역 세부과제 중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사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상담 사업’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4-57〉 노인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노인 영역 세부과제	평가(5점)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4.00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4.1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3.88
노인상담 사업	3.63
수원시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운영	3.63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3.75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3.75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4.00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4.00
노인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	3.86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크구요, 그리고 고독사 사전 발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발견하거나, 부수적으로 응급상황이 생기면 빨리 조치할 수 있으니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방서, 지자체,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종교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연계하므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서비스 중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양을 맡던 혼자 사시는 분은 등급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전문은 아니더라도 준전문성 있게 자료 수집, 통계치 등의 매뉴얼이 가능하였으나, 노인종합상담으로 바뀌면서 전문성이 아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합상담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에서 배치된 상담사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이 워낙 제한적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T.O. 정도로 생각한 기관도 많았었고, 그런 측면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노인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6.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평가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 중점과제 총합 평균은 3.25로 나타나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효과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을 의미한다(〈표 4-58〉 참조).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소득 안정화’(Mean=3.67)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수원생활 지원’(Mean=3.33),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이 각각 평균 3.0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표 4-58〉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평가(5점)
다문화 가정의 소득 안정화	3.67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수원생활 지원	3.33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3.00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3.00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총합 평균	3.25

2)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평가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는 〈표 4-59〉와 같다.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3.78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은 각각 평균 4.00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과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가 각각 평균 3.67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Mean=3.33)의 경우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4-59〉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평가(5점)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4.00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3.33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3.67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4.00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4.00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3.67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	3.78

다문화 영역의 세부과제 중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과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사업은 중도입국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암울했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센터가 생기면서 신나고, 어울리면서 그들만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원만의 특화된 센터입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충분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부모의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지 선생님을 통해 교육하게 된다면 지지할 수 있고, 고민도 상담할 수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고, 학습 능력도 높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문화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7.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는 〈표 4-60〉과 같다. 분석결과, 평균 3.44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의 효과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영역의 중점과제가 보통이상으로 분석되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표 4-60〉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평가(5점)
북한이탈주민 건강한 정착 지원	3.44

2)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3.53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의 효과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61〉 참조).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Mean=3.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Mean=3.5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Mean=3.49) 순이다.

세부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4-61〉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평가(5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3.51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	3.6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3.49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	3.53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를 통해 김치 담그기 등을 하는데 이를 통해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가고, 함께 어울려 남한이 따뜻한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1석 2조이라고 봅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는 북한사람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럴 경우 대부분 강사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 정도여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은 북한이탈주민만이 아니라 남한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여 살아가는 방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 등을 주고받는 좋은 기회입니다...기본은 북한사람들과 남한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배운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분야 전문가A 인터뷰 중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평가 결과는 〈표 4-62〉와 같다. 평가 결과 중점과제 총합 평균은 3.48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효과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가 각각 평균 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변화를 통한 인권도시 구축'(Mean=3.48), '편리한 거주환경 제공'(Mean=3.45) 순으로 도출되었다.

〈표 4-62〉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평가(5점)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	3.50
편리한 거주환경 제공	3.45
행정변화를 통한 인권도시 구축	3.48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3.50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총합 평균	3.48

2)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평가 결과 〈표 4-63〉과 같다. 평가 분석결과,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3.63으로 나타나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방법용 CCTV 확대'(Mean=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과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가 각각 평균 3.80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실시'(Mean=3.73),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Mean=3.64),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Mean=3.6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Mean=3.50), '노동법 시민아카데미'(Mean=3.50)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Mean=3.43)와 '국어책임관제 운영'(Mean=3.41)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중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표 4-63〉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만족도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평가(5점)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3.60
방법용 CCTV 확대	3.89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3.43
국어책임관제 운영	3.41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3.80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실시	3.73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	3.80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3.64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3.52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3.50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	3.63

제3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 지속성 평가

1. 조사설계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과제에 대한 향후 사업 지속성을 평가하였다. 사업의 지속성 평가는 제1기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지속성 여부(폐지-축소-유지-확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는 향후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 효율적인 과제선정 및 수요에 기반한 사업설계를 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지속성 평가는 인권 권리주체별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업의 지속성 평가를 위한 측정은 4점 척도(폐지: 0, 축소: 1, 유지: 2, 확대: 3)를 활용하였다. 3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0점에 가까울수록 사업이 폐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원시 인권정책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와 동일하게 2단계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영역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를 인권증진 관점에서 중요성 및 필요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인권 권리주체별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2.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64>와 같다.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평가 총합 평균은 2.79로 나타나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중점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과제의 경우 평균 3.0로 나타나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Mean=2.75),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Mean=2.75),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Mean=2.67) 역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는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64〉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3점)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3.00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	2.75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2.67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	2.75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79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의 경우 앞선 만족도 평가에서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성 평가에서는 가장 확대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시책은 만족스러운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청년이지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지적·자폐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종합센터 건립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분야 전문가B 인터뷰 중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종합센터 건립이 절실해요.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에서는 현재 발달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한정되어 있고,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경제적 취약환경을 벗어날 수 없으며, 노후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살아가야 할 예견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노동 가능한 청년기의 소득보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인 분야 전문가D 인터뷰 중

2)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65〉과 같다.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 총합 평균은 2.6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Mean=2.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가 각각 평균 2.75,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각각 2.67,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Mean=2.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평균 2.2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표 4-65〉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3점)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2.58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2.83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2.75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2.67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2.75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2.67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2.25
장애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64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와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의 경우 앞선 만족도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성 평가에서는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유지 또는 확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공직진출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비장애인이 볼 수 없는 부분(사회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대해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중증장애인의 지원은 아직도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계획, 실행, 평가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분야 전문가C 인터뷰 中

3. 여성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 여성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수원시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여성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66〉과 같다. 여성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 총합 평균은 2.5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중점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여성 영역 중점과제별로 지속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과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는 각각 평균 2.57로 나타났으며, ‘따뜻한 수원형 여성서비스 강화’는 평균 2.43으로 분석되었다.

〈표 4-66〉 여성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여성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3점)
여성이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2.57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	2.57
따뜻한 수원형 여성서비스 강화	2.43
여성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52

여성 영역 중점과제 중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의 경우 1기 중점과제 평가 결과에서 다른 중점과제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지속성 평가에서도 유지 또는 확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실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유지 또는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한테는 반나절 아르바이트 형식을 드리거나, 좀 더 질 좋은 전문적인 일자리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어렵고 사람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여성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여성 일자리 채용 방법은 알고 있지만, 방법의 합의, 그리고 여건의 충족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충족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입니다. 남성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만, 여성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시 나름의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2) 여성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여성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2.13으로 나타나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영역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와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는 평균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Mean=2.31),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Mean=2.25),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Mean=2.1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은 평균 1.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부로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67〉 여성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여성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3점)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1.00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2.25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2.54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	2.54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2.31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	2.17
여성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13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사업의 경우,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사업이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할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훈련하러 오는 여성 중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많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은 육아가 끝났거나, 육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이 생긴다면 좀 더 빨리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빨리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한편 세부과제 중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과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의 경우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지속성 평가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의 지속성 평가결과에 관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수원시 아동 전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목표는 225명 정도의 활동가가 활동할 것으로 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용자는 선생님이 없다’고 말하고, 활동가는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매칭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끝도 없이 확대할 수는 없고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경우 거의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없이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방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사업의 향후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68>과 같다.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중요성 총합 평균은 3.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 ‘청소년 자아 찾기 멘토링 사업’ 등 아동·청소년 영역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점과제를 모두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68>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3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00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	3.00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	3.00
청소년 자아 찾기 멘토링 사업	3.00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3.00

2)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69>와 같다.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총합 평균은 2.64로 나타났다.

<표 4-69>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3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	2.67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2.83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2.50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	2.67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2.50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2.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83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64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영역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각각 평균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과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이 각각 평균 2.67이며,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와 ‘시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가 각각 평균 2.50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경우 앞선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성 평가에서도 가장 확대되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예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청소년 정책을 학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죠..제도권과 비제도권(학교 밖)에 상관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다원화된 사회이고, 공교육을 거부하는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학교만큼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수준은 미비해요.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한편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제2기 기본계획에서도 관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단기노동, 나쁜 일자리에 청소년 노동의 인입이 증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접한 적이 없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5. 노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 노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노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 총합 평균이 2.4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노인 영역 중점과제를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점과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노인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마음이 편안한 노후 지원’(Mean=2.63)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노인인권 확립 강화’이 각각 평균 2.50, ‘원활한 사회적 급여 제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각각 평균 2.38로 나타났다.

〈표 4-70〉 노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노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3점)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2.50
노인인권 확립 강화	2.50
마음이 편안한 노후 지원	2.63
원활한 사회적 급여 제공	2.38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2.38
노인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48

2) 노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노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 〈표 4-71〉와 같다. 노인 영역 세부과제 중요성 평가 결과, 총합 평균은 2.2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1기 기본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세부과제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71〉 노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노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3점)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2.25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2.50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2.25
노인상담 사업	2.13
수원시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운영	1.38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2.25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2.50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2.25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2.38
노인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21

구체적으로 노인 영역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와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가 각각 평균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Mean=2.38),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각각 평균 2.25로 나타났으며, ‘노인상담 사업’(Mean=2.13) 등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수원시노인치매 정신건강센터 운영’의 경우 평균 1.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사업의 경우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실무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업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사업의 경우 앞선 만족도 평가는 물론 지속성 평가에서도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유지 또는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는 현재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더 확대하게 되면 복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와 소방서가 해야 하는 일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사업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를 1년 단위로 업데이트해서 취합할 수 있으므로 유지 이상 필요합니다”

노인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이외에도 향후 제2기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실무전문가들은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포함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매탄동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이 많은데 노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건립이 필요합니다”

노인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소규모 다기능 복지관이 많이 생기는 좋겠습니다. 일본처럼 어르신이 이용하시고, 주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원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아동, 주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깐 도서관을 다기능 기관으로 만들게 되면 인력과 프로그램만 만들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수요처인 민과 관(수원시)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의하고,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면 어르신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톡방으로 따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이므로 한계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실무자한테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6.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72>와 같다.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중요성 평가 총합 평균은 2.58로 나타나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중점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Mean=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Mean=2.67), ‘다문화 가정의 소득 안정화’와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수원생활 지원’이 각각 평균 2.33으로 분석되었다.

<표 4-72>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3점)
다문화 가정의 소득 안정화	2.33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수원생활 지원	2.33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2.67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3.00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58

2)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 <표 4-73>과 같다. 분석결과,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중요성 총합 평균은 2.3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Mean=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의 경우 모두 평균 2.33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문화 영역의 경우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세부과제를 제2기 기본계획에서 계속 사업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중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이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73〉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3점)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2.33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2.33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2.33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2.33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2.67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2.33
다문화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39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경우 만족도와 향후 지속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실무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향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느 선에서는 다문화·외국인이 독립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업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직업교육은 연령에 맞게끔, 한국어 구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가, 그리고 생활능력이 얼마나 가능한 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있는 것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적을 위해서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구사가 기본으로 깔려있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이외에도 다문화 영역 실무 전문가들은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유지 수준이 아니라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심층면접 내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 유지가 아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관계 기관자들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태지 말고, 비어있는 빈틈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문화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모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인식개선으로 인해 생활 속 코칭비법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문화 분야 전문가B 인터뷰 中

7.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중요성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74>과 같다. 분석결과 평균 2.3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북한이탈주민 건강한 정착 지원’ 중점과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74>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3점)
북한이탈주민 건강한 정착 지원	2.34

2)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75>와 같다.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중요성 총합 평균은 2.2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가 각각 평균 2.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워크숍’이 평균 2.12로 나타났다.

<표 4-75>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3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2.12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	2.2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2.26
북한이탈주민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의 경우 만족도와 향후 지속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실무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 한계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1:1 매칭 사업으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의미 있습니다...확대했으면 좋겠지만, 확대가 안되는 이유는 1:1 매칭되는 남한사람, 북한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지원자가 불분명해서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므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이외에도 향후 제2기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실무 전문가들은 기존 시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상생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래의 심층면접 내용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옛날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 보다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상생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시행했던 ‘한마음 축제’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는 <표 4-76>과 같다.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중요성 평가 총합 평균은 2.41로 나타나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중점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Mean=2.4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Mean=2.40), ‘편리한 거주환경 제공’과 ‘행정변화를 통한 인권도시 구축’이 각각 평균 2.38로 나타났다.

<표 4-76>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3점)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	2.40
편리한 거주환경 제공	2.38
행정변화를 통한 인권도시 구축	2.38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2.48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41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수원시민 전체 영역의 경우 1기 기본계획 중점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는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결과 <표 4-77>과 같다. 분석결과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중요성 총합 평균은 2.3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방법용 CCTV 확대’(Mean=2.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Mean=2.54),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실시’(Mean=2.45),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Mean=2.40),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Mean=2.36),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Mean=2.33),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Mean=2.24),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Mean=2.21), ‘노동법 시민아카데미’(Mean=2.17), ‘국어책임관제 운영’(Mean=2.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7>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3점)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2.33
방법용 CCTV 확대	2.55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2.24
국어책임관제 운영	2.09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2.36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실시	2.45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	2.54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2.4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2.21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2.17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지속성 총합 평균	2.33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시민 전체 영역의 경우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세부과제를 제2기 기본계획에서 계속 사업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시민 전체 영역 세부과제 중 ‘방법용 CCTV 및 조명 확대’와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가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법 시민아카데미’는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지속성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사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역시 경제정책국 내에 노동정책과를 신설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비정규직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비정규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내용, 정책대상, 정책주체(사업담당부서)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내용)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게 된다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할 권리, 둘째 근로조건 보호입니다...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고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부문, 흔히 말하는 공공부문에 할 수 있는 것, 둘째, 민간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유도하거나 등을 할 수 있겠죠”

“(정책대상) 비정규직 영역에서 정책은 비정규직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용안정과 근로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산업안전실태조사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민간부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입니다”

“(정책주체: 사업담당부서) 수원시에서 담당주체는 노동정책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관은 사실 일자리 소개가 90%, 직업훈련이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정책과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며, 이것을 노동정책과가 담당합니다.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관이 담당하구요”

비정규직 분야 전문가A 인터뷰 中

제4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분석

1. 수원시 인권정책 SWOT 분석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 분석의 일환으로 수원시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각각 분석한다. 수원시 인권 관련 SWOT 분석은 수원시 일반현황과 인권 관련 여건 및 환경 변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사례 분석, 수원시민과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및 실태조사, 그리고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권증진과 관련해 수원시 내부 환경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외부환경으로서의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위협요인에 대한 대처 전략을 모색한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원시 인권

증진과 관련된 SWOT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 수원시 인권정책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내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단체장의 리더십 • 인권기본계획 시행 경험 • 인권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인권증진사업과 복지사업의 유기적 연계 • 인권 권리 주체별 협의회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및 공무원의 인권 이해 미흡 •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부족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네트워크 미흡 •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인권지수 및 지표 부재 •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미흡 • 인권 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부재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증진을 지방정부의 책무성 증대 •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국가적 공감대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국가적 차원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경제 불황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 증가 • 일부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혐오감 존재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증진 체감도 미흡

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앞에서 살펴본 수원시 인권 관련 SWOT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권증진을 위한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전략은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 이슈를 연계한 S-O 전략이다. ①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추진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인권증진 선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 ②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문화 조성, ③ 인권증진 사업과 복지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둘째, 내부 약점과 외부 기회 이슈를 연계한 W-O 전략이다. ① 인권에 관한 범국가적 공감대를 토대로 수원시민 및 공무원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 ②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실현, ③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수원형 인권 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셋째, 내부 강점과 외부 위협 이슈를 연계한 S-T 전략이다. ① 인권 권리주체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인권증진 체감도 개선, ② 인권 기본계획 수행경험을 토대로 新인권취약계층의 선제적 인권보호, ③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혐오감 해

소 및 포용적 공동체 실현 등이다.

넷째,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 이슈를 연계한 W-T 전략이다. ①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로 인권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② 수원형 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을 통한 인권 체감도 향상, ③ 타 지방자치단체와 인권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통해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혐오감 해소 등이다.

제5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추진된 세부과제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48개 세부과제이다. 평가내용 및 방법은 세부과제의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정량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였다.

제1기 기본계획 기간 동안 설정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총 48개 사업 중 35개 사업이고, 이는 전체 사업의 72.9%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정책환경 변화와 중복사업, 또는 사업목표의 조기달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전체의 16.7%, 중단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10.4%에 달한다. 제1기 기본계획에 포함된 영역별 세부과제의 성과는 <표 4-79>와 같다.

<표 4-78>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영역별 세부과제 성과

영역	중점과제	세부과제	성과
장애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달성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달성
	장애인의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구축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완료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단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강화 확대	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달성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중단	
여성	여성이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	완료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법 서비스	완료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연계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달성
		생애주기 직업훈련에 따른 일자리 확대	달성
	따뜻한 수원형 여성서비스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달성
		여성발전회관 건립 및 운영	중단
아동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추진	완료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달성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달성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기 지원	어린이 초경바우처 도입	달성
		시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달성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확대	달성
	청소년 자아 찾기 멘토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완료
노인	노인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달성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달성
	노인인권 확립 강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달성
	마음이 편안한 노후 지원	노인자살예방 사업	달성
		수원시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운영	완료
	원활한 사회적 급여 제공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달성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달성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달성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달성	
다문화	다문화 가정의 소득 안정화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달성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수원생활 지원	세계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	달성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달성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달성
	이주민 전담부서 확대	달성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건강한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워크숍	달성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강화	중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포터즈 운영 확대	달성
수원시민 전체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쉼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방범용 CCTV 확대	완료
	편리한 거주환경 제공	유니버설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	달성
	행정변화를 통한 인권도시 구축	국어책임관제 운영	달성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달성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실시	달성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확대 실시	달성
		사회적 약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달성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중단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달성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성과평가와 함께 영역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지속성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평가는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Likert) 척도(① 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를 활용하였다. 사업의 지속성 평가를 위한 측정은 4점 척도(폐지: 0, 축소: 1, 유지: 2, 확대: 3)를 활용하였다.

첫째,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균은 3.42, 세부과제의 만족도 평균은 3.38로 나타나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점과제 지속성 평균은 2.79(4점 만점)로 나타났으며,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균은 2.64로 나타나 모든 사업이 제2기 기본계획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의 경우 지속성 평가 평균이 3.00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여성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결과, 여성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균은 3.48, 세부과제의 만족도 평균은 3.47로 나타나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점과제 지속성 평균은 2.52(4점 만점)로 나타났으며,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균은 2.13으로 나타났다. 세부과제 중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의 지속성 평가 평균은 1.0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9년에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결과,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균은 3.82, 세부과제의 만족도 평균은 3.96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의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점과제 지속성 평균은 3.00(4점 만점)로 나타났으며,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균은 2.64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영역의 4개 중점과제 모두에 대해 확대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세부과제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노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결과, 노인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균은 3.80, 세부과제의 만족도 평균은 3.86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점과제 지속성 평균은 2.48(4점 만점),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균은 2.21로 나타났다. 세부과제 중 '수원시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운영'의 경우 평균 1.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섯째,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결과,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균은 3.25, 세부과제의 만족도 평균은 3.78로 나타나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점과제 지속성 평균은 2.58(4점 만점)로 나타났으며, 세부과제업의 지속성 평균은 2.39로 나타나 모든 사업이 제2기 기본계획에서도 유지 또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중점과제 중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성 평가 평균이 3.00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결과, 북한이탈

주민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균은 3.44, 세부과제의 만족도 평균은 3.53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지속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점과제 지속성 평균은 2.34(4점 만점),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균은 2.21로 나타나 모든 사업이 제2기 기본계획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일곱째, 수원시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만족도 및 지속성 평가결과, 수원시민 영역 중점과제 만족도 평균은 3.48, 세부과제의 만족도 평균은 3.63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지속성 평가 결과, 중점과제 지속성 평균은 2.41(4점 만점)로 나타났다으며, 세부과제의 지속성 평균은 2.33으로 나타나 모든 사업이 제2기 기본계획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사례, 시민과 공무원의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그리고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내용을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증진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 이슈를 연계한 전략으로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추진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인권증진 선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문화 조성, 인권증진 사업과 복지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점 및 세부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내부 약점과 외부 기회 이슈를 연계한 전략으로는 인권에 관한 범국가적 공감대를 토대로 수원시민 및 공무원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실현,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수원형 인권 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과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내부 강점과 외부 위협 이슈를 연계한 전략으로는 인권 권리주체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인권증진 체감도 개선, 인권 기본계획 수행경험을 토대로 新인권취약계층의 선제적 인권보호,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혐오감 해소 및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넷째,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 이슈를 연계한 전략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로 인권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수원형 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을 통한 인권 체감도 향상,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통해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혐오감 해소를 위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제5장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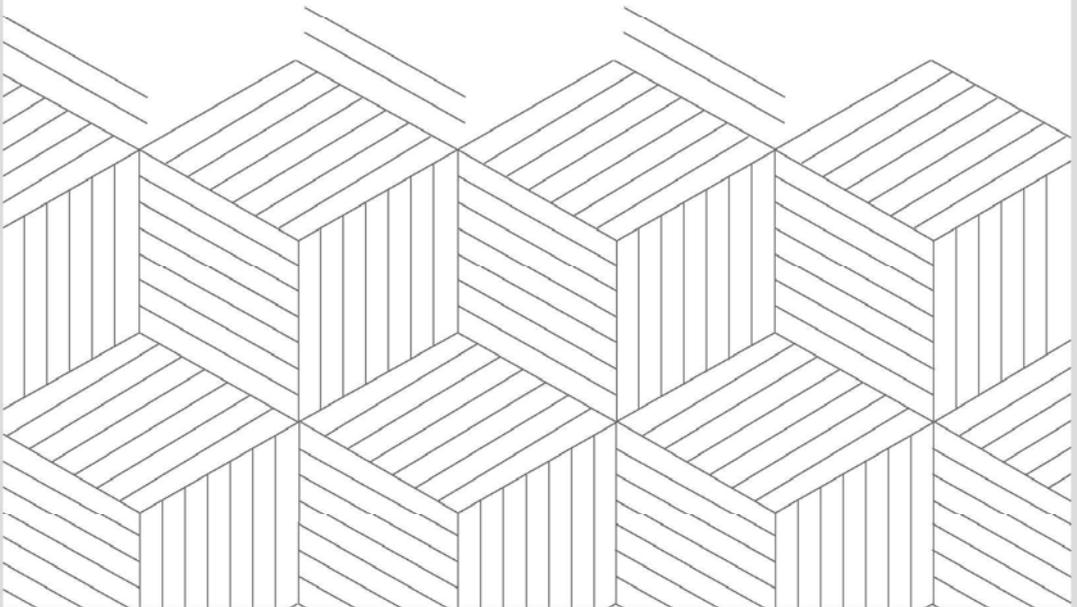
제1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제2절 기본계획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제3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중점과제

제4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제5절 제1기와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차이점



제5장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1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 성격 및 범위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수원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수원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와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포함된다.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경험과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시민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수립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포용적이고 참여지향적 인권도시를 지향함으로써, 보편적이지만 차별화될 수 있는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120만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9년~2023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원시를 공간적 범위로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수원시 인권증진 비전과 정책목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중점과제별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 기본계획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분석, 수원시 인권실태 조사(일반 시민, 공무원, 주체별 전문가),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성과평가(사업실적 및 만족도, 사업 지속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분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2.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제2절 기본계획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1.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

비
전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

2.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3.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정책목표	주요 내용
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2. 인권도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안전한 도시, 모두가 이동이 편리한 도시,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등을 통한 인권도시 환경 조성
3. 인권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등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4.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행정 체계 구축, 인권증진 제도 개선, 인권정책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5. 인권 거버넌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참여 중심의 인권정책 실현,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실현 등을 통한 인권 거버넌스 강화

제3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중점과제

수원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체계는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정책목표별 중점과제는 <표5-1>과 같다.

<표 5-1>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정책목표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1-1. 장애인 인권증진
	1-2. 여성 인권증진
	1-3.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1-4. 노인 인권증진
	1-5.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1-6. 노동자 인권증진
[정책목표2] 인권도시 환경 조성	2-1. 모두가 안전한 도시
	2-2. 모두가 이동이 편리한 도시
	2-3.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정책목표3] 인권문화 확산	3-1. 인권교육 활성화
	3-2.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정책목표4]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4-1. 인권행정 체계 구축
	4-2. 인권증진 제도 개선
	4-3. 인권정책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책목표5] 인권 거버넌스 강화	5-1. 시민참여 중심의 인권정책 실현
	5-2.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실현

제4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 16개 중점과제,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는 <표 5-2>와 같다.

<표 5-2>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구분	
[정책목표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1. 장애인 인권증진	①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계속	단기
		②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속	단기
		③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계속	단기
		④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피해 예방활동 강화	신규	중기
	2. 여성 인권증진	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계속	단기
		②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계속	단기
		③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규	중기
		④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신규	중기
	3.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①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	계속	단기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계속	단기
		③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핑크용품 지원	신규	장기
	4. 노인 인권증진	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	계속	단기
		②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	계속	단기
		③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계속	단기
		④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계속	단기
		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계속	단기
		⑥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신규	중기
	5.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①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계속	단기
		②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확대	계속	단기
		③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계속	단기
		④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	신규	중기
		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규	장기
	6. 노동자 인권증진	① 비정규직 차별 Zero 캠페인	신규	장기
		②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조사	신규	장기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신규	장기	
[정책목표2] 인권도시 환경 조성	1. 모두가 안전한 도시	①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 서비스	계속	단기
		②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	신규	중기
	2. 모두가 이동이 편리한 도시	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신규	중기
3.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	신규	중기	

[정책목표3] 인권문화 확산	1. 인권교육 활성화	①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계속	단기
		②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계속	단기
	2.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①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신규	중기
		② 인권포럼 운영	신규	장기
		③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신규	중기
[정책목표4]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1. 인권행정 체계 구축	①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확대	계속	단기
		②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규	중기
		③ 인권정책 전담부서 위상 강화	신규	단기
	2. 인권증진 제도 개선	① 인권영향평가	신규	중기
	3. 인권정책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신규	중기
[정책목표5] 인권 거버넌스 강화	1. 시민참여중심의 인권정책 실현	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	계속	단기
		② 인권지기 운영	신규	중기
	2.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실현	①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신규	중기
		②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 강화	신규	장기
		③ 인권경영 운영 지원	신규	장기

1.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은 6개 중점과제,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관련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은 <표 5-3>과 같다.

<표 5-3>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구분	
1-1. 장애인 인권증진	①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계속	단기
	②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속	단기
	③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계속	단기
	④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피해 예방활동 강화	신규	중기
1-2. 여성 인권증진	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계속	단기
	②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계속	단기
	③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규	중기
	④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신규	중기
1-3.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①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	계속	단기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계속	단기
	③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핑크용품 지원	신규	장기
1-4. 노인 인권증진	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	계속	단기
	②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	계속	단기
	③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계속	단기
	④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계속	단기
	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계속	단기
	⑥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신규	중기
1-5.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①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계속	단기
	②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확대	계속	단기
	③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계속	단기
	④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	신규	중기
	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규	장기
1-6. 노동자 인권증진	① 비정규직 차별 Zero 캠페인	신규	장기
	②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조사	신규	장기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신규	장기

1) 장애인 인권증진

1-1-①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대를 통해 행정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사업내용
 - 장애인 공직자 채용 인원 확대
 - 선발인원 확대 및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 기기 및 근로지원인 등 지원
 - 인원결정시기
 - 매년 말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의 충원계획 수립계획 시달시
 - 목표인원
 -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3.5%(목표 충족 미달 시 신규채용인원의 7% 이상채용)
 - 법정채용비율: 3.4%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장애인 공직자 채용률(%)	3.5	3.5	3.5	3.5	3.5
예 산	국비(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인적자원과	인사팀	김진혁	228-2793

1-1-2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중증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 인권증진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증장애인에게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기반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하는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추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체험홈(시범사업) 운영
 -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개소)	12	12	12	12	12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개소)	14	15	15	15	15
	체험홈 운영(개소)	2	2	2	2	2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618	624	624	624	624
	시비(백만원)	5,408	5,456	5,456	5,456	5,456
	합계(백만원)	6,026	6,080	6,080	6,080	6,08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이서희	228-2214
			장애인시설지원팀	안병옥 박윤주	228-3212 228-3337

1-1-③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
-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권 실현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급~3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판정자
 - 활동지원 독거·취약가구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 법정급여: 기본 47시간~118시간, 추가 10시간~273시간
 - 경기도 추가급여: 5시간~136.5시간
 - 수원시 추가급여(1등급): 20시간~602시간
 - 덕내 장비 설치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 사업수행기관
 - 활동지원기관 8개소 및 SK청솔노인복지관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명)	1,800	1,800	1,800	1,800	1,800
	수원시 추가지원(명)	240	240	240	240	240
	응급알림 서비스 지원(가구)	180	180	180	180	180
예 산	국비(백만원)	15,972	15,972	15,972	15,972	15,972
	도비(백만원)	1,326	1,326	1,326	1,326	1,326
	시비(백만원)	15,238	15,238	15,238	15,238	15,238
	합계(백만원)	32,536	32,536	32,536	32,536	32,536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임채연	228-2575

1-1-4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피해 예방활동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발생 후에는 긴급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인권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안전망 구축

- 사업내용
 - 시설 내 장애인 학대 방지 활동
 - 장애인보호시설 평가
 -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장애인보호시설 평가(횟수)	1	1	1	1	1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참여자(명)	430	430	430	430	430
예 산	국비(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	박윤주 안병옥	228-3337 228-3212

2) 여성 인권증진

1-2-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경력단절 여성의 시장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 지역특성 반영, 현장실무 중심 전문교육훈련을 통해 취업경쟁력 제고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로 여성의 노동권 개선

- 사업내용
 - 취업상담·알선,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채용 장려를 위한 여성 인턴십 운영 및 사후관리사업
 - 운영기관
 - 시(총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수행)
 - 팔달새일센터(수원시 직영), 영통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직업의식 고취, 재취업 지원(명)	450	450	450	450	450
	유망직종·현장중심 직업전문교육(명)	250	300	300	300	300
	중장년, 취약계층 여성 취업지원(명)	600	600	600	600	600
예산	국비(백만원)	605	605	605	605	605
	도비(백만원)	265	265	265	265	265
	시비(백만원)	457	457	457	457	457
	합계(백만원)	1,327	1,327	1,327	1,327	1,327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일자리정책관	청년여성일자리팀	정소년	228-2998

1-2-2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해 가구의 보육부담 경감 및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실현, 나아가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
 - 보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촉진 및 출산율 증가 유도 가능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 담당인력
 - 4명(전담 3명, 지원인력 1명)
 - 196명(아이돌봄 활동가)
 - 사업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 활동가와 신청자 아이돌봄 1:1 매칭 서비스 연계
 - 아이돌봄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아이돌봄 활동가 역량강화 보수교육 운영
 - 육아정보 공유 간담회 및 사회적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지원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명)	3,678	3,678	3,678	3,678	3,678
	국비(백만원)	1,674	1,674	1,674	1,674	1,674
예 산	도비(백만원)	365	365	365	365	365
	시비(백만원)	365	365	365	365	365
	합계(백만원)	2,404	2,404	2,404	2,404	2,404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	김소현	228-2496

1-2-③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을 통한 심신회복 유도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강화
 - 성·가정폭력 없는 안전도시 수원 구축

- 사업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 피해자 치유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건수)	8,600	8,600	8,600	8,600	8,600
	국비(백만원)	502	502	502	502	502
예 산	도비(백만원)	223	223	223	223	223
	시비(백만원)	575	575	575	575	575
	합계(백만원)	1,300	1,300	1,300	1,300	1,30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	정충현	228-3220

1-2-4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과 주도적 삶의 동기부여 등으로 자립여건 조성
 - 성매매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도시 실현

- 사업내용
 - 성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및 구조지원 사업
 - 개별지원, 법률·의료지원, 심리치료 및 직업훈련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성매매 피해자 지원(명)	446	446	446	446	446
	예 산					
	국비(백만원)	457	457	457	457	457
	도비(백만원)	138	138	138	138	138
	시비(백만원)	161	161	161	161	161
	합계(백만원)	756	756	756	756	756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	홍순협	228-2992

3)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1-3-①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을 통한 생명권 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강화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감소하여 사회적 위험 노출 완화
- 사업내용
 - 운영기관
 - 정신건강관련센터(3개소)
 -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 사업대상
 - 19세 이하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등록·사례 관리
 - 행복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 메신저를 통한 1:1 실시간 비밀상담
 - 청소년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 방관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 이타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상담
 - 인식개선활동 및 자살예방교육
 - 아동청소년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명)	400	400	400	400	400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명)	4,000	4,100	4,200	4,300	4,400
	정신건강교육 및 프로그램(명)	6,000	6,100	6,200	6,300	6,400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상담(명)	220	220	230	230	230
	인식개선활동 및 자살예방교육(명)	16,850	16,900	17,450	17,450	17,450
예 산	국비(백만원)	104	109	117	125	133
	도비(백만원)	82	86	93	99	105
	시비(백만원)	497	522	558	591	631
	합계(백만원)	683	717	768	815	869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	손명진	228-5907

1-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반은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08명에서 2016년 1,36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1,484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영안 외, 2018, p. 69)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학교 밖 위기청소년
 - 운영기관
 -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관내 미인가 대안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지원
 - 사례관리, 교육지원, 상담·연계지원 등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전문상담 프로그램(대상자 사례관리), 다릿돌 거점공간(집단 프로그램, 상담·학습정서지원, 취업지원 등) 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학습재료비, 체험활동비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명)	394	400	400	400	400
	예산					
	국비(백만원)	120	120	120	120	120
	도비(백만원)	75	75	75	75	75
	시비(백만원)	272	272	272	272	272
	합계(백만원)	467	467	467	467	467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황산성	228-3825

1-3-③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핑크용품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생필품인 위생용품(생리대)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문제 발생
 - 생리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 가구 청소년에 대한 여성 위생용품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핑크용품(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여성 핑크용품 구매비용(1인 연 12만원 내외)
 - 지원방법
 - 바우처를 활용한 지원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핑크용품 지원(명)	1,750	1,750	1,750	1,750	1,750
예산	국비(백만원)	93	93	93	93	93
	도비(백만원)	46	46	46	46	46
	시비(백만원)	46	46	46	46	46
	합계(백만원)	186	186	186	186	186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황산성	228-3825

4) 노인 인권증진

1-4-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건강취약노인 및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응급상황 발생시 119와 연계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안전권 및 건강권 보장
 - 고독사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 보호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노인 중 치매 고위험군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1순위: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2순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3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운영기관
 - SK청솔노인복지관
 - 제공인력
 - 응급관리요원 9명
 - 사업내용
 -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와 응급상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 보호
 -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대응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응급 호출기, 활동감지·화재감지·가스감지 센서 및 외출버튼 등 수리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운영(가구)	2,133	2,133	2,133	2,133	2,133
예산	국비(백만원)	155	155	155	155	155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70	170	170	170	170
	합계(백만원)	325	325	325	325	325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이현주	228-3263

1-4-2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 단독가구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서비스 강화
 -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정된 생활 및 노후보장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고사업에 의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운영기관
 - SK청솔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광교노인복지관
 - 제공인력
 - 155명(서비스관리자 7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48명)
 - 서비스 내용
 - 안전확인서비스
 - 직접확인(방문) 주 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 2회 이상
 - 생활교육
 - 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1회당 1시간)
 -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돌봄기본서비스 지원(명)	3,098	3,098	3,098	3,098	3,098
예산	국비(백만원)	2,548	2,548	2,548	2,548	2,548
	도비(백만원)	331	331	331	331	331
	시비(백만원)	2,172	2,172	2,172	2,172	2,172
	합계(백만원)	5,051	5,051	5,051	5,051	5,051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백근호	228-2262

1-4-③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통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저소득 노인의 경제력 확보

- 사업내용
 - 기초연금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독가구: 1,3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2,192,000원 이하
 - 지원액(차등지급)
 - 단독가구: 월 25,370 ~ 300,000원
 - 부부가구: 월 50,750 ~ 480,000원
 - 예산
 - 205,506백만원(국비 143,855백만원 도비 12,330백만원, 시비 49,321백만원)

 - 효사랑 지원금
 - 사업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중 1년 이상 거주,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 지원액
 - 분기 월 60,000원(연 4회)
 - 예산
 - 322백만원(시비)

 - 효도수당
 - 사업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
 - 3세대가 수원시 동일 주소지 5년 이상 거주
 - 지원액

- 반기 월 50,000원(연 2회)
- 예산
 - 235백만원(시비)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기초연금 지원(명)	73,363	73,363	73,363	73,363	73,363
	효사랑 지원(명)	1,341	1,341	1,341	1,341	1,341
	효도수당(가구)	2,350	2,350	2,350	2,350	2,350
예 산	국비(백만원)	143,855	143,855	143,855	143,855	143,855
	도비(백만원)	12,330	12,330	12,330	12,330	12,330
	시비(백만원)	49,878	49,878	49,878	49,878	49,878
	합계(백만원)	206,063	206,063	206,063	206,063	206,063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이현주	228-3263

1-4-4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의 사회활동 강화를 통한 노인의 행복 및 삶의 질 향상
 - 고령사회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제공
 -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일자리 희망자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 운영기관
 - 수원시니어클럽 등 15개 기관
 - 일자리수
 - 4,000명(1년)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공동작업, 제조판매 등)
 - 인력파견형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노인 사회활동 지원(명)	4,439	4,439	4,439	4,439	4,439
	예산					
	국비(백만원)	6,092	6,092	6,092	6,092	6,092
	도비(백만원)	914	914	914	914	914
	시비(백만원)	5,178	5,178	5,178	5,178	5,178
	합계(백만원)	12,184	12,184	12,184	12,184	12,184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정숙미	228-3262

1-4-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
 -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 65세 이상 개별가구(노인단독, 노인부부, 가구원 모두 65세 이상 노인형제)
 - 65세 미만의 직계비속(자, 손)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제외
 - 지원방법
 -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만원 미만 가구 통보 → 시에서 선정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확정하여 공단으로 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일
 - 월 현재 해당 동 거주자(월 중간전출자는 지원 대상)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명)	3,100	3,100	3,100	3,100	3,100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84	84	87	87	90
	시비(백만원)	196	196	203	203	210
	합계(백만원)	280	280	290	290	30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김광재	228-2578

1-4-6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4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상담, 검진 및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추정환자수는 9.88%인 11,172명에서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등에 따른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예방적 치매 예방 프로그램(60세 이상 대상자) 운영 지원이 요구됨
- 치매예방프로그램에서는 일반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요구되어 일반시민(60세 이전 대상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요구됨
-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잠재적 치매환자 급증으로 치매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 건강권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일반 시민
- 사업내용
 -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구조화된 프로그램 및 단기 프로그램 등)
 - 로봇기반의 맞춤형 두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 로봇을 이용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여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이용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치매예방프로그램 지원(명)	16,000	17,000	17,500	18,000	18,500
	예산					
	국비(백만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도비(백만원)	3,000	3,000	3,000	3,000	3,000
	시비(백만원)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합계(백만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장안구 보건소	치매관리팀	고경순	228-5952
	협조부서	권선구보건소	치매관리팀	김진희	228-6798
팔달구보건소		치매관리팀	전은진	228-7112	
영통구보건소		치매관리팀	박주미	228-8792	

5)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1-5-①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생활 이해 및 완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권 실현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다문화 가정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 교육
 -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행정 및 생활정보 제공 안내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방문교육 지원(명)	110	110	110	110	110
	국비(백만원)	186	186	186	186	186
예 산	도비(백만원)	12	12	12	12	12
	시비(백만원)	67	67	67	67	67
	합계(백만원)	265	265	265	265	265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박수미	228-2993

1-5-2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이주배경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정착 유도 및 사회적응 지원
 -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과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지역사회 주민
 - 사업내용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이주배경청소년 사례 발굴 및 관리, 사례회의, 위기사례 지원
 - 교육지원사업 운영
 - 한국사회적응력 향상 및 학습지원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예비학교, 교육활성화 지원(도서관, 교사간담회 및 부모간담회, 방학 아카데미, 사회교육 프로그램, 양육자 역량강화)
 - 정서지원사업 운영
 - 상담지원(개별·집단상담), 청소년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요리, 영상, 마술), 문화여가 프로그램(여가공간, 놀이공간, 독서실, 공연 연계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 자립지원사업 운영
 - 진로활동지원, 학력자격 취득지원, 자립역량강화사업 운영
 - 지역사회지지망 구축사업
 - 후원자개발 및 관리, 홍보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지원(명)	24,800	24,810	24,820	24,830	24,840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606	606	606	606	606
	합계(백만원)	606	606	606	606	606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박수미	228-2993

1-5-③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주민의 수원시 정착을 조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권 보장
 - 비용절감 및 취업연계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교육 지원

- 사업내용
 - 교육내용
 - 전문적인 기술습득
 - 취업 욕구를 가진 외국인 맞춤 개별 교육 실시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습득
 - 교육강사의 전문화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목적과 방향 제시 각 분야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방식 및 교과과정 편성
 - 체계적인 교육생 관리시스템
 - 지속적인 출석률 관리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동기부여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명)	151	140	140	140	140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8	27.4	27.4	27.4	27.4
	합계(백만원)	18	27.4	27.4	27.4	27.4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지원팀	신승희	228-2707

1-5-4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공공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의료·건강 서비스 필요
 -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등 외국인의 의료접근도 향상으로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유학생, 난민 중 취약 계층
 - 사업내용
 - 내·외과, 치과, 한방과 진료 및 상담, B형간염 예방접종, 시력검진, 이미용(헤어컷), 물리치료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회)	4	4	4	4	4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2	2	2	2	2
	합계(백만원)	2	2	2	2	2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팔달구 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최향순	228-7697

1-5-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생활 안정,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지역적응 지원, 정착도우미 사업 실시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문화 및 음식 체험, 북한이탈아동·청소년 사회적응 및 학습지원, 영화로 소통하기 등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지역병원과 MOU체결로 의료지원 및 정신보건프로그램(심리치료 등) 지원
 - 민간이전(민주평통)을 통한 지역적응사업
 - 합동방향제, 한마음대축제, 나라사랑역사현장체험 등
- ※ 매해 현황에 따라 지원 사업내용 및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명)	250	100	100	100	100
예산	국비(백만원)	5	5	5	5	5
	도비(백만원)	3	-	-	-	-
	시비(백만원)	37	20	20	20	20
	합계(백만원)	45	25	25	25	25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책임부서	자치행정과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이은애	228-2133

6) 노동자 인권증진

1-6-①

비정규직 차별 Zero 캠페인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있어서의 차별 요소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기여
 - 상생적인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차별 Zero 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인식 개선 유도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 종사자
 - 사업내용
 -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관련 포스터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개선 사업
 - 비정규직 대상 노동법 교육
 - 노동법률 상담·변호 대행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포스터 홍보 및 캠페인 및 복지개선 사업(회)	40	42	44	46	48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21.5	22.5	23.6	24.7	25.9
	합계(백만원)	21.5	22.5	23.6	24.7	25.9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이지연	228-3277

1-6-2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조사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대비 열악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근로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노동조건 실현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인권 수준 진단 및 근로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업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차별 및 근로 실태조사
 - 비정규직의 대표직종(이동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경비청소 노동자 등)을 매년 3개씩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침해 및 근로 실태 조사(건)	3	3	3	3	3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2	40	40	50	50
	합계(백만원)	12	40	40	50	5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이지연	228-3277

1-6-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생활임금 추진,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기여

- 사업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실태(생활임금, 연차휴가, 퇴직급여, 모성보호휴가 등) 조사(2020년부터 3년 마다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생활임금 및 인사관리교육 매년 실시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회)	1	2	1	2	1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8	7	2	8	2.5
	합계(백만원)	1.8	7	2	8	2.5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이지연	228-3277

2.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도시 환경조성’은 3개 중점과제,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인권도시 환경조성’ 관련 세부과제 내용은 <표 5-4>와 같다.

<표 5-4> ‘인권도시 환경조성’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구분	
		계속	단기
2-1. 모두가 안전한 도시	①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 서비스	계속	단기
	②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	신규	중기
2-2. 모두가 이동이 편리한 도시	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신규	중기
2-3.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	신규	중기

1) 모두가 안전한 도시

2-1-①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 서비스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안전한 생활 및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권 보장
 - 체감형 안전도시 정책실천으로 1인 여성가구 삶의 질 개선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수원시에 거주여성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가구(외국인 포함)
 - 임차보증금 9천만원이하 여성가구 무주택자
 - 운영방법
 - 민간 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법서비스 제공
 - 월이용료
 - 9,900원
 - 사업내용
 -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 24시간 침입탐지 및 보안업체와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출동
 - 추진방법
 - 전문 보안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
 - 수원시: 보안장치 설치 지원(1개소 당 10만원)
 - * 보안장치 설치비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기정기탁금으로 사용
 - 에스원: 방법 서비스 지원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1인 여성가구 케어 방법서비스 지원(명)	10	10	10	10	10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	-	-	-	-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	윤경숙	228-3218

2-1-2

취약가구 화재지킴이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주거안전 개선
 - 화재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주거안전에 있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민중심 수원 조성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주택용소방시설 지원
 - 소화기: 세대별
 - 단독형 감지기: 구획된 실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세대)	2,000	2,000	2,000	2,000	2,000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합계(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윤재빈	228-3674

2) 모두가 이동이 편리한 도시

2-2-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 예약수단 다변화 및 시스템 고도화
 - 실시간교통정보지원가능 배차관제시스템 운영
- 이동지원 종합개선대책 추진
 - 특별교통수단 업무처리지침 개정(행정수요 반영 등)
- 특별택시(휠체어탑승특장) 구입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예정)에 따라 세부 계획 반영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특별택시 구입	2(대폐차)	2(미정)	2(미정)	2(미정)	2(미정)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1,300	1,365	1,433	1,504	1,579
	시비(백만원)	7,183	7,542	7,919	8,314	8,729
	합계(백만원)	8,483	8,907	9,352	9,818	10,308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팀	문승현	228-3323

3)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2-3-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취약계층(저소득·독거노인·장애인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을 통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실현

- 사업내용
 - 수선유지급여사업
 - 사업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 사업내용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 대보수: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사 등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임차가구,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수선유지급여 지원(명)	173	58	60	62	64
	에너지효율개선 지원(명)	12	13	14	15	16
예 산	국비(백만원)	424	108	117	126	135
	도비(백만원)	33	8	9	10	10
	시비(백만원)	74	54	54	54	55
	합계(백만원)	531	170	180	190	20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책임부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서일성	228-3409
중기과제	협조부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김태성	280-6341

3. 인권문화 확산

‘인권문화 확산’은 2개 중점과제,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인권문화 확산’ 관련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인권문화 확산’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구분	
3-1. 인권교육 활성화	① 시민 인권의아카데미 운영	계속	단기
	②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계속	단기
3-2.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①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신규	중기
	② 인권포럼 운영	신규	장기
	③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신규	중기

1) 인권교육 활성화

3-1-①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반인권적인 문화나 행동양식 개선
 -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시민의식 확산 인권학습 프로그램 운영
 - 다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인권교육
 - 사업대상
 -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 등 포함) 직원 및 이용자
 -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학교), 일반시민
 - 운영방법
 - 민·관 협력체제 구축 추진
 - 교육내용
 - 일반시민, 청소년, 장애인, 이주자 등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시민 인권아카데미 참여(명)	1,500	1,550	1,600	1,650	1,700
	국비(백만원)	-	-	-	-	-
예 산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0	10	10	10	10
	합계(백만원)	10	10	10	10	1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안효빈	228-2626

3-1-2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공무원에 대한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함양
 - 공무원에게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수원시 행정서비스의 인권의식 반영 및 보편적 인권정책 집행을 통한 인권도시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수원시 소속 공직자
 - 사업방법
 - 회당 50명 이내
 - 참여형·사례위주 맞춤형 교육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공무원 인권교육 참여(명)	180	210	240	270	300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3.5	3.5	3.5	3.5	3.5
	합계(백만원)	3.5	3.5	3.5	3.5	3.5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안효빈	228-2626

2)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3-2-①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인권에 대한 가치공유와 참여하는 행사 기획
 - 기념행사를 통해 어렵고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인권을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감수성 제고
 - 수원 시민 모두가 다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환경 확대
- 사업내용
 - 기념식
 - 기념행사
 - 인권증진 기본계획 홍보
 -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 인권특강(명사초청 인권강연)
 - 인권증진 사업 홍보관 운영
 - 인권영화제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개최(회)	1	1	1	1	1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0	10	10	10	10
	합계(백만원)	10	10	10	10	1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직(직급)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심영미	228-2666

3-2-2

인권포럼 운영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포럼 개최를 통해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시민의 인권가치 실현
 -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인권도시 수원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포용적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포럼 운영
 - 인권포럼 의제 및 프로그램 구성
 - 다양한 영역에서 포용적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 인권증진 정책 홍보
 - 인권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소책자·동영상(Youtube) 등 제작·배포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인권포럼 개최(회)	-	1	1	1	1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	3	3	3	3
	합계(백만원)	-	3	3	3	3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이은미	228-2625

3-2-3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사회 내 고착된 성차별 등으로 근본적인 인식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여성 인권향상의 토대 구축을 위한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필요
 - 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성차별 인식 개선 기여

- 사업내용
 - 성평등 교육 운영
 - 공무원, 교육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성평등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제작 및 시민 및 관련기관 성평등 교육 추진
 - 성평등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 SNS를 활용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 메시지 제공 및 폭력 예방 공감대 확산 등
 - 양성평등주간(7.1~7.7) 등 여성안전 및 성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 전개
 - 기념식 개최: 수원시 여성상 시상
 - 체험홍보부스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네트워크 등 참여하여 양성평등주간 의미와 주제 전달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회)	1	1	1	1	1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22	22	22	22	22
	합계(백만원)	22	22	22	22	22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이미영	228-2220

4.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는 3개 중점과제,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관련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은 <표 5-6>과 같다.

<표 5-6>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구분	
		구분	구분
4-1. 인권행정 체계 구축	①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확대	계속	단기
	②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규	중기
	③ 인권정책 전담부서 위상 강화	신규	단기
4-2. 인권증진 제도 개선	① 인권영향평가	신규	중기
4-3. 인권정책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신규	중기

1) 인권행정 체계 구축

4-1-①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차별없고 평등한 공정사회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 인권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관련된 법·제도 틀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권시스템 구축
 - 인권침해 발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 수원시 행정서비스의 인권의식 반영 및 보편적 인권정책 집행을 통한 인권도시 구축

- 사업내용
 - 구성인원
 - 인권센터장 1명, 시민인권보호관 2명
 - 주요업무
 - 인권침해 구제업무(상담·조사·시정권고)
 - 인권침해 정책·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정책, 공공시설물)
 - 인권실태조사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진정사건 상담·조사(건수)	75	75	75	75	75
	인권정책·제도 개선권고(건수)	4	4	4	4	4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10	10	10	10	10
	합계(백만원)	10	10	10	10	10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심영미	228-2666

4-1-2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지능정보사회 및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에 대한 적정한 취급 점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불필요한 자료 파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유 등 적정한 취급·관리 점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활동 강화
 -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목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대상: 수원시 전 직원(개인정보 취급자)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이해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개인정보 침해사고, 유출 사례와 예방 및 대응절차(방안)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개인정보보호 교육(명)	2,000	2,000	2,000	2,000	2,000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6	7	7	7	7
	합계(백만원)	6	7	7	7	7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선민지	228-2342

4-1-3 **인권정책 전담부서 위상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정책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 필요
 - 인권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위상강화로 인권정책 추진의 효과성 증대

- 사업내용
 - 인권정책 전담부서를 독립부서로 설치
 - As is
 - 수원시 감사관 인권팀
 - To be
 - 수원시 인권담당관
 - 인권정책 전담부서 업무분장
 - 인권정책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평가,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 운영, 인권교육, 인권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 인권센터: 인권침해 사건 상담·조사·권고, 제도개선 권고, 인권영향평가, 성희롱고충상담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인권정책 전담부서 신설	신설 및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 산	국비(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이은미	228-2625

2) 인권증진 제도 개선

4-2-①

인권영향평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인권정책의 평가제도이며 시민의 행정참여제도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요구 증가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시정 내 인권 주류화 실현 및 시민참여 확대
 - 인권친화적 정책실현을 통해 인권도시 구현

- 사업내용
 - 인권영향평가
 - 정책 수립·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
 - 추진근거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 대상
 -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등
 - 사업내용
 - 사전·사후 평가 실시 및 권고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건)	100	100	100	100	100
	정책 인권영향평가(건)	5	5	5	5	5
	공공시설물 인권영향평가(건)	7	7	7	7	7
예 산	국비(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직(직급)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심영미	228-2666

3) 인권정책 선순환 시스템 구축

4-3-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평가 실시 필요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실태조사 연계를 통한 인권증진 정책 시너지 효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과정-결과-보완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로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시정 추진

- 사업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협의체(TF) 구성·운영
 - 인권정책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 시행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추진
 - 사업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출 요청
 - 금년 사업 평가 및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
 -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검토 및 인권위원회 보고
 - 인권정책 기본계획 사업 담당자 인권교육 실시
 - 시행계획 검토 결과 공유
 - 분야별 인권 업무 유의사항 등 교육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회)	1	1	1	1	1
예산	국비(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이은미	228-2625

5. 인권 거버넌스 강화

‘인권 거버넌스 강화’는 2개 중점과제,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인권 거버넌스 강화’ 관련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은 <표 5-7>과 같다.

<표 5-7> ‘인권 거버넌스 강화’ 관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구분	
5-1. 시민참여중심의 인권정책 실현	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	계속	단기
	② 인권지기 운영	신규	중기
5-2.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실현	①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신규	중기
	②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 강화	신규	장기
	③ 인권경영 운영 지원	신규	장기

1) 시민참여중심의 인권정책 실현

5-1-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 보장
 - 청소년 눈높이 예산학교 등 시정 참여활동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참여와 협의를 통한 자치역량 함양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 ~ 제25조(청소년위원회)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사업내용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예산교육 실시
 - 학교 방문 찾아가는 청소년 의견수렴 활동 전개
 - 청소년 제안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청소년을 대표한 정책제안 논의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회)	8회	8회	8회	8회	8회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9	9	9	9	9
	합계(백만원)	9	9	9	9	9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계속과제 단기과제	책임부서	예산재정과	재정분석팀	박유진	228-3056

5-1-2

인권지기 운영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인권지기 운영을 통해 수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제고
 - 인권지기 운영을 통한 시민의 참여권 보장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시민 인권지기)
 - 인권지기 구성
 - 인권지기 12명
 - 시민인권대학 교육 수료자 중 각 구별 3명씩
 - 인권지기 역할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
 - 인권관련 개선사항 제안
 -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및 지원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등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인권지기(명)	-	12	12	12	12
예 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	5	5	5	5
	합계(백만원)	-	5	5	5	5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심영미	228-2666

2)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실현

5-2-①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수원시가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 증진
- 민-관 협력을 통한 학계,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 적극적인 참여 정책추진으로 인권증진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통합과 동반성장 도모

■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 인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협약
 -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 의견 수렴, 인권행정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한 수원시 지역사회 인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안 및 협의
- 구성주체
 -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수원시, 교육청, 경찰 등)
- 회의 운영
 - 인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논의 등 의제 선정 및 진행 지원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구축 및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 산	국비(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중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이은미	228-2625

5-2-2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인권단체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상호신뢰 형성 및 수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여
 -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사업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권증진 및 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인권관련사업 선정
 - 지원분야
 - 수원시민 인권증진과 직결된 인권 특화사업 지원
 - 인권교육, 연구 등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지원
 -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업 지원
 - 운영방법
 - 인권단체 역량강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 등 지원
 - 선정단체 대상 집행지침교육, 사업실행 및 회계 관련 상담지원 등
 - 사업추진내용 및 회계처리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상황 중간 점검
 - 사업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및 정산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인권보호 시민단체 지원(건)	5	3	3	3	3
예산	국비(백만원)	-	-	-	-	-
	도비(백만원)	-	-	-	-	-
	시비(백만원)	25	25	25	25	25
	합계(백만원)	25	25	25	25	25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안효빈	228-2626

5-2-③

인권경영 운영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지방정부와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및 증진 체계 등 인권경영이 주목 받고 있음
 -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확대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 책임 실현
 -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으로 민간기업까지 확산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도시 수원’ 조성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시 산하 출자·출연 및 보조기관
 - 기관 규모와 주요 사업(시민의 인권과 직결) 및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실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인권경영 도입 기관 수(개소)	-	1	2	3	4
	예 산					
	국비(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	-	-	-	-

과제구분	과제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장기과제	책임부서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심영미	228-2666

제5절 제1기와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차이점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하고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차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교분석을 위한 내용은 기본계획 구성체계인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등이다(〈표 5-8〉 참조).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체계를 살펴보면, 비전-정책목표-중점과제-세부과제 등 4단계로 구성되었다.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이며, 정책목표는 ‘수원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의 보편화’이다.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25개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48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체계는 비전-추진방향-정책목표-중점과제-세부과제 등 5단계로 구성되었다. 비전은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이며, 추진방향은 ‘참여적 인권도시’, ‘보편적 인권도시’, ‘실천적 인권도시’이다. 정책목표는 5대 정책목표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 문화 확산’, ‘인권 행정 제도 내실화’, ‘인권 거버넌스 강화’로 구성하였다.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중점 및 세부과제는 16개 중점과제-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차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상의 차이이다. 제1기 기본계획의 경우 수원시에서 인권 관련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금지 인권정책 시정방향 등 인권도시 기반구축(또는 제도구축)에 초점을 두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제2기 기본계획은 제1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실현에 초점을 두고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를 실현함으로써 인권증진 선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1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수원시정 전반에 인권이 투영되도록 하고 수원시민 모두의 인권의식 고양을 주된 목표로 설정한 반면, 제2기의 경우 제1기의 목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기의 기본계획에서는 인권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식을 강조하였다면, 제2기 기본계획의 목표는 수원시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실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인권정책 기본계획 대상측면이다. 제1기의 경우 인권소외계층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는 1기 기본계획 대상인 인권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셋째, 정책수단의 차이이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수단은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제1기 기본계획의 경우 중점과제를 7대 인권권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나 제2기는 정책목표에 기반하여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제2기의 경우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간, 중점과제와 세부과제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부과제 측면에서 최근 수원시 인권환경 및 수원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세부과제(54.5%)를 도입하였으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였다.

또한 제2기 기본계획에서는 효과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한 선순환적 인권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평가 및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정책체계의 차이점이다. 제1기 기본계획의 경우 별도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제2기 기본계획의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제2기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참여적 인권도시’, ‘보편적 인권도시’, ‘실천적 인권도시’로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포용적이고 참여지향적 인권도시를 지향함으로써 보편적이지만 차별화될 수 있는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체계를 정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정책 시간적 범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1기 기본계획의 경우 3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면 제2기 기본계획의 경우 5년의 중장기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지닌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5-8〉 제1기와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
추진방향	-	참여적 인권도시 보편적 인권도시 실천적 인권도시
정책목표	수원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의 보편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 문화 확산 인권 행정 제도 내실화 인권 거버넌스 강화
중점과제	25개	16개
세부과제	48개	44개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성권 외(2명)(201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 강현수(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광주광역시(2017). 2018~2021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 국가인권위원회(2011a).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1b).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 김영기 외(1명)(2013). 인권도시 광주, 주요 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Q 방법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3호, pp.115-166.
- 김재철 외(8명)(2011).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 광주발전연구원.
- 김홍완(2009). 도덕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대한민국정부(2018).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류성진(2019).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도시의 구축. 공공정책연구 35권 2호, pp.67-95.
- 류준혁(2016). 국내외 인권도시사례연구. 인권이론과 실천 3권, pp.23-36.
- 박인혜 외(2명)(2018).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 서울시 도봉구(2017). 2018~2020년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 서울시 은평구(2017). 제1기(2018~2022년)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 서울시(2018).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서재호 외(1명)(2018).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pp.165-192.
- 유해정(2009). 인권과 발전: HRBA 모델의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이발래(201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9권 4호, pp.157-195.
- 이성훈 외(3명)(2016).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소영(2015). 지방정부의 인권정책과 지역 공동체: 광주광역시 '인권문화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 이영안 외(4명)(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 외(1명)(2018).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이중섭 외(2명)(2016). 전라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 이현재(2013). 한국형 인권도시운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철학적 모색: 법적 주체에서 인문적 주체로, 지방-도시에서 글로벌-도시로.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1호, pp.143-166.

- 정명진(2012). 학교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 정영선(2016). 인권중심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제도화 방향. 법학논총 33권 4호, pp.85-108.
- 한국인권재단(2014). 2014 한국 인권도시백서. 한국인권재단.
- 허은실(2010).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충청남도

〈영문 자료〉

- Abrahams, Desiree and Wyss, Yann. (2010).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HRIAM).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15) Social Impact Assessment: Guidance for Assessing and Managing the Social Impacts of Projects.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e-지방지표
- 수원시청, 수원통계(<http://stat.suwon.go.kr/stat/index.do>)
- 통계로 보는 수원(<http://stat.suwon.go.kr/stat/index.do>)

〈법령〉

-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2016)

| 부 록 |

1.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일반시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	--	--	--

수원시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

일반시민 대상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리서치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의뢰로 '수원시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인권차별 및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차별 및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오직 학문적·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내용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 34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답변이 수원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H-Tower)
- ▣ 문 의 처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황인창 부장 (02) 3014-0086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송승연 연구원 (02) 3014-0752

연구기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 응답시 유의사항 ●

1. 본 조사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2.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3. 질문에 응답하실 때 **특별한 안내문이 없으면 보기 번호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선정질문

선문1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수원시 ()구 ()동

선문2 귀하께서는 수원시에서 얼마나 거주하십니까?

- ① 1년 미만 --> 조사중단
- ② 1년 이상

선문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 ③ 기타 ()

선문4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선문5 다음 중 귀하가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장애인
- ② 다문화가정
- ③ 북한이탈주민
- ④ 비정규직
- ⑤ 저소득층
- ⑥ 성소수자
- ⑦ 해당없음



I. 인권개념 및 인권익식

문1 귀하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③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⑤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⑦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 ⑨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제공의 권리 ⑪ 사회적 약자의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④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⑥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 ⑧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⑩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⑫ 기타 (_____) |
|-----------------------------------------------------------------------------------------------------------------------------------------------------------------------------------------------------------------------------------------------------------|-------------------------------------------------------------------------------------------------------------------------------------------------------------------------------------------------------------------------------------|

문2 귀하는 다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 문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부분적 으로 알고 있음	상당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유엔(UN)이 제정하여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①	②	③	④	⑤
2)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인권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4) 수원시가 제정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①	②	③	④	⑤
5) 수원시 인권센터	①	②	③	④	⑤



II. 인권실태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수원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본질적이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입니다.

문3 귀하는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 ② 거의 알지 못한다 ③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④ 대체로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4 귀하는 수원시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 야	설 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존중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존중 된다	매우 존중 된다
1) 정보공개 참여권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자유권	자유로운 의사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보장권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⑤
4) 안전권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①	②	③	④	⑤
5) 이동·접근권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	①	②	③	④	⑤
6) 환경권	오염 방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⑤
7) 노동권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및 적정 임금 보장	①	②	③	④	⑤
8) 교육권	학교·성인·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9) 문화권	예술 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권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 의료 체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 연대권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문4-1 귀하는 4번 문항의 1) ~ 11)의 분야 중 수원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Ⅲ.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 '지금부터는 귀하 또는 배우자나 가족, 지인들이 수원시 내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여쭙보겠습니다.

응답 시 수원시 내에서 발생했거나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5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귀하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구 분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외) 가족이 경험하였다	친척 및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1)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공개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공기관의 종사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거나 신앙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자유가 제한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단체 결성 또는 단체 가입의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기본적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6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귀하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차별 대우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외) 가족이 경험하였다	친척 및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1)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2)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3) 장애가 있다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5)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7)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8) 특정 국적(인종, 피부색)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9)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 조건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0)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1) 한 부모, 미혼모 등 가족상황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2) 종교, 사상, 이념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3) 학력이나 학벌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4) 성소수자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 5번, 6번 문항에서 '① 내가 경험하였다' 를 한번이라도 선택한 경우
7번과 7-1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 그렇지 않은 경우 8번으로 가세요.

문7 (문5, 문6에서 '① 내가 경험하였다'를 한번이라도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는 5번, 6번 문항에서 응답하신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 ②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
| ③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 | ④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
| ⑤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 ⑥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
| ⑦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 ⑧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
| ⑨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 ⑩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
| ⑪ 집회 또는 1인 시위 | ⑫ 기타 (_____) |

문7-1 앞의 7번 문항에서 ①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_____)

※ 7번과 7-1번을 응답한 후에는 문9로 가세요.

문8 (문5, 문6에서 '① 내가 경험하였다'를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만약 귀하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음 중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 ②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
| ③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 | ④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
| ⑤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 ⑥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
| ⑦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 ⑧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
| ⑨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 ⑩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
| ⑪ 집회 또는 1인 시위 | ⑫ 기타 (_____) |

문8-1 앞의 8번 문항에서 ①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_____)

※ 8번과 8-1번을 응답한 후에는 아래의 문9부터 응답하세요.

문9 귀하는 수원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① 출신국적 | ② 성별 | ③ 직업/소득 등 경제적 수준 |
| ④ 나이 | ⑤ 외모 | ⑥ 종교 |
| ⑦ 가족구성 형태(이혼, 재혼 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 | ⑧ 장애 유무 | ⑨ 출신학교/ 학력수준 |
| ⑩ 출신지역 | ⑪ 병력(에이즈, 정신질환) | ⑫ 정치적 신념(사상/이념 등) |
| ⑬ 성적 지향 | ⑭ 기타 (_____) | |

문10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원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① 시민들의 인권익식 고취 | ②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인권 담당부서, 인권위원회)의 확대 |
| ③ 인권 관련 전문가의 확대/충원 | ④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 |
| ⑤ 사회복지분야 시설/지원 확충 | 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
| ⑦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 ⑧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대 |
| ⑨ 기타 (_____) | |

**IV. 인권교육****문11** 귀하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1-1'로 이동 ② 없다 ▶ '문 12'로 이동

※ 11번 문항에서 '① 있다' 에 응답하신 경우 11-1, 11-2번, 11-3번 문항에도 응답해주세요.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문12로 이동해서 응답해주세요.

문11-1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②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③ 인권침해사례 소개 ④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
 ⑤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⑥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 이해와 의미 등)
 ⑦ 노동/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
 ⑧ 기타 (_____)

문11-2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공공기관 ② 학교 ③ 시민단체
 ④ 직장 ⑤ 온라인 커뮤니티 ⑥ 기타 (_____)

문11-3 인권교육의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11-3번을 응답한 후에는 아래의 문12부터 응답하세요.

문12 귀하는 수원시 일반시민들을 위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13 귀하는 앞으로 인권교육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기관 ② 학교 ③ 시민단체
④ 직장 ⑤ 온라인 커뮤니티 ⑥ 기타 (_____)

문14 귀하는 수원시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된다면 다음 중 어떤 내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②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③ 인권침해사례 소개 ④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
⑤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⑥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 이해와 의미 등)
⑦ 노동/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
⑧ 기타 (_____)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수원시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대상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인권차별 및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차별 및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오직 학문적·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내용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 34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답변이 수원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연구기관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 문의처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이영안 연구위원 (031) 220-8025

● 응답시 유의사항 ●

1. 본 조사는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2.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대해** 주십시오.
3. 질문에 응답하실 때 **특별한 안내문이 없으면 보기 번호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인권개념 및 인권익식

문1 귀하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③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⑤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⑦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 ⑨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제공의 권리 ⑪ 사회적 약자의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④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⑥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 ⑧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⑩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⑫ 기타 (_____) |
|----------------------------------------------------------------------------------------------------------------------------------------------------------------------------------------------------------------------------------------------------------|-------------------------------------------------------------------------------------------------------------------------------------------------------------------------------------------------------------------------------------|

문2 귀하는 다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 문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부분적 으로 알고 있음	상당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유엔(UN)이 제정하여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①	②	③	④	⑤
2)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인권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4) 수원시가 제정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①	②	③	④	⑤
5) 수원시 인권센터	①	②	③	④	⑤



II. 인권실태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수원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본질적이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써,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입니다.

문3 귀하는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② 거의 알지 못한다 ③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④ 대체로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4 귀하는 수원시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설명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존중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존중된다	매우 존중된다
1) 정보공개·참여권	시정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자유권	자유로운 의사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보장권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⑤
4) 안전권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①	②	③	④	⑤
5) 이동·접근권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	①	②	③	④	⑤
6) 환경권	오염 방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⑤
7) 노동권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및 적정 임금 보장	①	②	③	④	⑤
8) 교육권	학교·성인·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9) 문화권	예술 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권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 의료 체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 연대권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문4-1 귀하는 4번 문항의 1) ~ 11)의 분야 중 수원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Ⅲ.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 '지금부터는 귀하 또는 배우자나 가족, 지인들이 수원시 내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여쭙보겠습니다.

응답 시 **수원시 내에서** 발생했거나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5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귀하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구 분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외) 가족이 경험하였다	친척 및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1)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공개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직생활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민원인으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거나 신앙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자유가 제한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단체 결성 또는 단체 가입의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기본적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6

최근 3년 동안 수원시 내에서 귀하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차별 대우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외) 가족이 경험하였다	친척 및 지인들이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다
1)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2)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3) 장애가 있다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5)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7)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8) 특정 국적(인종, 피부색)이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9)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 조건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0)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1) 한 부모, 미혼모 등 가족상황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2) 종교, 사상, 이념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3) 학력이나 학벌의 이유	①	②	③	④	⑤
14) 성소수자라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 5번, 6번 문항에서 '① 내가 경험하였다' 를 한번이라도 선택한 경우
7번과 7-1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 그렇지 않은 경우 8번으로 가세요.

문7 (문5, 문6에서 '① 내가 경험하였다'를 **한번이라도 선택한 경우만 응답**)
귀하는 5번, 6번 문항에서 응답하신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 ②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
| ③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에 시정을 요구 | ④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
| ⑤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 ⑥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
| ⑦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 ⑧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
| ⑨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 ⑩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
| ⑪ 집회 또는 1인 시위 | ⑫ 기타 (_____) |

문7-1 앞의 7번 문항에서 ①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_____)

※ 7번과 7-1번을 응답한 후에는 문9로 가세요.

문8 (문5, 문6에서 '① 내가 경험하였다'를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만약 귀하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음 중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 ②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 |
| ③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 | ④ 청와대, 수원시, 경기도, 구 등 공공기관에 진정 |
| ⑤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 진정 | ⑥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
| ⑦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 ⑧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
| ⑨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 | ⑩ 인터넷 사이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 게시 |
| ⑪ 집회 또는 1인 시위 | ⑫ 기타 (_____) |

문8-1 앞의 8번 문항에서 ①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_____)

※ 8번과 8-1번을 응답한 후에는 아래의 문9부터 응답하세요.

문9 귀하는 수원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 ① 출신국적 | ② 성별 | ③ 직업/소득 등 경제적 수준 |
| ④ 나이 | ⑤ 외모 | ⑥ 종교 |
| ⑦ 가족구성 형태(이혼, 재혼 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 | ⑧ 장애 유무 | ⑨ 출신학교/ 학력수준 |
| ⑩ 출신지역 | ⑪ 병력(에이즈, 정신질환) | ⑫ 정치적 신념(사상/이념 등) |
| ⑬ 성적 지향 | ⑭ 기타 (_____) | |

문10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원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 | ②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인권 담당부서, 인권위원회)의 확대 |
| ③ 인권 관련 전문가의 확대/충원 | ④ 수원시·구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고취 |
| ⑤ 사회복지분야 시설/지원 확충 | 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
| ⑦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 ⑧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대 |
| ⑨ 기타 (_____) | |

**IV. 인권교육**

문11 귀하는 수원시 공무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② 거의 필요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12 귀하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2-1」로 이동 ② 없다 ➡ 「문 13」로 이동

※ 12번 문항에서 '① 있다' 에 응답하신 경우 12-1, 12-2번 문항에도 응답해주세요.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문13로 이동해서 응답해주세요.

문12-1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② 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③ 인권침해사례 소개 ④ 인권침해 시 대응방안 교육
⑤ 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⑥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예: 인권 이해와 의미 등)
⑦ 노동/장애인/여성/노인/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등 맞춤형 인권교육
⑧ 기타 (_____)

문12-2 인권교육의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한연주

사회복지학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김은경

행정학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keklion@naver.com

박범준

행정학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smileboi27@naver.com

